

월·간

재정포럼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5

현안분석

- 법인세 평준화
- 소득세 부담과 자영업자 규모 변화

기획

일본의 2005년도 예산안

정책연구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 및 개편방안 외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영국, 어린이·노인에 세제혜택 외

정책흐름

2004회계연도 정부결산 외

재정통계

상속세 I 편

C · O · N · T · E · N · T · S

견두칼럼	2	녹색성장(Green Growth)을 위한 친환경적 세제개편의 필요성 / 구정모
연안분석	6 24	법인세 평준화 / 박기백 소득세 부담과 자영업자 규모 변화 / 전병목
기획	45	일본의 2005년도 예산안
정책연구	56 59 61 65 69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 및 개편방안 / 안중석 지방선거 이후의 기초자치단체 재정운영의 변화 / 박노옥 우리나라 산업구조 및 실효관세율 변화연구 / 정재호·류덕현 국기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조세제도 정비방안:운송부문을 중심으로 / 권오성·하현구 재정민주주의와 지출승인법 / 옥동석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73	영국, 어린이·노인에 세제혜택 외
정책흐름	85 90 93 97 99 102	2004회계연도 정부결산 '04년말 국가채무 203.1조원-GDP 대비 26.1% 부동산세제 향후 정책방향 원유 등 석유류에 대한 관세율 인하 적용시한 재연장 Ten-Ten 전략을 통해 국가전략기획본부 역할 수행 2005년 공동주택 기준시가 정기고시
재정통계	117	상속세 I 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121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 당연하다 외

녹색성장(Green Growth)을 위한 친환경적 세계개편의 필요성

구정모 /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한국개정·공공경제학회 회장

지난 3월말 서울에서 개최된 유엔 아태지역 환경장관회의(MCED 2005)에서는 “녹색성장(green growth)의 추진”이라는 주제로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이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상생관계임을 확인하여 주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아태지역에서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환경에 대한 부하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성장에 따른 환경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소비 및 생산방식의 “생태효율성(eco-efficiency)”이 제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좁은 땅, 높은 인구밀도, 집약된 생산활동 등으로 주어진 환경용량에 비해 과도한 부하가 걸려 있어,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태효율성의 확보가 더욱 절박하게 요구되고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환경지속성지수(ESI)는 작년에 146개국 중 122위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우리가 오염관리를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사회의 생산 및 소비방식의 생태효율성이 다른 나라보다 나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대형 자동차의 높은 비율, 에너지 과다 사용 가전제품의 범람, 철도보다는 고속도로 위주의 교통체계, 대중교통수단에 비해 자가용교통수단의 높은 이용 등이 생태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즉 우리나라처럼 환경용량이 작고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에서 녹색성장(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생산·소비방식의 생태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성장도 함께 추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환경과 성장을 통합(integration)하여야 한다. 환경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은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OECD에서

권장하고 있는 친환경적인 세계개편(eco-tax reform)은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동시에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주는 윈윈(win-win)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기존의 환경오염물질 규제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환경정책을 사회 전체의 생산·소비방식의 생태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는 마치 소비를 줄이고 경제를 희생시키는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으나, 오히려 그 자체가 보다 생태효율성이 높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질적인 경제성장 방식으로 전환하여 나가는 과정인 것이다.

경제와 환경의 통합을 통한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첫째,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서의 환경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환경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는 고용창출을 가져올 수 있으며 연관산업의 생산유발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친환경적 조세(eco-tax)를 점진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현재 환경관련 조세로서 교통세 및 각종 부

담금 등이 있으나 그 재원이 거의 환경훼손에 대한 보정(correction) 및 기타 용도로 쓰이고 있는 데에 반해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통합하는 차원에서의 기여는 없는 실정이다.

셋째, 환경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최근 각종 국제적 환경규범이 발효되거나 발효될 예정이기 때문에 환경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궁극적으로 환경산업이 정보통신산업과 같은 첨단산업으로서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생태효율성의 증대를 통한 녹색성장의 실천방안으로서 첫째, 소형 자동차 비율의 증대, 에너지 절약형 가전제품의 확산, 고속도로보다는 철도 위주의 교통체계로의 개편, 대중교통수단 이용률의 증대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생태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생태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비용의 가격내부화(internalization)를 추진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환경의 가치가 적절하게 시장에 반영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일부의 경우(예: 농수산 분야 및 에너지관련 분야 보조금)에는 도리어 환경의 가치를 왜곡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장참여자가 환경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생태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환경비용의 가격내부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 친화적인 오염배출권 거래, 오염관련 세제개편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녹색성장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지만, OECD국가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기본적으로는 친환경적 조세(eco-tax)의 점진적인 도입을 통한 친환경적 세제개편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친환경적 세제개편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기존의 세제원칙을 '오염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기존의 환경세가 공해 배출에 대한 부과금을 거두어 환경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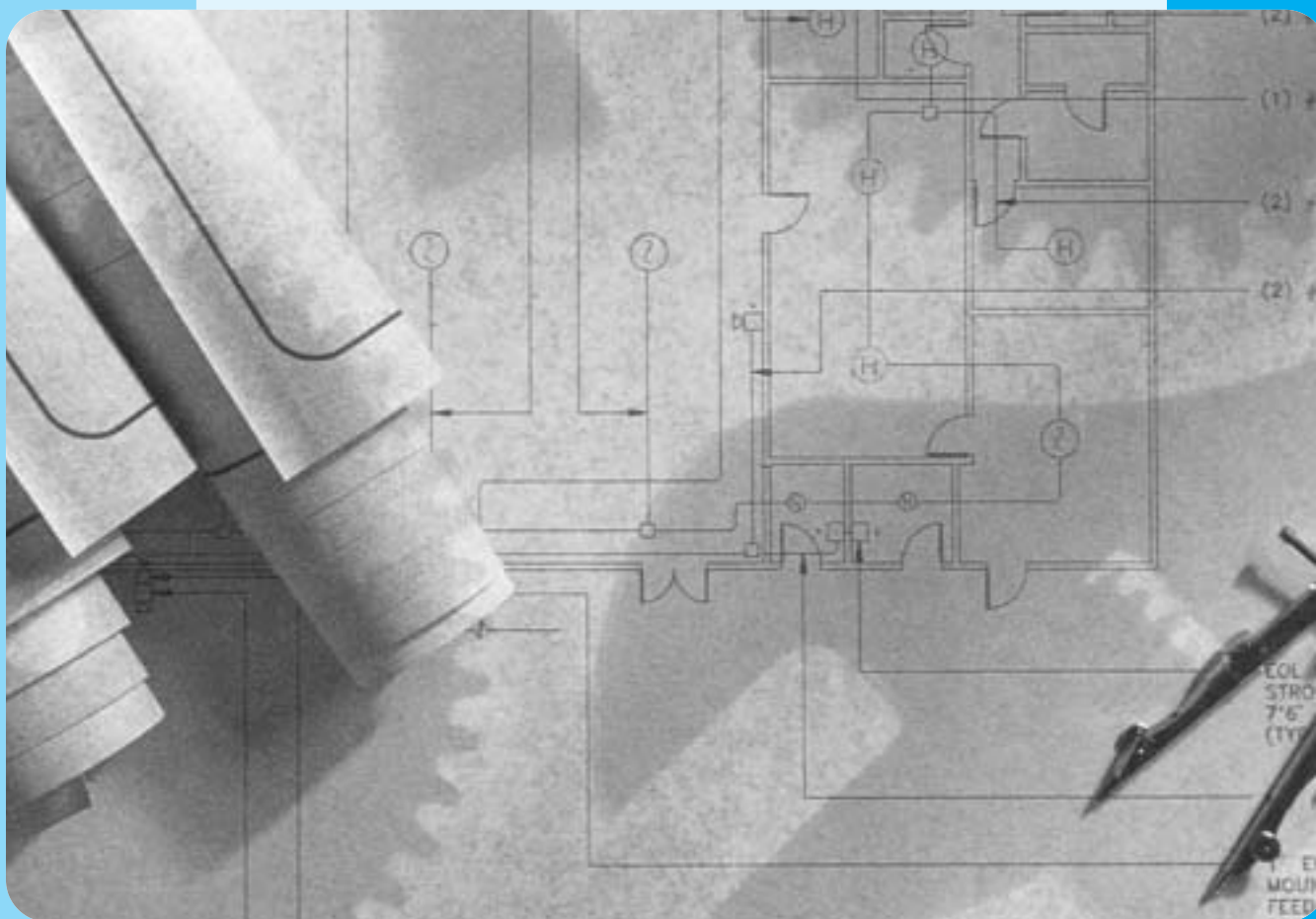
에 전액 부과금을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친환경적 조세는 환경피해를 유발할 요인이 있는 곳에 세금을 전면적으로 부과하는 대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동일한 액수만큼 감액함으로써 조세수입의 중립성(revenue neutrality)을 달성하는 제도로 전체적인 세입에는 변화가 없다.

즉, 친환경적 조세(eco-tax)는 환경피해 유발 요인에 대해 전면적으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주는 동시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함으로써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윈윈(win-win)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환경의 가격을 높이고 인건비에 대한 세금을 낮춤으로써 기업의 임금부담을 낮추어 주어 고용증진과 성장촉진의 효과를 거두면서 환경도 동시에 보호한다(double dividend effect)"는 가설을 기초로 하고 있다.

마침 정부는 21세기 경제환경에 대응하는 중장기 세계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내에 조세개혁특별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친환경적 에너지세제의 구축을 조세개혁 주요 추진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하였다. 이는 친환경적인 세제개편이 OECD국가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고, 한시적 목적세인 교통세가 오는 2006년에 과세시한이 만료될 예정인 시점에서 주요한 의미를 지닌다.

일각에서는 교통세 과세시한의 만료에 따라 이전의 특별소비세로의 환원이나 환경훼손 보정을 위한 교통환경세 또는 환경세의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지속가능 성장 및 환경효율성을 향상시키기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교통세의 과세시한 만료와, 전반적인 세제개혁이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이 친환경적 세제로의 개편(eco-tax reform)을 진지하게 검토할 시기임을 제안한다. 



EOL
STRO
7'6"
(TY

E
MOUN
FEED

현안분석



법인세 평준화

박기백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소득세 부담과 자영업자규모 변화

전병목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법인세 평준화



박기백 연구위원(kbpark@kipf.re.kr)

I. 서론

기업은 순소득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 형태로 지불한다. 이론적으로 보면 법인세는 법인이 아닌 주주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인세는 기업의 순수익 규모, 기업의 현금흐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경영자의 입장에서 보면 법인세는 주요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매출액 대비 또는 자본금 대비 순수익을 기준으로 주주가 경영자를 평가하는 경우에 경영자는 법인세 또는 다른 회계규정을 활용하여 불법 또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법인의 수익을 평준화(Smoothing)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평준화는 수익(또는 소득)의 변동성을 줄이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미국의 자료에 따르면, 대규모 임시소득(temporary income)이 발생할 경우 기업이나 개인은 동일한 과세구간(tax bracket)에 계속해서 남기 위하여 해당 소득의 일부를 다른 회계 연도로 이전시키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보고소득의 평준화가 있는 경우 세금 감소를 위해 세금을 회피하는 현상도 관측되지만 자신의 납세금액을 과대하게 보고하는 현상도 발생한다¹⁾.

법인소득의 평준화에 대한 논의는 회계학 분야에 많다. 그리고 LIFO로 전환, Pension Method, 감가상각 추계 방식 등 주로 회계적인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소득의 평준화를 살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회계적인 방법 외에 조세 측면에서도 보고소득의 평준화가 가능하다. 경영자의 목표를 기업의 이윤극대화라고 가정하면 법인세는 비용이므로 법인세를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1) Lee & Cho, Tax Evasion and Reported Income Smoothing, 2004.

법인은 세무조사, 금융기관과의 관계, 주주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회계규정이나 세금규정을 이용하여 소득 및 세금을 평준화할 가능성이 있다.

최소화하는 것이 경영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된다. 세제의 측면에서 보면 법인세의 세율이 누진구조이므로 중·장기에 걸쳐 보고소득을 평준화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 또한 이월결손금의 공제기한이 5년으로 한정되어 있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이미 납부한 법인세에 대한 환급이 없으므로 법인세 변동이 적어야 전체적인 법인세액이 축소된다고 보기도 한다. 세정의 측면에서 보아도 특정 납세자가 준거집단에 비해, 또는 기존의 납부규모에 비해 세금부담이 낮아질 경우 세무조사의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업은 준비금과 같은 세금규정을 이용하여 소득을 조정할 유인을 갖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기관이 대출을 위한 서류로 세금 또는 경영실적 자료를 요구하므로 기업은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회계규정 또는 세금규정을 이용하여 소득을 평준화할 필요성이 존재하게 된다.

이렇듯 보고소득의 평준화를 위한 기업의 이유와 방법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세액공제와 같은 직접적인 조세감면이나 준비금처럼 납세이연 효과가 있는 간접적인 조세감면을 이용하여 어떻게 보고소득을 평준화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법인세제와 조세감면

1. 현행 법인세제

보고소득의 평준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법인 관련 세제와 조세감면규정을 살펴보자. 법인세의 징수대상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영리, 비영리)이다. 2002년부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폐지되었으므로 현재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과 청산소득이다. 그리고 영리법인의 경우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이지만 비영리법인은 열거된 수익사업으로 인한 발생소득만 과세대상이 된다. 외국법인의 경우 원천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국내원천소득만 과세대상이 된다.

법인세는 소득세처럼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수입 및 비용과 관련한 다수의 조정이 있다. 세법에 따르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법인세법 제14조 ①).

〈표 1〉 법인 구분별 과세범위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¹⁾
내국법인	영리법인	모든 소득	과세	과세
	비영리법인	열거된 수익사업 발생소득	비과세	과세
	국가·지자체	납세의무 없음	납세의무 없음	납세의무 없음
외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비과세	과세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 발생소득	비과세	과세

주: 1) 자기급등지역 토지 등은 2002년부터 과세, 주택은 2004년부터 과세.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2004. 9.

여기서 익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익금불산입 항목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뜻하며, 기업회계상 수익과 유사한 개념이다. 손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손금불산입 항목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기업회계상 비용과 같은 개념이다. 그러나 법인세법상의 익금 및 손금 항목이 기업회계상의 수익 및 비용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조정하는 과정을 세무조정이라 한다. 세무조정은 크게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구분된다. 결산조정이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확정결산과정에서 실시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동 항목들은 장부상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대표적인 결산조정 항목으로는 준비금·감가상각비·충당금·대손금 등이 있다. 신고조정은 기업회계상 수익 또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나 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사항 중 특정 항목에 대하여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도 세무조정계산서상에서 세무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뜻한다. 신고조정 항목으로는 퇴직보험료·법인세비용 손금불산입, 기부금 및 접대비 손금불산입 등의 단순신고조정 항목과 잉여금 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이 있다²⁾.

2) 법인세법 제61조에 따르면 법인이 준비금을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이를 세무조정계산서상 손금에 산입할 경우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각종 조세감면도 법인의 세부담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감면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에 따른 세금감면 규모도 큰 상태이므로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무조정을 거쳐 산출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5년내 발생한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이 법인세 과세표준이다. 이러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그리고 현재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미만은 15%, 1억원 초과분은 27%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³⁾. 동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고, 무신고·미납부가산세 등을 추가하면 결정세액이 산출된다.

2. 법인 관련 감면제도

각종 조세감면도 법인의 세부담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감면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에 따른 세금감면 규모도 큰 상태이므로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법인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와 외국인 투자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인 법인과 관련이 있는 조세지원은 그 성격에 따라 투자 관련, 사업구조조정 관련, 지방이전 관련 및 기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투자와 관련된 조세지원제도로써 생산성 향상 설비, 에너지 절약 설비, 특정 설비, 연구인력개발 설비 등 모든 사업자의 특정 투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세지원과, 투자대상을 구별하지 않지만 업종이 제한되어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 및 사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지원제도도 다수 존재하는데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및 신설법인 등의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이연,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과 같은 특례조항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그것이다. 이외에 법인의 지방이전을 장려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로써 수도권 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및 취득세 감면 등의 조세지원과 농공단지 및 제주도 지역과 같은 특정 지역 입주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한편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및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이나, 고용증대 및 해외과견비,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제상 지원이 주어진다. 또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다양한 연구 및

3) 2005 사업연도부터 13%, 25%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조합법인의 경우 1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 주택 30%('05 사업연도부터 40%), 지가급등지역 토지 등 10%('05 사업연도부터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조세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경제 개방화에 따른 국민경제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자본재 도입시 관세 및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감면 등의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도 다수이다. 따라서 실증분석에 있어서도 중소기업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창업, 자금조달, 사업경영 안정, 재무구조 개선 및 구조조정, 지방이전, 투자 등 단계별로 구분할 수 있다. 창업지원의 경우를 보면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조업·물류업 등의 특정 분야에서 국세와 지방세에 걸쳐 각종 세금을 감면하고 있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하여 제조업은 물론 부가통신업 및 엔지니어링 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제조업의 발생소득에 대한 조세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접대비 손비인정의 경우 대기업(1,200만원)보다 더 높은 1,8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 업종전환, 합병 등 재무구조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제도도 다수 존재한다. 또한 제조업·건설업 등의 특정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투자준비금 설정을 인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신규 취득한 설비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 중소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도 다양하다.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기술 및 인력개발을 촉진하고, 보다 원활한 기술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대기업에 적용되는 감면보다 높은 수준의 혜택을 중소기업에 부여하고 있다.

3. 기업합리화적립금 및 준비금

법인이 세금을 감면받으면 법인세가 감소되므로 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증가한다. 그러나 법인이 감면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익을 전액 주주에게 배당한다면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조세감면 혜택이 주주에게만 귀속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과세 형평성을 희생하면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감면의 의미가 상실된다.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도록 하였다. 세액공제와 감면세액은 바로 그 금액이 법인세 상당액이 되나, 소득공제는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서 소득공제를 하여 계산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법인세 감면액이 된다(법인세 상당액에는 주민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법인세법상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적립의무가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준비금을 적용한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및 준비금은 법인의 세금을 평준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

에도 적립의무가 없다. 적립금의 규모는 소득공제/세액감면/세액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법인세액에서 감면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이다(기업합리화적립금 = 법인세감면액 - 감면세액에 부과된 농어촌특별세). 그러나 2002년 12월 31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감면받는 분부터는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폐지되었다.

준비금 제도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지만 미래의 일정 기간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손실)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익금에 산입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회계연도의 조세부담은 축소되지만 준비금이 익금으로 산입되는 회계연도의 세부담은 증가하게 된다. 준비금 제도는 본질적으로 납세의 시기를 늦추는 것이므로 납세가 연장된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세액을 무이자로 사용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세율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납부금액에 이자율을 곱한 만큼의 이득을 주는 것이 된다.

III. 방법론 및 자료

1. 기존 연구

전춘옥 외(1996)는 기업의 이익 평준화 개념을 법인세 평준화에 적용하고 있다. 평준화를 위한 수단으로는 특별감가상각과 준비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두 가지 모두 법인세 평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⁴⁾. 기본적인 모형은 다음과 같다.

$$Y^* = Y + t \times W \quad \text{식 (1)}$$

여기서 Y^* 는 평준화 수단 반영전 법인세, Y 는 평준화 수단 반영후 법인세, t 는 세율, W 는 평준화 수단이다. 이를 Random Walk with Drift 또는 시간추세 선형모형에 적용하여 실제 관측치와 예측치의 차이를 살펴본다. 즉, 평준화 이후의 편차가 평준화 이전보다 작다면 평

4) 전춘옥 · 조현연 · 백승산, 「법인세 유연화연구」, 『세무학연구』, 한국세무학회, 1996.

준화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Moses(1987)는 기업이 회계규정을 변경하여 소득 평준화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⁵⁾. 기본적인 모형은 다음과 같다.

$$SB = |PE-EE| - |RE-EE| / Sales \quad \text{식 (2)}$$

여기서 RE는 보고된 소득이다. PE는 평준화 수단인 각종 회계규정을 활용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의 규모이다. EE는 준거기준이 되는 소득으로 전년도 소득에 오차항을 더한 것이다. 즉, Random Walk 형태로 가정하고 있다. Sales는 매출액으로 규모를 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이 경우 SB의 부호가 양수이면 소득 평준화를 한 것이 된다. Moses의 결과를 보면 212개 기업 가운데 137개 기업이 평준화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SB를 기업 규모나 시장점유율 등에 대해 회귀분석함으로써 기업규모나 시장점유율이 평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Lee & Cho(2004)는 보고소득의 변화와 세무조사 확률을 연계시킴으로써 보고소득의 평준화 가능성을 기대효용극대화 모형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보고소득의 변화가 커 이에 비례하여 세무조사의 확률이 높아지는 경우 납세자는 보고소득을 합법 또는 불법적으로 평준화시킨다는 것이다. 모형은 다음과 같다.

$$\max \beta^t U(y_{it} - \tau(R(y_{it})) - \lambda) \quad \text{식 (3)}$$

여기서 t 는 시간, i 는 개인, β 는 할인율, y 는 실제 소득, τ 는 세금, R 는 보고소득을 나타낸다. λ 는 벌금으로 보고 소득과 실제소득의 차이에 따라 커진다.

Lee & Cho(2004)는 자신의 소득을 부풀리는 현상은 기존의 탈세 모형에서는 설명하기 곤란하지만 보고소득의 변동성을 세무조사 가능성과 연계시키면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납세자의 효용극대화 모형은 기업의 이윤극대화 또는 세부담 최소화의 형태로 전환이 가능하므로 세무조사의 가능성이 법인세의 평준화를 야기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Erard(1993)의 TCMP 자료에 의하면 소득이 과소보고되거나 과대보고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Moses, D, Income Smoothing and Incentives: Empirical Tests Using Accounting Changes, 1987.

Erard(1993)의 TCMP 자료에 의하면 소득이 과소보고되거나 과대보고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과대신고는 누진세율체계, 세제의 복잡성,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 등의 이유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된다.

〈표 2〉 납세준비 유형별 납세순응 통계

	Self-prepared returns	CPA or lawyer-Prepared returns	Other-prepared returns
returns with income understatement	39.2%	63.0%	49.6%
compliant returns	52.9%	25.2%	43.2%
returns with income overstatement	7.9%	11.9%	7.2%
Number of returns	3,663	3,937	6,042

자료: 1979 TCMP subsam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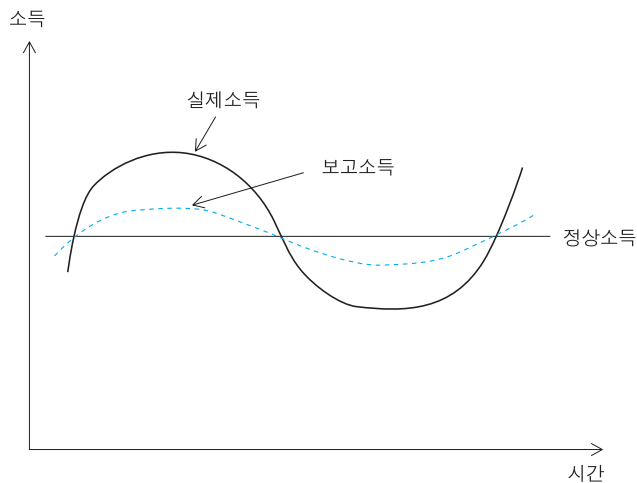
Erard, "Taxation with Representation," *J. of Public Economics*, 1993.

일반적으로 과대신고는 누진세율체계, 세제의 복잡성,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 등의 이유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된다. 그러나 누진세율체제로 인하여 세금이 증가하는 현상을 막기 위하여 소득을 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과세구간이 달라지는 경우에만 해당되지만, 세무조사의 확률을 모형에 도입하면 과세구간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에도 과대보고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세제의 복잡성 문제는 회계사나 세무사 등 세무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는 과대신고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야 하지만 Erard(1993)의 자료에서는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사실들은 세무조사로 인하여 납세자가 의도적으로 축소신고 또는 과대신고를 할 개연성을 높여준다. 또 다른 사실로는 원천징수(withholding)가 많은 경우 납세순응도가 낮아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원천징수는 실제적인 세부담과는 관계가 없어도 이를 환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세무당국의 세무조사 가능성을 의식하게 되므로 납세순응도가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2. 분석 방법

Moses(1987)에 따르면 소득에는 소득 평준화 이전소득(실제소득), 자료에 나타난 보고소득, 그리고 기업이 준거기준으로 사용하는 정상소득이 있을 수 있다. 동일한 논리로 실제법인세, 보고법인세, 정상법인세라는 개념을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법인세 평준화 논리를 따르면 법인은 실제법인세가 정상법인세보다 큰 경우에는 조세규정을 이용하여 세금을 낮추려 할 것이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에는 조세규정을 이용하여 세금의 납부액을 증대시킬 것이다.

[그림 1] 소득 평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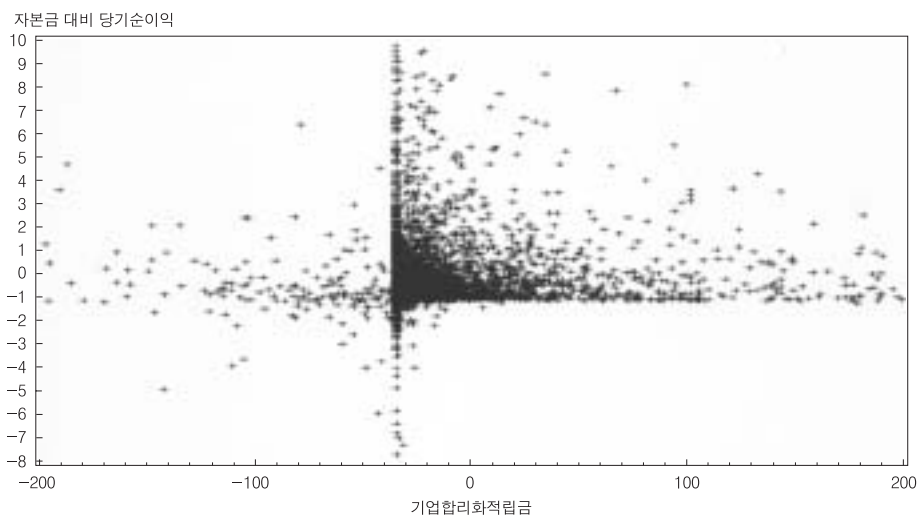
이론적으로는 간단하지만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정상소득(법인세)을 추정하고, 실제소득(법인세)을 계산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정상소득의 경우 Moses의 경우처럼 전년도 소득이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평준화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료의 기간 평균치를 사용한다. 실제소득(법인세)의 경우에는 이를 계산할 방법이 없으므로 실제법인세가 정상법인세보다 높은 경우 보고법인세도 정상법인세보다 높다고 가정한다. 즉, 보고법인세는 실제법인세 > 보고법인세 > 정상법인세 또는 실제법인세 < 보고법인세 < 정상법인세의 순이라고 가정한다.

보고법인세가 정상법인세보다 높은 경우 법인은 조세감면을 증대시키고, 반대의 경우에는 조세 감면을 감소시킬 것이다. 즉, 보고법인세에서 정상법인세를 차감한 값의 변화와 조세감면의 변화가 양의 부호를 가지면 조세 평준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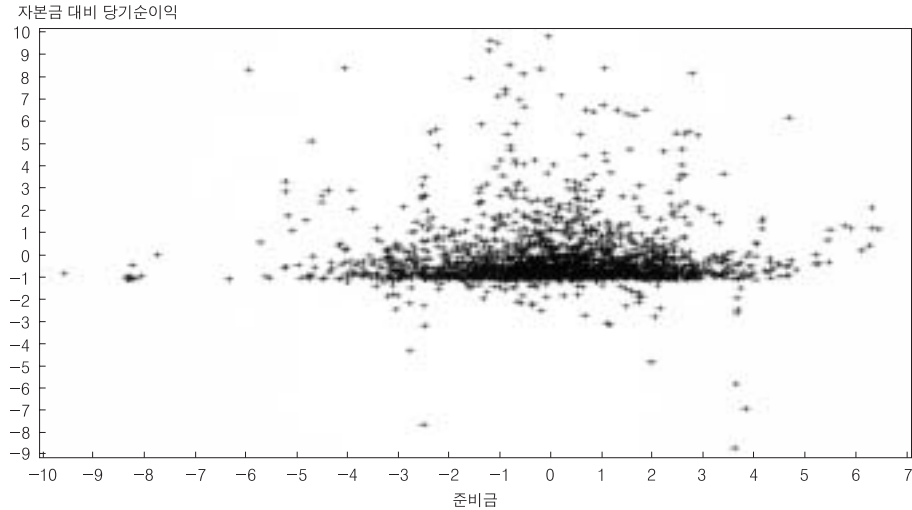
이렇게 가정하면 보고법인세가 정상법인세보다 높은 경우 법인은 조세감면을 증대시키고, 반대의 경우에는 조세감면을 감소시킬 것이다. 즉, 보고법인세에서 정상법인세를 차감한 값의 변화와 조세감면의 변화가 양의 부호를 가지면 조세 평준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조세감면 수단인 기업합리화적립금과 간접적인 조세감면 수단인 기술개발준비금을 사용하여 법인의 법인세 조정 여부를 살펴본다. 준비금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재무제표에 자료가 있는 기술개발준비금을 사용한다. 기업합리화적립금과 자본금 대비 당기순이익을 각각의 평균값을 차감한 수치를 점으로 표시한 그림을 보면 당기순이익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시점에 조세감면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다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동일한 방법을 기술개발준비금에 적용한 경우를 보면 조세감면을 이용한 법인세의 평준화 경향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림 2] 당기순이익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추이



[그림 3] 당기순이익과 준비금의 추이



3. 자료

자료는 한국신용평가의 재무제표인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의 일부 변수를 추출해서 사용하였다. 포함되는 범위는 상장법인, 등록법인, 외감법인이며 사용연도는 1990년부터 2003년까지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등(전체산업)과 금융권으로 구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금융업을 제외한 제조업 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연법인세 제도가 1999년부터 도입됨에 따라 재무제표상에서 법인세 비용으로 표시되는 항목의 내용이 달라졌다. 따라서 1999년 이후의 법인세 자료는 이연법인세가 아닌 납부법인세로 조정하였다. 감가상각비는 손익계산서상의 판매관리비에 포함되는 것 이외에 제조원가에 포함된 감가상각비가 있으므로 판매관리비의 감가상각비와 제조원가명세서상의 감가상각비를 합하여 사용하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한국신용평가에서 분류한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제조업 등은 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20개의 산업으로 분류하였다.

추출 대상이 되는 변수가 누락(missing)된 경우에는 제외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자료에서 소득세액이 음수로 나오는 경우처럼 사실상 누락이라고 보이는 자료를 제외하였다. 이 밖에 특별이익 등이 대규모로 발생하여 매출액 대비 수익의 비율이 1을 넘는 경우도

자료는 한국신용평가의 재무제표인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의 일부 변수를 추출해서 사용하였다. 포함되는 범위는 상장법인, 등록법인, 외감법인이며 사용연도는 1990년부터 2003년까지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등(전체산업)과 금융권으로 구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금융업을 제외한 제조업 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가능하지만 이는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보고 제외하였다. 그리하여 1990년부터 2003년까지 수치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료를 구성해서 통계치를 산출하여 13,664개의 관측치를 가진 976개의 기업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그러나 <표 3>에 나타난 분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종속변수의 누락 편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종속변수를 기준으로 기업합리화 적립금, 기술개발준비금, 감가상각비의 3개의 dataset을 각각 구성하였다.

〈표 3〉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통계량

변 수	단위	관측치	평균값	표준편차
감가상각비	십억원	13,630	10.19	110.00
기업합리화적립금	십억원	11,277	4.28	78.86
준비금	십억원	4,131	14.47	222.13
매출액	십억원	13,664	188.99	1,441.65
자산	십억원	13,664	171.50	1,125.97
유형자산	십억원	13,664	72.18	567.87
당기순이익	십억원	13,664	7.12	117.56
자본금	십억원	13,664	12.35	66.54
부채비율	비율	13,664	353.6	5,082.73
당기순이익/자본금	%	13,664	1.3201	5.0562
당기순이익/매출액	%	13,664	0.0456	0.6680
법인세/영업이익	%	13,664	0.5471	24.3828
법인세/세전순이익	%	13,664	0.4042	4.7895

IV. 추정 결과

1. 회귀모형 및 변수

종속변수는 기업합리화적립금(Direct), 기술개발준비금(Indirect), 감가상각(Dep)이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누적 적립액이므로 증가분을 사용하되 증가분을 적립금 총액으로 나눈 값을 사용한다. 준비금의 경우 기설정된 준비금의 환입이 발생하므로 준비금 총액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따라서 당년도에 설정한 준비금을 매출액 대비로 나눈 값을 이용하였다. 감가상각도 단순 총액이 아닌 감가상각을 유형자산으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다.

설명변수로는 자본금 및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Cprofit, Sprofit), 당기순이익 대비 세액(Ptax), 부채비율(Debt),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을 기준으로 한 한계세율(Mrate), 매출액(Sales), 자산(Asset)을 사용하였다. 이 중 매출액(Sales), 자산(Asset)은 로그값을 사용하였다. 기업이 준비금과 같은 조세감면의 수단을 사용하면 세액과 수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종속변수와 설명변수간에 내생성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조세감면을 사용하기 이전의 세액과 수익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준비금의 설정으로 인한 세금의 변동분은 한계세율에 준비금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이를 기존의 세금에 더함으로써 조세감면 이전의 세금을 구하였다. 조세감면 이전의 당기순이익은 앞에서 계산한 세금의 변동분을 더하였다. 이는 감가상각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의 경우는 적립금 변화의 규모가 세금의 조정분이 된다. 조세감면 이전의 당기순이익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세금의 조정분을 더하는 방법을 취했다. 가능한 경우 대기업(Large), 상장기업(Listed), 제조업(Manuf), 도소매(Retail)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도 사용하였다. 모든 변수는 GDP deflator를 사용하여 실질로 변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을 위하여 OLS와 Panel Regression(Fixed Effect & Error Component Models)을 사용한다. OLS의 경우에는 기업 특성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사용하는 경우와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두 가지 회귀분석을 시도한다. 모형은 다음과 같다.

$$Y_{it} - \bar{Y}_i = \alpha(X_{it} - \bar{X}_i) + \beta Z_{it} + \gamma D_i + e \quad \text{식 (4)}$$

여기서 t 는 시간, i 는 개인을 나타낸다. 정상적인 수준보다 높은(낮은) 경우에 조세감면이 증가(감소)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종속변수(Y)와 관련 독립변수(X)는 평균을 차감한 값을 사용하였다. Z 는 평균을 차감하지 않은 종속변수이며, D 는 더미변수이다. α, β, γ 는 계수이며, e 는 오차항이다.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한 추정결과를 보면 자본금 및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Cprofit, Sprofit), 당기순이익 대비 세액(Ptax)의 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기업이 직접적인 조세감면을 이용하여 조세 평준화를 시도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분석 결과

① 기업합리화적립금

먼저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한 추정결과를 살펴보자. 추정 결과를 보면 OLS 및 Panel 모형 모두에서 조세 평준화와 관계가 있는 자본금 및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Cprofit, Sprofit), 당기순이익 대비 세액(Ptax)의 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직접적인 조세감면을 이용하여 조세 평준화를 시도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4〉 기업합리화적립금

	OLS-Dummy	OLS	고정효과	확률효과
cprofit	-0.0553	-0.0256	0.1414	-0.0069
sprofit	0.1366	0.5632	0.4755	0.5297
ptax	-0.0001	-0.0002	0.0000	-0.0002
mrates	15.6780	12.0752	1.8325	10.6699
debt	0.0001	0.0001	0.0000	0.0001
sale	-3.0137	-0.8704	2.9829	-0.6219
asset	1.9437	1.1292	-7.4147	0.8537
year	-0.4791	-0.5519	-0.3026	-0.5572
large	10.3555**	-	-	-
listed	-6.7135*	-	-	-
manuf	2.6526	-	-	-
retail	19.3007**	-	-	-
cosnt	9.4730	-2.7619	-	-2.0049
R ²	0.0038	0.0006	0.0008	0.0005

주: F-value=1.2008, Hausman Stat=4.1574

② 준비금

다음으로 기술개발준비금의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자. 먼저 자본금 대비 수익률의 계수를 보면 OLS 및 Panel 모형 모두에서 유의한 양수로 나온다. 즉, 자본금을 기준으로 한 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낮은) 경우 기업은 준비금 설정을 평소보다 많이(적게) 함으로써 조세 평준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매출액 기준 수익률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자본을 제공한 주주에게 일정한 수익률을 제공하려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준비금을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계수를 보면 부채비율이나 매출액에 대한 계수는 음수로 나타나고 있고, 자산에 대해서는 양수로 나타나고 있다. 부채비율이 높은 경우 금융비용이 커지므로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준비금 설정으로 세금을 축소시킬 유인이 작은 것으로 보인다. 매출액이 커질 때 준비금을 덜 사용하는 요인은 불분명하다. 또한 자산이 증가할 때 준비금을 더 사용하는 이유도 불분명하다.

③ 감가상각

감가상각의 경우도 기업합리화적립금처럼 OLS 및 Panel 모형 모두에서 조세평준화와 관계가 있는 자본금 및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Cprofit, Sprofit), 당기순이익 대비 세액(Ptax)의 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감가상각을 이용하여 조세 평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기업은 자본을 제공한 주주에게 일정한 수익률을 제공하려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준비금을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5〉 준비금

	OLS-Dummy	OLS	고정효과	확률효과
cprofit	0.0020**	0.0019**	0.0017**	0.0017**
sprofit	0.0011	0.0009	-0.0027	-0.0022
ptax	0.0029**	0.0031**	0.0010	0.0012
mrate	-0.0142	-0.0175	-0.0020	-0.0035
debt	-0.0006**	-0.0007**	-0.0004**	-0.0005**
sale	-0.0270**	-0.0282**	-0.0168**	-0.0196**
asset	0.0226**	0.0243**	0.0141**	0.0156**
year	-0.0007**	-0.0007**	-0.0003	-0.0003
large	0.0017	-	-	-
listed	0.0016	-	-	-
manuf	-0.0063*	-	-	-
retail	0.0107*	-	-	-
cosnt	0.0820**	0.0731**	-	0.0668**
R ²	0.2086	0.2005	0.0824	0.1009

주: F-value=13.8284, Hausman Stat=195.3506

〈표 6〉 감가상각

	OLS-Dummy	OLS	고정효과	확률효과
cprofit	0.0108	-0.0104	0.0457	-0.0103
sprofit	-0.6626	-0.6758	-0.1466	-0.6518
ptax	0.0333	0.0280	0.0037	0.0262
mrate	-7.0817	-4.0146	-4.9156	-4.2092
debt	-0.0003	-0.0003	-0.0002	-0.0003
sale	5.7283**	3.9111*	1.4381	3.8922*
asset	-5.1589**	-4.4164*	-9.0777	-4.4283*
year	0.4072	0.4660	0.8283*	0.4661
large	-6.6151*	-	-	-
listed	2.7987	-	-	-
manuf	-10.8671**	-	-	-
retail	-12.3824**	-	-	-
cosnt	1.1705	4.6892	-	5.1403
R ²	0.0021	0.0006	0.0006	0.0006

주: F-value=1.0773, Hausman Stat=1.0086


V. 요약 및 시사점

기업이 법인세 또는 소득을 조정할 유인은 여러 가지로 존재한다. 경영자에 대한 보상이나 진퇴가 경영성과에 있는 경우 경영자는 법인세 및 회계규정을 활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평균화할 수 있다. 법인세율이 누진구조이므로 중·장기적인 세금을 축소하기 위하여 보고소득을 평균화할 수 있다. 납부세금의 변화가 큰 경우 세무조사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에도 납세자는 조세 평균화를 시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제에 있는 다양한 감면수단을 이용하여 법인이 보고소득을 평균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평균화의 기본적인 개념 즉, 보고법인세(소득)에서 정상법인세(소득)를 차감한 값의 변화와 조세감면의 변화가 양의 부호를 가지는지를 한국신용평가의 재무제표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조세감면의 대상으로는 직접적인 조세감면 수단인 기업합리화적립금과 간접적인 조세감면 수단인 기술개발준비금, 그리고 감가상각을 선택하였다. 추정 결과를 보면 준비금의 경우만 소득 또는 법인세의 평균화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조세감면의 주요 수단인 준비금을 축소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정부가 기업에게 합법적인 조세 평균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연구개발처럼 정책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지출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경영자가 주주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수익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는 유의하여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납부세액이나 각종 조세감면자료의 부정확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국세청의 법인 납세자료 등을 활용하여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정상이익을 추정하는 방법도 개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평균을 사용하였지만 추세평균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기업의 준거점이 전년도일 가능성도 높으므로 전년도를 정상이익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다른 정상이윤 설정을 통해서도 연구결과가 유지되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추정방식에서 언급한 것처럼 종속변수와 설명변수간에 내생성 문제를 고려한 추정도 시도되어야 한다.

경영자에 대한 보상이나 진퇴가 경영성과에 있는 경우 경영자는 법인세 및 회계규정을 활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평준화할 수 있다. 법인세율이 누진구조이므로 중·장기적인 세금을 축소하기 위하여 보고소득을 평준화할 수 있다. 납부세금의 변화가 큰 경우 세무조사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에도 납세자는 조세 평준화를 시도할 수 있다.

조세 평준화 현상은 세수 탄력성 및 세수 추계에도 시사점을 준다. 즉, 세수 탄력성은 조세 평준화 현상으로 인하여 실제보다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평준화 현상은 과세구간이 많아질수록 유인이 커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세구간 수의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조세에 대한 규정이 복잡할수록 조세 평준화를 통한 납세순응도를 낮출 것이므로 세법의 단순화에도 시사점을 준다. 또한 조세 평준화 현상을 줄이려면 납부세액의 변동성이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주요한 기준이 되지 않아야 한다. 

소득세 부담과 자영업자 규모 변화



전 병 목 전문연구위원 (hskim@kipf.re.kr)

I. 서론

최근 경기가 침체되자 소규모로 운영되는 자영업¹⁾은 성장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다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자영업은 실업자와, 노동시장에서 차별받는 계층에게는 경제활동의 안전장치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부수적인 기능도 하게 된다. 자영업의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심각한 실업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먼저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세율 인하를 통한 기업가 정신의 고취 및 고용수준 확대에 대한 것이었다(Folster, 2001).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 근로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증대하면 경제 전체적인 고용수준이 증대한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었다(Thurik, 1999; Folster, 1998)²⁾.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외환위기 이후 악화된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벤처기업 및 서비스업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세액감면 등 조세지원을 포함하는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재정경제부, 2004, 2005).

자영업이 경제성장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개인의 경제활동 형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세의 효과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소득세의 효과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일률적인 소득세 변화와 차별적인 소득세 변화의 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노동공급 유인효과가 자명한바 대부분의 연구들은 전자에 집중되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1) 비임금 노동자인 자영업주가 운영하는 사업.

2) Folster, 2001에서 재인용.

우리나라는 자영업 부문의 낮은 소득과약률을 고려하여 피고용소득자의 소득에 대해 추가적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소득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소득과약의 정도에 따라 자영업과 피고용소득자 상호간의 노동이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자영업 내부적으로도 업종에 따라 매출액 대비 경비율을 달리 적용하여 실질적인 소득세 부담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어 있다. 일률적인 소득세 변화의 효과는 현재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소득세 부담이 낮은 우리나라의 소득세 정책 변화시 예상되는 고용구조의 변화를 짐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자영업 부문과 피고용소득에 대한 차별적인 소득세 정책 또한 노동공급을 변화시키는 유용한 수단으로, 업종별로 차별적인 경비율³⁾을 적용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 부문의 낮은 소득과약률을 고려하여 피고용소득자의 소득에 대해 추가적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소득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소득과약의 정도에 따라 자영업과 피고용소득자 상호간의 노동이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자영업 내부적으로도 업종에 따라 매출액 대비 경비율(혹은 소득률⁴⁾)을 달리 적용하여 실질적인 소득세 부담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비록 이러한 차이가 업종별 경비비중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지만 소득과약의 어려움 및 이들의 조정요건 등을 고려할 때 업종별 노동공급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장과 고용측면에서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자영업자⁵⁾로의 노동공급 유인들과 함께 고용현황 그리고 관련 연구들을 살펴본다. 선진국들과의 자영업자 고용비중의 상대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이점들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산업별 고용구조와 차별적 조세제도를 비교함으로써 최근 나타난 자영업자의 고용비중 변동현상을 설명한다. 또한 국제비교 및 산업내 비교 등을 바탕으로 조세정책에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3) 우리나라는 현재 회계장부가 없는 자영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해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비율을 통해 경비수준을 결정하고 최종 소득수준을 산출하게 된다.

4) 2002년 이전에는 표준소득률 제도를 운용하였으나 기본적으로 단순경비율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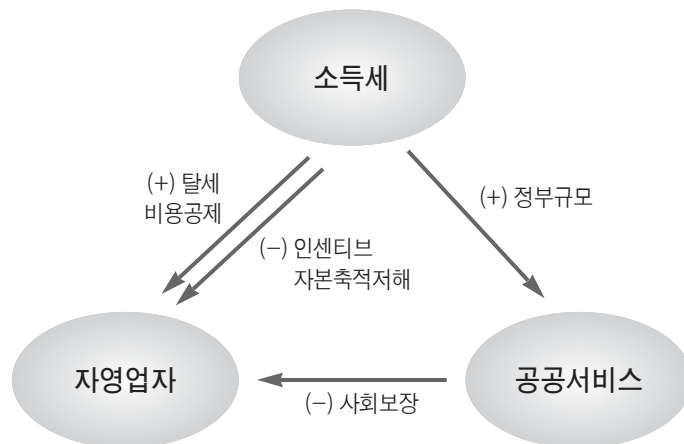
5) 비임금 근로자 중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광의의 자영업자를 가칭하였다.

II. 이론적 검토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로의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제적 요인으로는 실업수준, 금융시장에의 접근성, 개인의 자본축적도, 소득세 부담수준, 조세회피 용이성, 위험에 대한 선호도, 그리고 정부의 사회보장 서비스 수준 등이다. 비경제적 요인으로는 나이, 근로자에 대한 차별, 개인의 과거 경험 등이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은 자영업자로의 노동공급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혹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요인 중에서 소득세 부담수준과 자영업자 비중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소득세가 자영업자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들은 다양하다. 우선 직접적으로 소득세를 증가는 탈세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자영업자로의 노동이동을 촉진시킬 것이다. 또한 자영업은 개인목적으로 사업체의 자원을 이용하여 세부담을 낮출 수 있어 전반적으로 사회의 세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동 부문으로의 노동공급 유인이 높아지게 된다. 반면 높은 세부담은 근로인센티브를 약화시키며 상대적으로 개인의 노력에 따라 수입이 크게 변화하는 자영업자에게 영향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자영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자본축적이 요구되나 높은 세부담은 개인부분의 저축을 감소시켜 자영업자로의 진입을 제한하게 된다⁶⁾.

[그림 1] 소득세와 자영업자 규모의 상관관계



6) 사회보장 등 복지혜택이 저축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다(e.g. Feldstein 1974, 1975; Kotlikoff, 1995).

높은 세 부담은 근로인센티브를 약화시키며 상대적으로 개인의 노력에 따라 수입이 크게 변화하는 자영업자에게 영향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자영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자본축적이 요구되나 높은 세 부담은 개인부분의 저축을 감소시켜 자영업자로의 진입을 제한하게 된다.

간접적인 효과로는 높은 소득관련 과세로 인한 정부서비스 증가 효과이다. 정부 재정수입의 증가는 우선 사회보장 등 각종 공공서비스를 증대시키게 되는데 실업 및 노후보장 관련 복지제도가 완비될수록 임금근로자로의 노동이동이 촉진된다. 또한 정부규모의 증가는 기존의 자영업자들이 담당하는 산업부분을 축소시키거나 임금근로자 시장으로의 전환을 촉진시키게 되며 상대적으로 민간자본 비중을 축소시켜 개인의 자본접근성을 제한하게 된다.

개인의 직업 선택 과정에서 작용하는 조세의 영향에 관한 이론적 배경은 비교적 단순하다. Boskin(1974)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자영업을 할 것인가 임금근로자가 될 것인가를 결정할 때는 미래의 기대소득에서 예상비용을 제외한 일생소득 현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생 동안의 수입과 비용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임과 동시에 개인이 직면하는 유동성 제약 등을 고려하여 현 시점의 소득과 비용관련 변수를 이용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Robson and Wren(1999)은 개인의 탈세 가능성과 수입수준을 결정하는 노력을 선택변수로 하는 모형을 구성하고 평균세율과 한계세율⁷⁾이 자영업자수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침을 도출하였다. 일률적인 세율의 증가는 자영업자로의 노동이동을 촉진시키며 한계세율의 증가는 임금근로자로의 노동이동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5개 OECD국가들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Gentry and Hubbard(2000)는 미국 PSID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세의 누진도(Convexity of tax system)가 자영업자로의 노동진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외 많은 실증분석에서는 소득세 이외의 많은 요인들로 인해 이론적 모형과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평균세율의 인상은 자영업자 비중의 증대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계세율 변화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arker and Robson, 2004). 한편 Robson(1996), Folster(2001)는 평균세 부담의 증가가 자영업자의 비중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보여주나 이들은 평균세율과 한계세율의 영향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Robson, 1998; Robson and Wren, 1999).

7) 그러나 거시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는 한계세율을 나타내는 변수를 설정하기 어려워 평균 생산직근로자 임금수준의 한계세율을 이용하여 이에 따른 오차도 있다(Robson and Wren: 1999).

OECD(2000)는 5개 국가별(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회귀분석을 통해 평균세율 수준이 미치는 영향은 일본을 제외하고 대체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남을 보여주었으며 통합자료(Pooled data)를 이용한 경우에도 동일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실업률의 영향도 각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실업률의 증가가 임금근로자 수요의 감소를 초래하여 자영업자 수를 증가시키는 효과(recession push)와, 높은 실업률로 인한 사회 전체적인 수요감소로 자영업자 수를 감소시키는 효과(prosperity pull)의 상반된 효과를 지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Long(2001)은 미시자료를 이용해 개인의 직업 선택에서 조세증가는 자영업을 촉진시키는 영향이 있지만, 그 크기는 개인의 경험, 자본의 이용 가능성, 그리고 개인적 성향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III. 자영업자 현황 및 추이

OECD 국가들과 비교한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각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농업부문을 제외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003년을 기준으로 할 때 29.47%로 OECD 평균 13.76%의 두 배 이상 수준이다. 이는 멕시코의 31.37% 다음 수준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소득수준에 있는 포르투갈, 스페인, 뉴질랜드보다 높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특히 OECD 국가 중에서 소득수준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세계 환경을 갖고 있는 일본의 11.80%와도 좋은 대조를 보인다.

농업부문을 포함한 자영업자 비중 변화는 하락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산업발전에 따라 자연 감소중인 농업부문을 제외할 경우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30%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악화된 고용사정으로 인해 비농업 자영업자 비중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이후 하락하여 이전의 수준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는 동기간 일어난 정부규모 증가를 통한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제도로 인한 자영업 감소 효과를 감안할 때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유인변화가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한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각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농업부문을 제외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003년을 기준으로 할 때 29.47%로 OECD 평균 13.76%의 두 배 이상 수준이다. 특히 소득수준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세제환경을 갖고 있는 일본의 11.80%와도 좋은 대조를 보인다.

〈표 1〉 OECD 국가의 자영업자 비중

(단위: %)

국 가	1985	1990	1995	2000	2003
호주	16.37	15.91	15.91	14.48	13.36
오스트리아	14.94	14.16	14.40	13.12	12.76
벨기에	18.03	18.12	18.81	-	-
캐나다	10.35	9.51	10.61	10.66	9.74
체코	-	-	11.98	15.16	17.26
덴마크	12.41	11.68	139.29	8.73	8.82
핀란드	14.87	15.56	15.55	13.70	12.91
프랑스	15.03	13.17	10.80	9.20	8.84
독일	12.01	10.95	10.71	10.96	11.44
그리스	50.67	47.67	46.11	41.60	-
헝가리	-	-	17.99	15.19	13.46
아이슬란드	12.50	15.08	19.72	17.97	-
아일랜드	23.84	24.87	22.17	18.94	17.48
이탈리아	29.70	28.67	29.32	28.49	27.53
일본	25.40	22.32	18.29	16.61	15.14
한국	45.87	39.45	36.81	36.85	34.95
룩셈부르크	11.74	9.37	7.63	7.33	6.78
멕시코	-	31.91	40.90	36.41	37.13
네덜란드	11.58	11.65	12.45	12.04	-
뉴질랜드	-	19.95	20.97	-	19.32
노르웨이	12.25	-	9.33	7.39	7.33
폴란드	26.52	27.17	29.71	27.39	27.27
포르투갈	32.31	29.39	27.91	26.09	26.68
슬로바키아	-	-	6.53	7.96	9.75
스페인	30.17	25.82	25.18	20.07	18.54
스웨덴	7.30	9.19	11.19	10.29	9.64
스위스	-	-	12.74	13.18	11.94
터키	-	61.04	58.47	51.40	49.36
영국	13.11	15.10	14.62	12.27	12.67
미국	9.09	8.80	8.52	7.42	7.57
평 균	19.83	21.46	24.15	18.25	17.22

자료: OECD Labor statistics.

〈표 2〉 OECD 국가의 비농업부문 자영업자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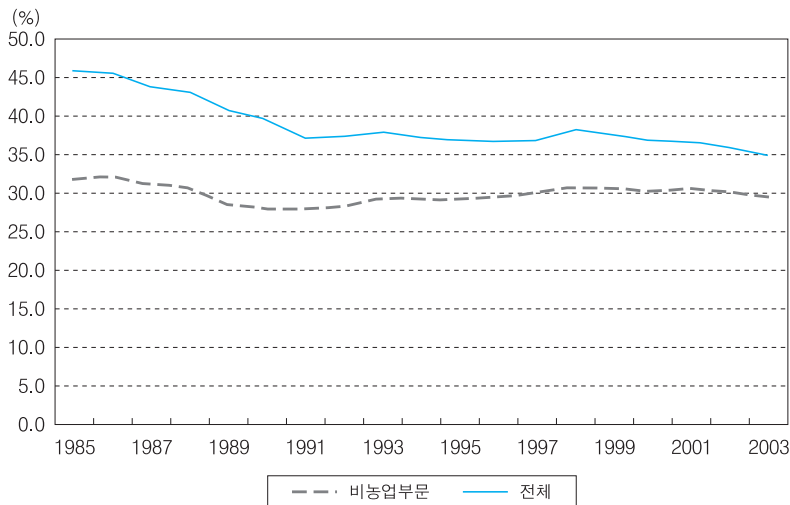
	1985	1990	1995	2000	2003
호주	12.89	12.95	13.51	12.40	11.95
오스트리아	7.78	7.86	8.61	8.74	8.87
벨기에	15.87	16.35	17.32	-	-
캐나다	7.79	7.55	9.01	9.55	8.88
체코	-	-	11.92	15.07	17.12
덴마크	8.75	8.55	10.13	7.19	7.43
핀란드	6.75	9.51	9.95	9.93	9.41
프랑스	9.82	9.26	7.99	7.10	6.88
독일	8.77	8.52	9.34	9.96	10.44
그리스	32.26	32.44	33.56	30.42	-
헝가리	-	-	17.56	13.22	12.26
아이슬란드	8.11	11.33	16.41	14.99	-
아일랜드	12.48	13.83	14.00	13.63	13.15
이탈리아	25.54	25.77	27.07	26.72	25.96
일본	19.04	16.99	14.09	12.86	11.80
한국	31.79	27.95	29.36	30.30	29.47
룩셈부르크	8.49	7.12	6.35	6.26	5.90
멕시코	-	24.04	32.29	30.28	31.37
네덜란드	8.37	9.10	10.72	10.68	-
뉴질랜드	0.00	15.14	16.91	-	16.50
노르웨이	7.29	-	6.18	5.11	5.08
폴란드	4.96	9.16	12.22	12.54	12.73
포르투갈	16.58	18.17	20.35	18.25	18.35
슬로바키아	-	-	6.86	8.13	10.23
스페인	21.66	20.43	21.16	17.36	16.34
스웨덴	4.52	7.32	9.48	9.04	8.52
터키	-	30.97	29.73	27.18	26.22
영국	12.26	14.23	13.74	11.71	12.15
미국	7.76	7.73	7.39	6.62	6.97
평 균	12.48	14.89	15.28	14.27	13.76

자료: OECD Labor statistics.

OECD 국가들의 전체 고용 중 비농업 자영업자 비중은 소득수준 및 소득세 수준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비록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지 않고 간략하게 살펴본 결과이지만 이러한 상관관계는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뚜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⁹⁾. 일인당 소득수준은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사회보장이 잘 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정부규모 증가

우리나라는 국가간 비교에서 상당히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일인당 소득과 소득세 비중 모두 자영업자 비중을 설명하는 국가간 상관관계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일인당 소득과 자영업자 비중간의 관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OECD 국가간의 평균적인 상관관계에 근접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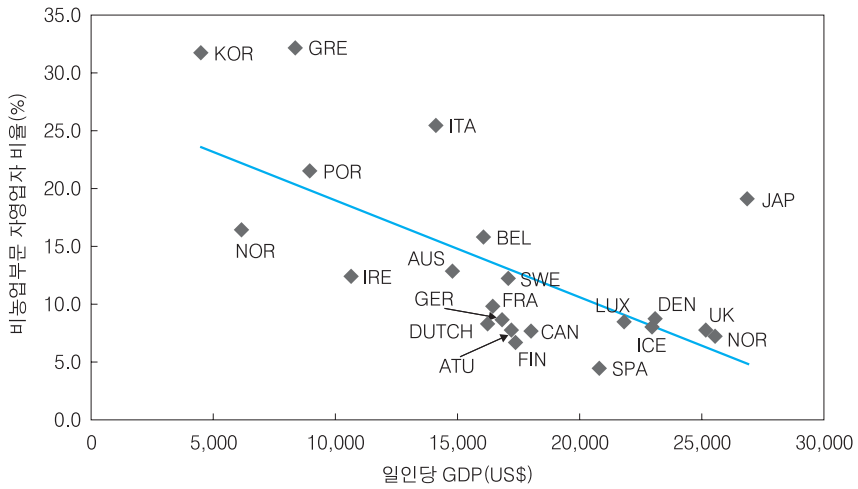


를 통한 간접적 효과를, 소득세 수준은 보다 직접적인 소득세와 자영업자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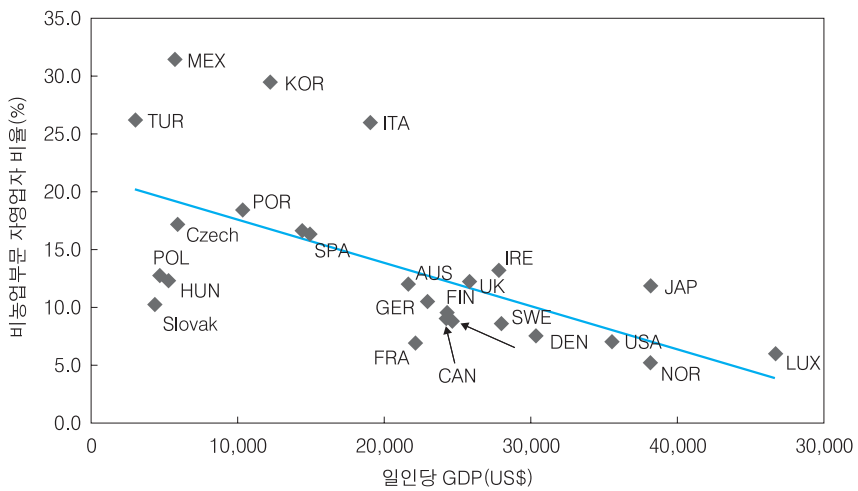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국가간 비교에서 상당히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일인당 소득과 소득세 비중 모두 자영업자 비중을 설명하는 국가간 상관관계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을 보여주는 국가는 2003년 기준 이탈리아, 멕시코, 터키 등으로 국가간 수렴과정에서 벗어나는 고유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의 경우 일인당 소득과 자영업자 비중간의 관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OECD 국가간의 평균적인 상관관계에 근접함을 알 수 있다.

8) 통제되지 않는 요인들은 실업률, 개인의 의지, 실업급여 수준 등이 있으나 사회보장 수준은 일정부분 소득수준(혹은 소득세부담)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개인별 자영업 의지는 측정의 어려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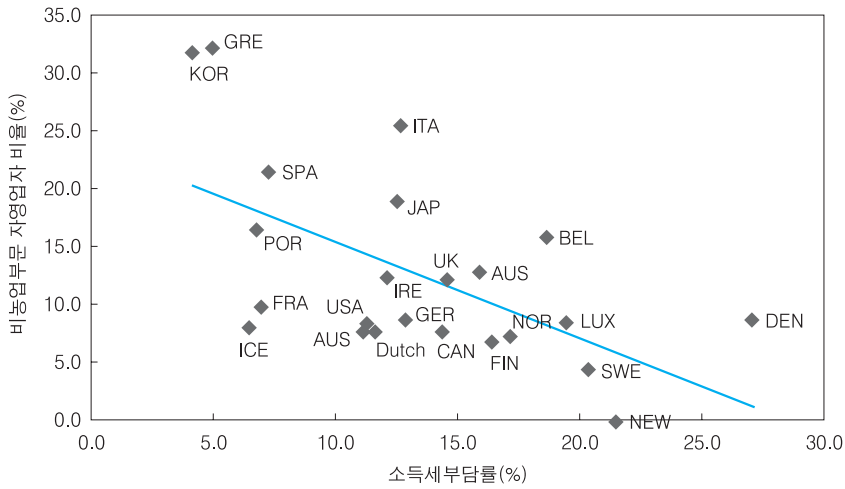
[그림 3] OECD 국가의 1인당 GDP 및 자영업자 비율(198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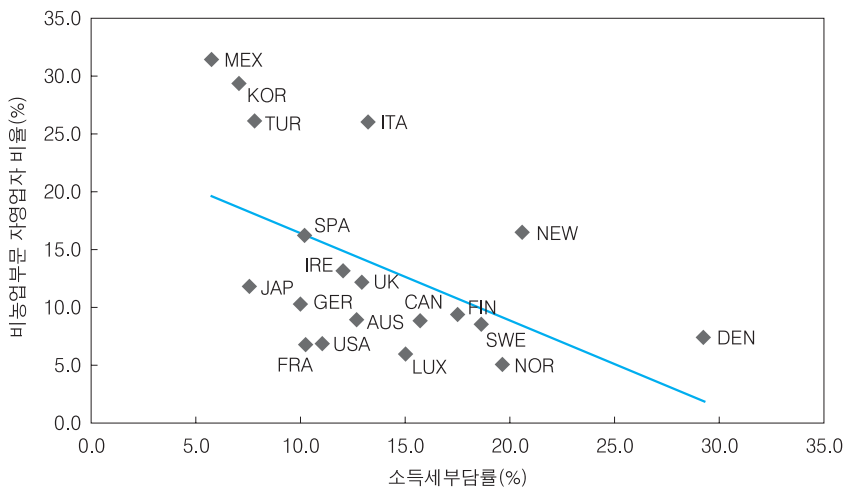
[그림 4] OECD 국가의 1인당 GDP 및 자영업자 비율(2003년)



[그림 5] OECD 국가의 소득세부담률 및 자영업자 비율(198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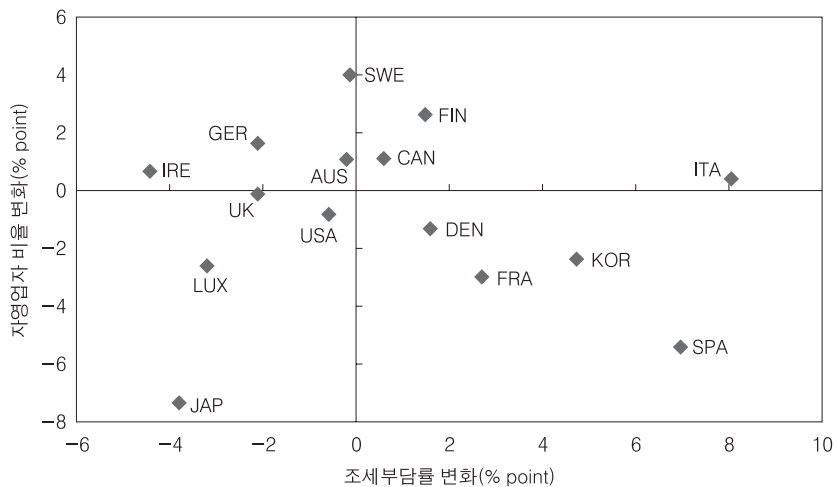


[그림 6] OECD 국가의 소득세부담률 및 자영업자 비율(2003년)



각 국가별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1985년 이후 2003년까지 자영업자 비율과 소득세부담률 변화의 방향을 살펴보면 상당한 국가들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독일,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우리나라 등은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핀란드, 캐나다, 미국, 룩셈부르크, 일본 등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분석기간중 외환위기에 따라 자영업자 비중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의 상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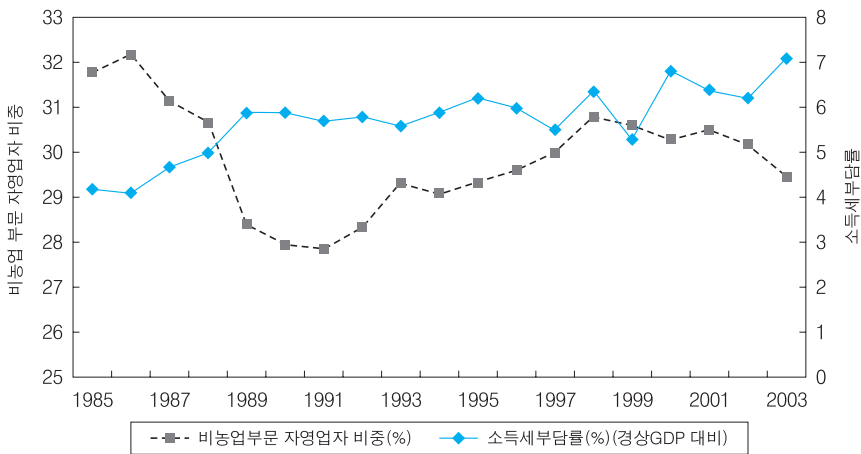
[그림 7] 비농업자 영업자 비율 변화 및 소득세부담률 변화(1985~2003)



이러한 상관관계는 실업률 등 다른 요인들이 통제되지 않은 상황이나, 평균소득세율이 자영업자 비율과의 상관관계가 각 국가의 특성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는 OECD(2000)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평균소득세 부담의 증가는 한계세율의 증가와 동시에 일어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들의 영향과 기타 변수들이 종합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1985년 이후 2003년까지 자영업자 비율과 소득세부담률 변화의 방향을 살펴보면 상당한 국가들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독일,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우리나라 등은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핀란드, 캐나다, 미국, 룩셈부르크, 일본 등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8] 우리나라 비농업 부문 자영업자 비중 및 소득세부담률의 추이



자료: OECD Labor statistics, OECD Revenue statistics.

한편 자영업에서 주인과 함께 근로활동에 종사하는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각 국가별 조세회피 가능성과 연관성이 높을 수 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외부 근로활동에 참가하지 않고 가족이 운영하는 자영업에 종사하면서 자영업자의 소득을 공유하는 사람으로 자영업자의 조세회피 가능성을 나타내는 간접적인 지표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에 대한 소득과익이 어려운 현실에서 외부 일자리의 세후 임금률보다 가족 운영 자영업 일자리의 임금률이 높을수록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늘어나게 된다. 즉 소득과익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 경우 무급가족종사자로 조세부담을 회피해 나갈 수 있는 사업규모는 작아지게 되며 동시에 자영업자 일인당 무급가족종사자의 수가 낮아지게 될 것이다.

자영업자 1인 대비 무급가족종사자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1985년 이후 크게 개선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 최고수준에 달하고 있어 낮은

소득과악률이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1인 대비 무급가족종사자 수는 1985년 0.28명 수준에서 2003년에는 0.22명 수준으로 낮아져 자영업에 대한 소득과악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절대적인 수준으로는 일본(0.36)⁹⁾다음으로 높아 OECD 국가 평균인 0.11명의 두 배 수준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OECD 국가에 가입한 멕시코, 터키, 슬로바키아, 체코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표 3〉 비농업 자영업자 1인당 무급가족종사자 수

	1985	1990	1995	2000	2003
호주	0.02	0.05	0.05	0.05	0.02
오스트리아	0.30	0.19	0.20	0.16	0.13
벨기에	0.27	0.26	0.25	-	-
캐나다	0.04	0.03	0.03	0.02	0.01
체코	-	-	0.04	0.04	0.04
덴마크	0.22	0.19	-	0.09	0.06
핀란드	0.04	0.02	-	0.02	-
독일	-	-	0.07	0.05	0.07
그리스	0.19	0.18	0.21	0.18	-
헝가리	-	-	0.05	0.04	0.03
아이슬란드	-	-	0.05	0.01	-
아일랜드	0.05	0.05	0.04	0.06	0.05
이탈리아	0.20	0.16	0.17	0.15	0.17
일본	0.48	0.48	0.42	0.38	0.36
한국	0.28	0.28	0.26	0.25	0.22
멕시코	-	0.21	0.23	0.19	0.19
네덜란드	-	0.16	0.11	0.06	-
뉴질랜드	-	0.04	0.04	-	0.03
노르웨이	0.13	-	0.05	0.06	-
폴란드	-	-	0.08	0.06	0.06
포르투갈	-	0.09	0.06	0.07	0.05
슬로바키아	-	-	0.02	0.02	0.05
스페인	0.22	0.21	0.14	0.10	0.08
스웨덴	0.01	0.01	0.02	0.02	0.02
터키	-	0.17	0.18	0.17	0.16
영국	0.16	0.15	0.13	0.08	0.05
미국	0.04	0.03	0.01	0.01	0.01
평균	0.23	0.18	0.17	0.12	0.11

자료: OECD Labor statistics.

9) 일본의 경우 높은 수준을 보이는 이유는 기업승계형 자영업이 많은 사회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순경비율의 조정은 다양한 개별 사업체의 비용구조 파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경기지표 등을 이용하여 업종별 호·불황 여부를 판단하고 경비율을 조정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실제 비용 구조와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자영업자 비중 변화와 함께 산업부문별 자영업자 분포추이도 소득세와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 소득과악에 어려움이 있어 이들에 대한 과세를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에 기준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비용구조와 다른 경비율(혹은 소득률)을 적용할 경우 산업간 노동공급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단순경비율의 조정은 다양한 개별 사업체의 비용구조 파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경기지표 등을 이용하여 업종별 호·불황 여부를 판단하고 경비율을 조정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실제 비용구조와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의 주요 경비는 증빙서류에 의거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 경비율을 적용하는 기준경비율 제도의 경우에도 제무제표 분석이나 표본조사를 통해 경비율을 조정하고 있으나 비슷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제무제표 분석이나 표본조사를 이용하는 방안은 이를 통해 실제와 유사한 비용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는 가정이 전제되어야 하나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는 중소 자영업자의 경우 이러한 방법에도 불구하고 소득과악의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준경비율 제도의 경우 고용 근로자 중 가족에 대한 과다임금 지출을 통한 조세회피, 즉 소득이동(Income Shifting)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현재¹⁰⁾ 운용중인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제도는 비용구조 파악의 한계로 인해 업종별 자영업자에게 차별적인 조세제도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

산업별 자영업자의 비중추이를 살펴보면 농림업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나나 급속한 하락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자영업의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 중 도소매업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1999년 28.4%까지 증가하였다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3년 25.83%수준에 이르고 있다. 반면 금융·통신·창고업, 부동산·임대·사업, 개인서비스업 등은 꾸준한 상승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10) 기존의 표준소득률, 즉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제도는 2002년 소득귀속분부터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즉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비용으로 환산하는, 제도로 변경되었으나 본질적으로는 같은 개념임.

〈표 4〉 산업별 자영업자 비중 변화추이

(단위: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농림업	28.72	27.15	25.87	24.48	23.48	22.51
수산업	0.59	0.60	0.62	0.61	0.53	0.61
광업	0.03	0.01	0.03	0.03	0.04	0.05
제조업	8.55	9.04	9.35	9.25	9.01	8.43
전기가스 등	0.00	0.00	0.00	0.00	0.00	0.01
건설	4.49	4.05	4.52	4.73	5.17	5.97
도소매업	27.93	28.40	26.65	26.78	26.23	25.83
호텔식당업	12.05	12.12	11.89	11.51	11.68	12.38
교통통신창고	4.23	4.54	4.89	5.33	6.01	6.32
금융중개	0.46	0.56	0.68	0.76	0.75	0.50
부동산, 임대, 사업	3.26	3.67	3.71	4.02	4.28	4.40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0.00	0.03	0.00	0.00	0.00	0.01
교육	3.09	3.05	3.17	3.27	3.08	3.70
보건	0.75	0.80	0.73	0.71	0.83	0.57
개인서비스	5.58	5.60	7.45	7.92	8.18	8.03
가사서비스	0.29	0.37	0.45	0.62	0.74	0.69
기타	0.00	0.00	0.00	0.00	0.00	0.00

주: 업종별 세부 단순경비율의 평균치임.
 자료: OECD Labor statistics.

산업부문별 세부담을 결정하는 소득률의 변화를 단순경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800~900여종의 업종별 소득률을 단순평균함으로 인해 큰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기존의 표준소득률 제도를 단순(기준)경비율 제도로 변경한 2002년을 기준으로 도소매업과 호텔식당업의 소득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반면 보건업의 경우 1%포인트 이상 소득률이 상향조정되었다.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상대적인 소득률이 하락하여 소득세 부담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변화가 이루어졌다. 반면 보건업의 경우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소득률이 변화하여 동 부분으로의 노동공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소득률의 변화는 시장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노동균형을 왜곡하여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게 된다.

〈표 5〉 산업별 소득률 변화추이

(단위: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농림업	9.709	9.645	9.600	9.600	9.600	9.482
수산업	5.527	5.382	5.382	5.282	5.282	5.282
광업	7.124	7.106	7.106	7.106	7.106	7.106
제조업	9.500	9.453	9.455	9.390	9.099	9.097
전기가스 등	11.500	11.500	11.500	11.500	11.500	11.500
건설	10.950	10.839	10.494	10.450	10.450	10.439
도소매업	9.328	9.318	9.333	9.315	8.810	8.783
호텔식당업	26.463	26.896	27.058	27.167	25.419	25.410
교통통신창고	18.404	18.396	18.370	18.317	18.317	18.233
금융중개	28.125	28.246	28.246	28.246	28.246	28.350
부동산, 임대, 사업	32.398	32.333	32.182	32.262	32.625	32.533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n.a.	n.a.	n.a.	n.a.	n.a.	n.a.
교육	23.813	23.925	23.638	24.213	24.213	23.963
보건	28.146	28.146	29.358	29.929	31.230	31.830
개인서비스	29.331	29.292	29.431	29.744	29.176	29.021
가사서비스	26.300	26.300	26.300	26.300	26.300	26.300
기타	12.100	12.100	12.100	12.100	12.100	12.100

주: 1. 2002년 이후는 단순경비율을 이용하여 산정한 소득률임.

2. 각 세분류 업종별 소득률의 산술평균치임.

자료: 국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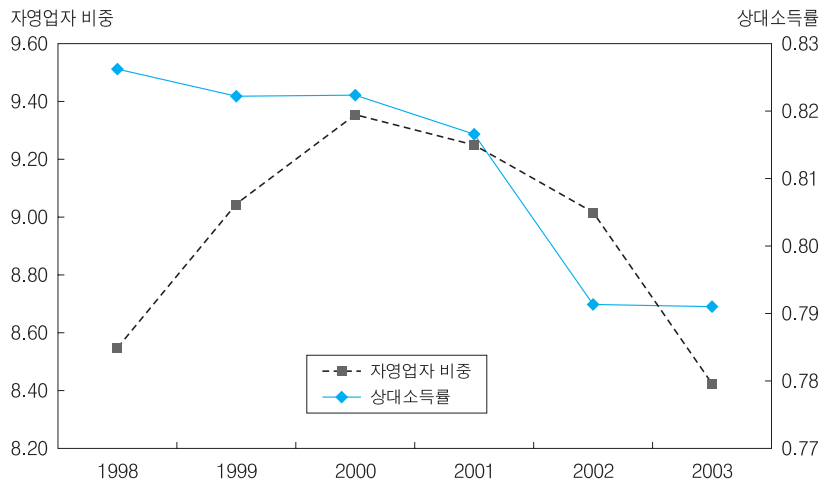
소득률의 변화가 없었던 전기가스업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도별 상대소득률은 업종별 소득세 차별화 정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나타낸다. 각 업종별 비용구조의 상대적 변화가 없었다고 가정하면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상대적인 소득률이 하락하여 소득세 부담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변화가 이루어졌다. 반면 보건업의 경우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소득률이 변화하여 동 부분으로의 노동공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소득률의 변화는 시장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노동균형을 왜곡하여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게 된다.

〈표 6〉 산업별 상대소득률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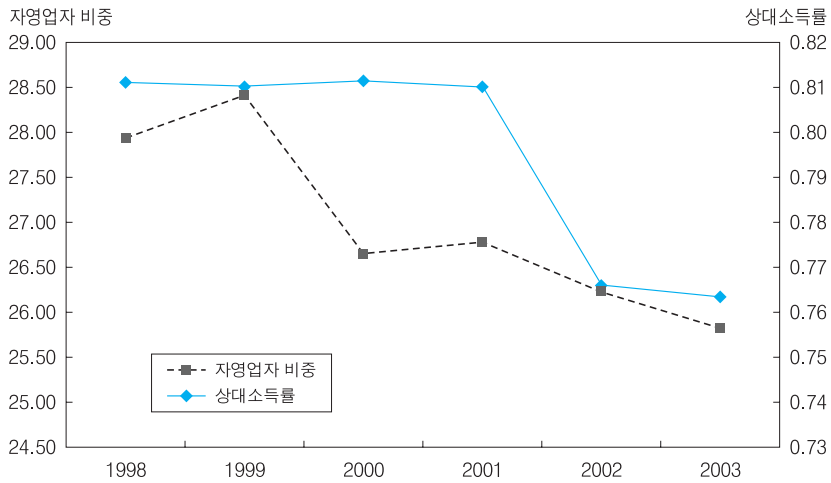
(단위: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제조업	0.826	0.822	0.822	0.817	0.791	0.791
전기가스 등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건설	0.952	0.943	0.913	0.909	0.909	0.908
도소매업	0.811	0.810	0.812	0.810	0.766	0.764
호텔식당업	2.301	2.339	2.353	2.362	2.210	2.210
교통, 통신, 창고	1.600	1.600	1.597	1.593	1.593	1.585
금융중개	2.446	2.456	2.456	2.456	2.456	2.465
부동산, 임대, 사업	2.817	2.812	2.798	2.805	2.837	2.829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n.a.	n.a.	n.a.	n.a.	n.a.	n.a.
교육	2.071	2.080	2.055	2.105	2.105	2.084
보건	2.447	2.447	2.553	2.603	2.716	2.768
개인서비스	2.551	2.547	2.559	2.586	2.537	2.524
가사서비스	2.287	2.287	2.287	2.287	2.287	2.287
기타	1.052	1.052	1.052	1.052	1.052	1.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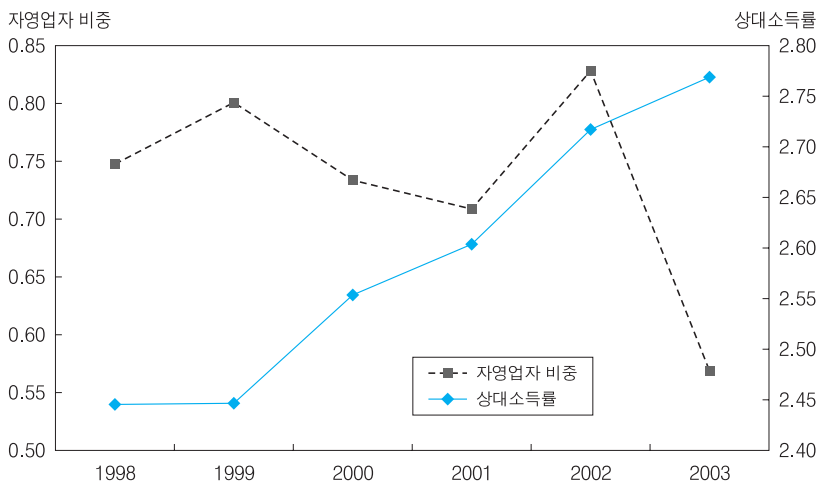
〔그림 9〕 제조업의 자영업자 비중과 상대소득률 변화



[그림 10] 도소매업의 자영업자 비중과 상대소득률 변화




[그림 11] 보건업의 자영업자 비중과 상대소득률 변화



IV. 정책 시사점

최근 자영업 부문의 성장 및 고용 잠재력이 높게 평가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정부에 의해 제시되고 있으며 그 중 조세지원은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자영업자 비중에 대한 요인 분석은 OECD 국가간 분석이 시도되기도 하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아주 특이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어 그 행태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들의 노동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자영업자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고유의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에 기인하지만 그 중에서 소득과악의 어려움으로 인한 낮은 실효소득세 부담의 영향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실업 등의 영향을 통제하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1985~2003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과 소득세 부담간에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어 향후 경제성장과 함께 자영업자 비중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임금고용시장으로의 노동이동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자영업에서 임금노동시장으로의 노동력 이동 가능성은 향후 성장률 등 다른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한편 조세행정의 유효성을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자영업자 일인당 무급가족종사자의 수는 뚜렷한 개선추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가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비슷한 시기에 OECD에 가입한 멕시코, 터키, 슬로바키아, 체코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산업부문별로는 단순경비율 제도의 경우 비용구조가 아닌 경기에 따른 경비율 조정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차별적인 소득세 제도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다. 차별적 소득세 구조는 노동시장의 왜곡을 초래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며 시장조정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 추이에 따르면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경우 소득률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함으로써 동 부분으로부터 자영업자 유출을 억제하였으며 보건업의 경우 소득률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함으로써 자영업자 유입을 억제한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세 정책은 기장에 의한 소득신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며 동시에 단순경비율 등의 조정은 경기 상황에 따른 방식보다는 산업별 비용구조에 수렴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부문별로는 단순경비율 제도의 경우 비용구조가 아닌 경기에 따른 경비율 조정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차별적인 소득세 제도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다. 차별적 소득세 구조는 노동시장의 왜곡을 초래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며 시장조정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

참고문헌

국세청, 「2004귀속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조정내용」, 보도자료, 2005.

재정경제부, 「벤처기업 활성화대책」, 보도자료, 2004.

재정경제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방안」, 보도자료, 2005.

Michael Boskin, “A conditional logit model of occupational choice,”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2 No. 2, 1974.

Stefan Folster, “Do lower taxes stimulate self-employment?,” *Small Business Economics* 19, 2001.

James Long, “The income tax and self-employment,” *National Tax Journal* Vol 35 No. 1, 2001.

Simon Parker and M. Robson, “Explaining International variations in self-employment: Evidence from a panel of OECD countries,” *Southern Economic Journal* 71(2), 2004.

Martin Ronson, “Macroeconomic factors in the birth and death of U.K. firms: Evidence from quarterly VAT registrations,” *The Manchester School* 64, 1996.

Martin Ronson, “The rise in self-employment amongst U.K. males,” *Small Business Economics* 10, 1998.

Martin Robson and C. Wren, “Marginal and average tax rates and the incentive for self-employment,” *Southern Economic Journal* 65(4), 1999.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00.

_____, Labor Statistics Database, 2005.

기획

기획 주요국의 예산안

일본의 2005년도 예산안

/ 류덕현 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

* 『재정포럼』에서는 2005년 기획으로 주요국의 세제개편 동향 및 예산안을 특집으로 마련하여 매월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는 『일본의 2005년도 예산안』을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일본의 2005년도 예산안



류 덕 현 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dhryu@kipf.re.kr)

I. 서론

21세기에 들어서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 및 사회면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인구감소 사회를 야기하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구조의 고령화 문제이다. 여기에 고용형태 및 개인 생활양식의 다양화가 진전되고, 1990년대 거품경제의 붕괴 이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실시된 대규모 경기대책으로 인하여 누적된 장기부채 문제가 있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화의 달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재정개혁을 통하여

기초적 재정수지의 흑자를 도모하고 동시에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세제개편, 연금 및 사회보장제도 개혁, 우정공사·도로공단 등 특수법인의 민영화, 구조개혁특구 설치 등 일련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세제개정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다¹⁾. 따라서 일본의 예산안은 구조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던 2002년 이후 매년 구조개혁과 중장기 재정전망의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되고 있다. 2005년도 예산안 역시 2004년 1월에 발표되었던 「구조개혁과 경제재정의 중기전망-2004년도 개정안」에 근거하고 있다²⁾.

이하에서는 일본의 2005 회계연도 예산안의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1) 최근 일본의 세제개편에 대해선 원종학의 『재정포럼』 2005년 2월호 '일본의 2005년도 세제개편'을 참고하라.

2) 「구조개혁과 경제재정의 중기전망」은 2002년 1월 25일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매년 개정하고 있으며 2005년도 예산안이 근거하고 있는 것은 제3차 개정안으로 2004년도 개정안이다. 자세한 사항은 이 글 제Ⅲ장 구조개혁과 중장기 재정전망을 참고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이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을 제공하는 구조개혁과 중장기 재정운용 및 전망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 2005회계연도 예산안의 주요내용

1. 거시경제 및 재정상황

일본 경제는 2003년 이후 기업수익의 개선, 중국 등 아시아 국가로의 수출 호조 등 기업부문의 견조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고용환경의 회복 등의 움직임이 보여 완만하게나마 내수 중심의 경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실질GDP는 2004년 2/4분기중 전기 대비 0.3%(연율 1.3%) 늘어나 5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성장률은 1/4분기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일본의 재정적자는 CY2005년 재정수지를 기준으로 GDP 대비 6.4%에 달하여 OECD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일본의 국가채무/GDP 비율 또한 CY2005년에 170%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다. 정부의 조세수입은 FY2005년 기준으로 예산의 53.5%에 불과하며 FY2004년 기준 36조 5,900억엔에서 FY2005년 34조 3,900억엔으로 2조 2천억엔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부족한 부분은 국채를 발행하여 조달할 예정이어서 국채의존도(국채발행액/일반회계세출총액)는 41.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³⁾.

2. 예산기조 및 예산안 내용

2005회계연도 예산안의 기본원칙은 '경제 및 재정관리와 구조적 개혁에 관한 기본방침 2004'(2004. 6. 4 내각결정)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회계지출을 대체로 전년도 예산과 비슷하거나 하향된 수준으로 하여 재정혁신정책의 수행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모든 지출항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예산배분에 있

〈표 1〉일본 정부의 주요 재정정책

항 목	내 용
규제분야	국민생활과 직결된 분야나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 도움이 되는 분야 등에서의 규제개혁·민간개방을 추진
금융분야	금융상품·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고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얻을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실현
세제분야	정률감세, 주택세제 등에 관한 조치를 강구
세출분야	'개혁단행예산' 지속적으로 세출개혁 노선 견지·강화
사회보장제도	간호, 생활보호 등의 분야에서 제도개혁 노력
지역재생	지방의 권한과 책임을 크게 확대

3) 보다 자세한 내용은 OECD(2004) 'Economic Outlook 76'을 참고하라.

2005회계연도 예산안의 기본원칙은 일반회계지출을 대체로 전년도 예산과 비슷하거나 하향된 수준으로 하여 재정혁신정책의 수행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모든 지출항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예산배분에 있어서 정부의 기초적 재정수지를 향상시키고 국채발행을 최소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세출수준의 억제 및 재정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전반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어서 정부의 기초적 재정수지를 향상시키고 국채발행을 최소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세출수준의 억제 및 재정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전반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요 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공공투자과 관련된 지출은 FY2004 예산안 수준과 비교하여 3% 감소하였고 비재량적 지출(non-discretionary expenditures)은 FY2004

예산안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다. 추가 예산은 인건비(personnel expenses), 연금 및 의료보호, 그리고 인구조사와 같은 특별한 요인에 대해서만 편성되었다. 재량적 지출(Discretionary expenditures)의 경우에는 FY2004 예산안 수준에 비해 2% 감소하였으며 과학과 기술개발에 대한 지출은 FY2004 예산안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표 2〉 일반회계예산(FY2005)

(단위: 억엔)

	FY2004	FY2005	증감분	참 고 사 항
수입				
세수수입	417,470	440,070	22,600	• 세원의 추가적인 이전에 따른 효과: △6,910 • 전반적인 세액공제(20%)의 감축에 따른 세수증가분: 1,850
기타수입	37,739	37,859	120	
국채발행	365,900	343,900	△22,000	• 2001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국채발행 감소 • 국채의존도: 44.6% → 41.8%로 감소
합 계	821,109	821,829	720	
지출				
국채상환	175,685	184,422	8,737	
지방교부세	164,935	160,889	△4,046	일반회계에서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세출의 합리화를 통해 억제
일반세출	476,320	472,829	△3,491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증가가 필수불가결한 추세 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일반 세출규모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삼위일체 개혁과 모든 세출항목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과거 3년간 처음으로 감소함
NTT-B 사업상환 보조	4,169	3,689	△480	
합 계	821,109	821,829	720	

3. 분야별 예산 및 주요 예산사업

일본은 현재의 재정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삼위일체 재정개혁⁴⁾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지방정부에 대한 보조금 개정과 관련하여 의무교육에 대한 보조 증가액(4,250억엔), 국가건강보험(health insurance) 시스템에 대한 정부 기부 증가액(3,430억엔), 공중위생에 대한 보조 증가액(490억엔), 도로건설에 대한 보조 증가액(270억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세원이양과 관련해서는 소득양여세(income transfer tax)에 의한 세원이전(2004년 4,249억엔→2005년에 6,910억엔)과 임시특별교부금(temporary special grant)에 의한 세원이양(2004년 2,042억엔→2005년에 4,250억엔)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에서의 지방교부세 및 지방정부 세출의 삭감을 위해 각 지출항목을 검토하여 지방정부 지출에서 약 0.9조엔을 삭감하고 지방교부세에서 0.8조엔을 삭감하는 등 지방교부세 개정을 실행하였다.

국가방위 분야에서는 새로운 국가안보 환경에서의 방위력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통해 탄도 미사일방어(BMD)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보력과 국제수송 능력을 강화하였다. 2005년 방위예산은 4조 8,564억엔으로 3년 연속 감축편성 달성(2003년 0.1%, 2004년 1%, 2005년 1% 감축)하였으며, 차후 중기방어프로그램(MTDP)에 대한 향후 5년간의 총비용은 24.2조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회보장 분야에서는 자택(home)과 요양시설 사이의 균형을 위해 사용자 부담(users' burden)을 검토하는 등 장기의료보험시스템의 개혁과 도도부현(都道府縣)의 재정조정교부금을 도입하고 보험기반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도도부현(都道府縣)의 부담비율을 사업규모의 1/4에서 3/4으로 변경하여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권한의 강화에 따른 부담을 도입하였다.

공공사업 분야에서는 중점과제 선정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사업 관련비용을 3.6% 감축하였고 고용과 민간수요 확대에 기여하는 분야에 대한 중점사업을 선정하는 등 지난 5년간 15%의 비용절감을 달성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권 증진과 지역 경기부양을 위해 내각부(Cabinet Office)의 주도하에 공중위생 및 기타 목적을 위한 지방경기활성화 통합보조금을 설립(총 81억엔)하는 등 행정부처간 교부금(Inter-ministerial grant) 창설에 예산을 편성하였다.

다음으로 주요 예산사업을 살펴보면, 첫째,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대학개혁에 533억엔을 편성(18% 증가)하였고 청년고용 증진에 374억엔(24% 증가)을 편성하였다. 또한 신규산업 창조를 위한 전략 수립에 873억엔(41% 증가), 경쟁적인 연구자금 확충에 4,672억엔(30% 증가)을 편성하였다. 둘째, 공정하고 안전한 고령화 사회의 건설과 출생률 감소의 대책으로 보육원 운영비 증가(2,796억엔, 5%), 신규로 유선촬영(mammography) 장비 구입비(39억엔)와 식품안전을 위한 교부금(27억엔)을 신설하였다. 셋째, 특

4) 중앙·지방정부간의 삼위일체 개혁이란 국고보조부담금, 지방교부세, 세원이양을 포함한 세원배분에 관한 개혁을 지칭한다.

일본은 현재의 재정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삼위일체 재정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국고보조부담금, 지방교부세, 세원이양을 포함한 세원배분에 관한 개혁을 지칭한다.

색 있고 찾고 싶은 도시와 지방을 만들고자 관광 국가로의 지향(380억엔, 11% 증가)과 중소기업의 창업지원(158억엔, 39% 증가)에 예산을 편성하였다. 넷째, 친환경적 사회의 구축과 지구환경문제의 대응을 위해 233억엔(86% 증가), 다섯

째, 지역개발기금(193억엔, 45% 증가), 초대형 중추항만(278억엔, 21% 증가), 3대도시에 우회도로(loop roads) 건설(1,961억엔, 14% 증가), 방재(防災)공원(477억엔, 7% 증가) 등과 같은 중점 공공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을 배정하였다.

〈표 3〉 주요 경비별 예산

(단위: 억엔)

	FY2005 예산	FY2004 대비 증감분	변화율(%)
사회보장관련비	203,808	5,838	2.9
문교 및 과학진흥비	57,234	△4,096	△6.7
(과학기술진흥비)	13,170	329	2.6
은급(恩給)관련비	10,693	△628	△5.5
방위관련비	48,564	△466	△1.0
공공사업관련비	75,310	△2,849	△3.6
경제협력비	7,404	△282	△3.7
(ODA)	7,862	△307	3.8
중소기업대책비	1,730	△8	△0.5
에너지대책비	4,984	△111	△2.2
식료안정공급관련비	6,755	△70	△1.0
산업투자특별회계	710	△278	△28.1
기타 사항경비	52,167	△541	△1.0
예비비	3,500	0	0.0
합 계	472,829	△3,491	△0.7

III. 구조개혁과 중장기 재정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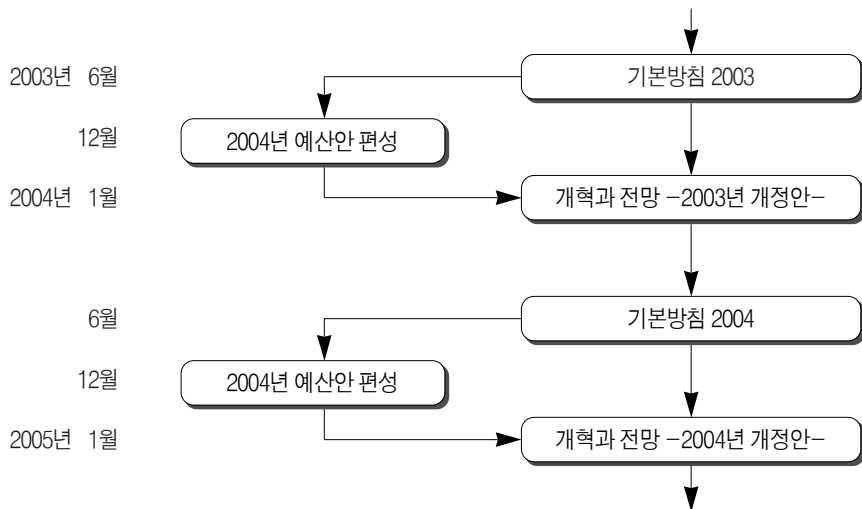
1. 예산안과 구조개혁안의 유기적 결합

일본 정부는 본격적인 구조개혁과 중기재정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2001년 1월 내각부에 ‘경제재정자문회의’(이하 ‘재정회의’)를 설치하였는데 이 재정회의는 전반적인 경제운영, 재정운영, 그리고 예산편성의 기본방침과 재정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하고 심의하는 기구이다.

‘재정회의’는 2001년 6월에 재정운영과 구조개혁에 대한 근본적이고 세부적인 방침을 제정한 것을 필두로 중기재정계획과 구조개혁안 그리고 예산안 편성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련의 플랜들을 발표한다. 아래 그림에서 알 수 있

듯이 일본의 예산안은 매년 12월에 편성되는 데 이를 위해 1월에 「구조개혁과 경제재정의 중기전망-전년도 개정안」(이하 ‘개혁과 전망’)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6월에 「기본방침-당해연도」를 제정하며 12월에 이러한 내용들을 감안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발표하게 된다. 여기서 ‘개혁과 전망’은 재정과 거시경제의 중기전망하에 단기와 중기의 재정정책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재정과 사회보장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기본방침’은 경제활성화 전략, 세계개혁, 그리고 세출개혁 등 당해연도에 가시적으로 수행되는 제반 경제정책들을 담은 세부지침들이며 당해연도의 구체적인 정책방향에 따라 매년 바뀐다고 할 수 있다⁵⁾.

[그림 1] 일본의 예산안과 구조개혁안의 결합(예시: 2004~2005년)



5) 참고로 2005년도 일본 정부의 예산안은 2004년 1월에 개정된 '개혁과 전망-2003년 개정'에 기초하고 2004년 6월에 발표된 '기본방침 2004'에 기초하고 있다.

2005년과 2006년 기간 동안의 중기재정 운영은 첫째,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노력을 가속화하고, 둘째, 재정의 자동안정화 장치 기능을 배려하는 등 유연한 경제안정화 대책을 작동하고, 셋째, 세출을 억제하여 일반정부의 지출 규모(대 GDP 비율)를 2002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고 넷째, 구조개혁을 한층 더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구조개혁과 중장기 재정전망

2006년 예산안의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개혁과 전망-2004년 개정’(2005년 1월)은 2009년을 최종연도로 하고 있는데 이 중 2005년과 2006년을 집중 강화기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의 중기재정 운영은 첫째,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노력을 가속화하고, 둘째, 재정의 자동안정화 장치 기능을 배려하는 등 유

연한 경제안정화 대책을 작동하고, 셋째, 세출을 억제하여 일반정부의 지출 규모(대 GDP 비율)를 2002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고 넷째, 구조개혁을 한층 더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중 구조개혁의 대상 분야는 금융·기업구조조정, 세제개편, 연금·사회보장제도, 특수법인 민영화, 규제개혁 특구지정, 그리고 기타 규제완화 등이며 구체적인 쟁점들은 <표 4>에 정리되어 있다.

<표 4> 구조개혁의 분야별 주요쟁점

(단위: %)

대상분야	주요쟁점
금융·기업구조조정	-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조기 정리 및 자본 강화 - 부실기업의 정리 또는 회생 등
세제개편	- 소비세 인상 등 세율 조정, 금융·증권·연금 세제개편 등 - 세원의 지방이양, 보조금 삭감, 지방교부세 축소 등 국가와 지방의 삼위일체 개혁
연금·사회보장제도	- 연금 급부금 삭감, 연금보험료 인상, 기초연금의 국고 부담률 인상, 연금지급 연령 조정, 공적연금제도 일원화 등 - 介護 및 의료보험제도 개선 등
특수법인 민영화	- 우정공사, 도로공단 등의 민영화
구조개혁특구	- 의료분야 등 핵심 관심분야에 대한 민간기업 참여 등
기타 규제완화	- 편의점에서의 의약품 판매 허용 등 12대 중점사항

자료: 한국은행, 「일본경제의 동향 및 전망과 주요 현안과제」(2004년)에서 재인용.

한편 ‘개혁과 전망-2004년 개정’에서는 참고 자료로 구조개혁의 성공과 실패의 경우에 대한 중기적인 시나리오별 재정전망을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만약 구조개혁과 재정건전화 노력이 성공했을 경우 ‘개혁과 전망-2004년 개정안’의 목표연도인 2009년에는 실질성장률은 1.5% 상승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 그리고 기초적 재정수지 적자의 GDP 대비 비율은 -1.5%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흑자로 전환되는 것은 2012년에 가서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표 5>와 <표 6> 참조).

또한 구조개혁과 재정건전화 노력이 실패했을 경우 실질GDP 성장률은 2006년 1.4%에서 2009년도에는 1.0%로 점점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초적 재정수지 적자의 명목GDP 비율은 2009년까지 3.5~3.6%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공채 등 잔고의 명목GDP 비율은 급격하게 늘어 구조개혁이 성공했을 경우보다 약 15~20%p가 많은 160% (2009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2] 참조).

일본 정부는 구조개혁과 재정건전화를 통해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과거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 위한 배전의 노력을 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구조개혁에 대한 고민과 산물을 예산안 편성과 결부하여 정부지출 규모를 합리화하고 민간수요 주도의 경제를 확립함과 동시에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권한이양을 도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노력은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 예를 들면, 중기재정계획,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 Top-down 예산제도 등과 궤를 같이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구조개혁과 재정건전화를 위한 중장기플랜인 ‘개혁과 전망’은 사회와 경제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개혁지침서로 우리의 중장기 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예산제도가 보다 중장기적인 개혁과제를 뒷받침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도하는 데 필수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KIPF**

일본 정부는 구조개혁과 재정건전화를 통해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과거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 위한 배전의 노력을 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구조개혁에 대한 고민과 산물을 예산안 편성과 결부하여 정부지출 규모를 합리화하고 민간수요 주도의 경제를 확립함과 동시에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권한이양을 도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일본경제의 중기 거시전망-구조개혁 노력과 재정수지 개선 노력 성공시

(단위: %, 조엔)

〈거시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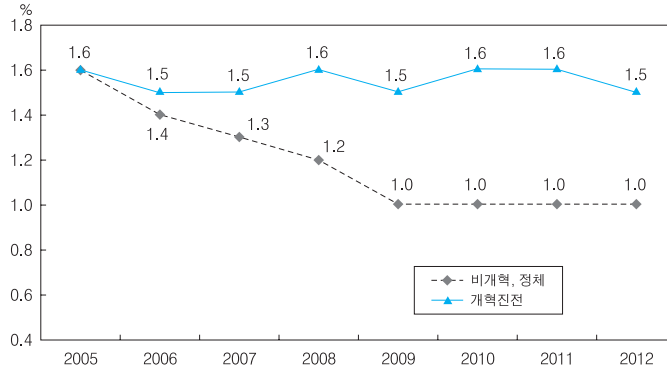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실질성장률	2.1	1.6	1.5	1.5	1.6	1.5	1.6	1.6	1.5
명목성장률	0.8	1.3	2.0	2.6	3.4	3.8	3.9	4.0	3.9
명목GDP	505.1	511.5	521.5	535.1	553.3	574.1	596.7	620.7	645.2
국민소득	373	377.4	379.9	390.0	403.7	418.6	435.7	453.9	472.3
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	-0.2	0.1	0.9	1.4	2.0	2.3	2.5	2.7	2.7
국내기업물가	1.4	0.4	0.9	1.2	1.6	1.8	1.9	2.0	1.9
GDP디플레이터	-1.3	-0.3	0.5	1.1	1.8	2.2	2.3	2.4	2.4
완전실업률	4.7	4.6	4.4	4.2	3.9	3.6	3.4	3.2	3.2
명목장기금리	1.6	1.6	1.9	2.3	2.9	3.4	3.9	4.3	4.6
저축투자차액									
일반정부	-7.3	-7.0	-6.1	-5.6	-5.3	-4.8	-4.5	-4.4	-4.2
민간	11.0	10.9	10.0	9.8	9.7	9.5	9.3	9.3	9.1
해외	-3.6	-3.9	-3.9	-4.1	-4.4	-4.7	-4.8	-4.9	-4.9

〈중기 재정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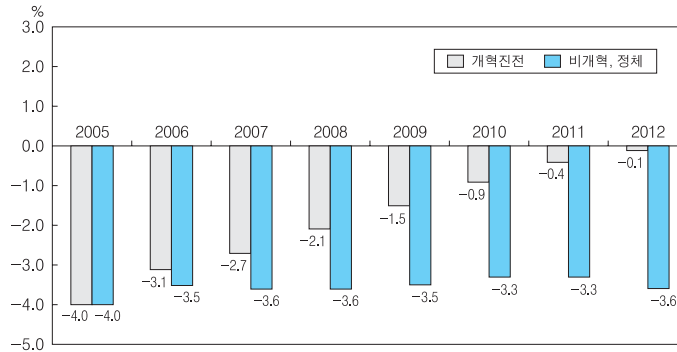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저축투자차액									
중앙정부	-6.3	-6.2	-5.4	-5.0	-4.9	-4.7	-4.6	-4.8	-4.9
지방정부	-0.4	-0.2	-0.0	-0.1	0.0	0.2	0.3	0.6	0.8
합계	-6.7	-6.3	-5.5	-5.1	-4.9	-4.5	-4.3	-4.1	-4.0
기초적재정수지									
중앙정부	-4.8	-4.5	-3.8	-3.2	-2.8	-2.3	-1.8	-1.6	-1.4
지방정부	0.4	0.5	0.6	0.6	0.7	0.8	1.0	1.3	1.5
합계	-4.4	-4.0	-3.1	-2.7	-2.1	-1.5	-0.9	-0.4	0.1
공채 등 잔고 (명목GDP비)	693.5 (137.3)	727.9 (142.3)	757.4 (145.2)	787.4 (147.2)	816.5 (147.6)	848.0 (147.7)	880.3 (147.5)	913.6 (147.2)	947.7 (146.9)
일반정부지출규모 (명목GDP비)	184.4 (36.5)	184.9 (36.2)	188.3 (36.1)	192.8 (36.0)	199.4 (36.0)	207.1 (36.1)	215.5 (36.1)	226.0 (36.4)	237.8 (36.9)

자료: 일본 경제재정자문회의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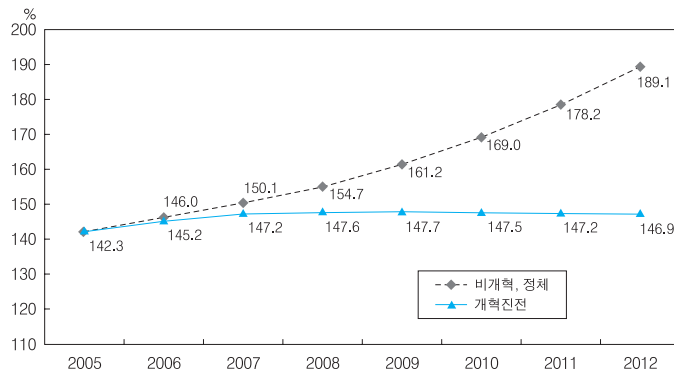
[그림 2] 시나리오별 중기 거시재정 전망
실질GDP 전망



기초적 재정수지(명목GDP 비율)



공채 등 잔고(명목GDP 비율)





정

책

연

구

-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 및 개편방안 / 안종석
- 지방선거 이후의 기초자치단체 재정운영의 변화 / 박노욱
- 우리나라 산업구조 및 실효관세율 변화연구 / 정재호 · 류덕현
- 국가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조세제도 정비방안: 운송부문을 중심으로 / 권오성 · 하현구
- 재정민주주의와 지출승인법 / 옥동석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 및 개편방안

안중석 / 선임연구위원(jsan@kipf.re.kr)

1. 연구개요

본 연구에서는 지방대학이 직면한 문제들을 검토하고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재정지원이 대학에 미친 영향,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 기술혁신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으로 대표되는 지방대 재정지원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2. 주요 연구결과

본 보고서의 주요 분석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대학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그 대학들이 지방에 소재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 지방대학이 겪는 신입생 충원의 어려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통계분석에 의하면 대학의 규모와 대학의 수도권 소재여부가 신입생 충원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의 소규모 대학으로서 학교운명을 거의 등록금에 의

존하는 사립대학의 어려움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둘째, 졸업생의 취업률은 지방대학이 특별히 낮다고 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해 보았으나 지역별, 대학별 취업률 격차를 잘 설명해 주는 모형과 변수를 찾아내지 못하였다.

셋째, 지역경제 발전이 그 지역의 대학교육을 팽창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가 같은 경우 1인당 GRP가 클수록 그 지역의 대학생수가 많으며, 이러한 경향은 전문대의 경우에 더욱 강하다. 한편, 학생수가 지역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넷째, 전반적으로 대학교육의 공급은 지역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을 일반대와 전문대로 구분해 보면 전문대학의 경우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다고 할 수 있는 반면 일반대의 경우에는 그렇게 단언할 수 없다.

다섯째, 대학의 다양화·특성화를 목적으로 개별 대학에 주어지는 재정지원이 교원 1인당 학생수로 표현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일차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재정지원이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교육성과를 제고하는 데까지 이르는지에 대해서는

현재의 권역별 자원배분방식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권역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권역이 지역 내 대학교육이 유발하는 외부효과의 파급범위에 비해 지나치게 좁아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대학간에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넓은 범위를 포괄하여야 한다.

입증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반대와 전문대로 구분해 볼 때 일반대에 비해 전문대 교육이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경제가 대학의 팽창 및 신입생 충원율에 미치는 영향, 졸업생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전문대의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전문대학의 발전은 지역 기술혁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정책시사점

본 연구에서 도출한 지방대 재정지원 체계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2004년에 누리사업을 도입하여 지방대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600억원에서 2,200억원으로 크게 확대하였는데, 이와 같은 지방대 재정지원 확대에 대한 본 연구의 견해는 긍정적이다. 지방대학들이 현재 직면한 문제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대학들이 지방에 소재한다는 점도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 중 보편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은 교육환경이 뒤떨어지며 자주적인 개선에 한계가 있는 지방대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당연하다.

둘째, 재정지원사업의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합한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 누

리사업은 지방대학을 통해 지역경제에서 요구하는 산업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것과 지방대학의 발전을 통해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형성할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목표는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들을 달성하는 방법은 상당히 다르다.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한 배분보다는 전국적으로 1~2개의 실현 가능한 사업단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현행 누리사업은 지역혁신 클러스터보다는 지역산업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현재의 권역별 자원배분방식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권역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배분방식은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여 권역별 지원액을 사전에 정함으로써 형평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권역 내에서의 경쟁을 통해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책효과를 추구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는 흔히 상충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형평성과 효율성간에 조화를 도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권역이 지역 내 대학교육이 유발하는 외부효과의 파급범위에 비해 지나치게 좁아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대학간에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넓은 범위를 포괄하여야 한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와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한 권역 내에 대학이 하나밖



B5변형/158면/2004. 12/
값 7,000원

력을 강조하며, 지역 내 산업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인력 공급에 중점을 두는 등 전문대학에 보다 적합한 특성을 많이 갖고 있다. 지역발전과 대학교육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본 연구에서는 일반대학에 비해 전문대학이 지역산업 발전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 기술혁신의 관점에서 일반대학보다 전문대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리콘밸리와 같은 첨단기술혁신 클러스터들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은 일반대학보다는 오히려 대학원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사업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든 지방대 지원사업에서 칸막이를 통해 학위과정간 차별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KIPF

에 없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권역 내 개별사업에 대한 지원규모에 대해서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기존의 대학 재정지원과 같은 소규모 지원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감소시키는 일차적인 효과는 유도할 수 있으나 그것을 통해서 또는 직접적으로 지방대학의 교육성과를 개선하거나 신입생 충원율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은 입증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지방대학의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의 변화를 유도하려면 보다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간의 차별문제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누리사업은 전문대학에서부터 대학원까지 모든 학위과정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조건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심대학을 4년제 대학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전문대학의 역할을 제한하고 있으며, 교육 중심의 지원으로 연구비 지출을 제한함으로써 대학원 과정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산·학·연 협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04-05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지방선거 이후의 기초자치단체 재정운영의 변화

박노욱 / 전문연구위원(npark@kipf.re.kr)

본 보고서는 1995년의 지방선거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밝히고자 하는 실증연구이다.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의해 선출됨으로써 그 선출방법이 임명에서 선거로 바뀌었다. 이런 정치적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직면하는 유인과 환경을 바꿈으로써 지방 재정운영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이전의 임명직 단체장에 비해 지방정부 재정을 운영할 때, 정치적 비용과 편익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 정치적 비용과 편익을 결정하는 주된 의제는 그 지역의 현안일 것이다. 이전의 임명직 단체장에게 있어서는, 그 지역의 현안은 여러 주요 의제 중의 하나일 뿐이었다. 그러므로, 선출직 단체장이 그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유인을 가지고 행동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지방선거 이후에 실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점검해 보기 위해 1991년부터 1999년까지의 기초자치단체의 수입측면의 자료를 실증분석한다. 이 기간을 선택한 이유는 이 기간 동안 비교적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재정제도 변화가 작았기 때문에 지방선거의 영향을 식별해 내는 데 적절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답하고자 한다.

(1) 1995년의 지방선거 실시 이후에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이 평균적으로 변화하였는가? (2) 이러한 변화가 각 지방정부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 변화의 차이가 각 지역의 정치적 변수로 설명될 수 있는가?

먼저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을 반영하는 세 가지 지수를 정의하였다. (1) 지방정부가 외부재원보다 내부재원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재정자립도 지수 (2) 지방정부가 내부재원을 증가시키기 위해 지방세보다 세외수입에 더욱 의존하는지를 보기 위한 세외수입 지수 (3) 지방정부가 외부재원을 증가시키기 위해 지방채보다 이전재원에 더욱 의존하는지를 보기 위한 이전재원 지수가 그것이다. 또, 정치적 변수의 역할을 보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장이 집권당 소속인지의 여부와 지방선거에서의 당선자와 차점자간의 득표율 차이를 정치적 경쟁을 반영하는 척도로 이용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자료를 패널자료로 구축하였다. 각 연도별로 있을 수 있는 거시적 변화를 통제하기 위해 연도효과를 도입하고, 각 기초자치단체의 고정적 특성(fixed effect)을 통제하기 위해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 기간 동안에 실시되었던 지방선거 이외의 다른 시계열적인 변화나 횡단면적인 교란요인들은 상당히

통제된, 지방선거 실시의 효과를 추정하고 있다. 또, 추정결과의 견고성을 점검하기 위해 몇 가지 견고성 검사(robustness test)를 하였다.

회귀분석을 한 결과, (1) 지방선거 이후에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평균적으로 3% 내지 4.5%포인트 정도 증가하였다. (2) 지방선거 이후 자체재원 중 세외수입의 비중이 3.5% 내지 8%포인트 정도 증가하였다. (3) 지방선거 이후 외부재원 중 이전재원의 비중이 0.4% 또는 0.5%포인트 증가하였다. (4)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경쟁이 심한 지역일수록 재정자립도의 증가율은 작았고, 이전재원의 비중의 증가율이 높았다.

이런 결과는,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지방정부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이 악화될지 모른다는 염려를 불식시켜 주고 있다. 그러나, 이 결과는 일반회계의 자료만을 이용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또, 이런 결과는 지방선거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실제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의 통제가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측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결과가 지방정부가 재정운영 능력이 있으므로 재정의 분권화를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결과가 분명하게 의미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선거 이후 지방정부가 자체재원 확보에 더욱 노력을 하였고, 자체재원 중에도 정치적 비용이 작은 세외수입의 증대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2) 외부재원 중 이전재원에의 의존이 증가는 하였으나 그 변화의 크기는 작다. (3) 지방선거 이후 정치적 변수의 역할이 나타났고, 정치적으로 경쟁이 심한 지역이 이전재원을 받는 데 유리한 위치에 있다.

본 연구는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정책연구가 아니라 지방선거의 영향을 식별해 내는 실증연구이므로, 연구



B5변형/106면/2004. 12/ 값 6,000원

결과로부터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지방분권화의 추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제기한다. (1) 지방분권화의 긍정적인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재정관계를 규정하는 재정제도뿐 아니라, 이러한 재정제도를 의도한 바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다른 제도나 환경도 중요하다. (2) 특히 본 연구결과가 보여주는 대로, 지방선거 실시 이후 정치적 요인이 지방재정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요인이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여건이 중요하다. (3) 앞으로 본격적인 분권화가 진행되면서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확대되고 정치적 영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하는 문화와 제도의 발전이 병행되어야 한다.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지역주민들의 투표 행태 개선과 지방정부의 재정운영 정보의 공개를 지적할 수 있다. **KIP**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04-07 『지방선거 이후의 기초자치단체 재정운영의 변화』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 및 실효관세율 변화연구

정재호 / 전문연구위원(jcheung@kipf.re.kr)

류덕현 / 초청연구위원(dhryu@kipf.re.kr)

본고는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와 관세율 변화라는 큰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였다. 우선, 산업구조와 실효관세율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이용하여 시계열 자료로 정리함으로써 향후 관세율 정책을 수립할 때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세율과 산업구조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관세율 정책이 분명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실증분석 결과 실효관세율은 무역특화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명목관세율은 수입의존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현재까지도 정책적으로 관세율 구조를 조정할 때 실효관세율 수준을 고려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향후에도 관세율 구조를 개편할 때 실효관세율 구조를 살펴볼 필요성이 높아졌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실효관세율 수준이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곧 정책적으로 주요 산업에 대해서는 실효관세율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선 최종재에 대한 관세율을 높일 수도 있지만 이는 WTO 체제에서 특히 ITA 협정에 의해 무관세가 추진된 최종재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 없는 정책이다. 따라서 중간재에 대한 전반적인 관세율 인

하가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중간재의 관세율을 낮출 것을 제안하는 것은 아니다. 중간재에 대한 선별 작업을 통해 중간재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성장잠재력이 없거나 고부가가치 산업이 아닌 경우에 원자재와 유사한 관세를 부과하고, 반면 고부가가치 부품 및 소재 산업에 대해서는 중심관세율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성장잠재력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분류되는 부품 및 소재 산업에 대한 관세 보호는 자원 재배분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새로운 정책시사점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를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향후 관세율 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이며, 본고의 분석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입증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할 만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중간재 선별 연구는 향후 개별 산업별 세부 연구를 통해 집중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분야로 본고의 연구영역을 넘는 부분이다. 특히,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산업별로 구체적인 핵심 부품 및 소재 산업 연구와 함께 업체별 실태 조사도 함께 시행되어 실질적으로 그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다. 또한 이를 HSK와 연계시키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

어진다면 정책에 즉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산·학·연 협동을 통한 방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선별적인 중간재 관세율 조정을 통해 역관세 문제도 일부 해결할 수 있다. 한 산업의 역관세 조정은 새로운 부문에 대해 역관세를 발생시킬 수 있고, 역관세 해소를 위해 중간재 부문에 대해 관세율을 낮출 경우 해당 중간재 산업의 보호수준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완제품 산업과 중간재 산업 중 어느 산업을 더 중시할 것인지에 대한 산업 정책적 판단과 중간재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유사한 품목들에 대한 관세율 수준도 함께 고려하여 세율 불균형에 따른 자원 배분의 왜곡을 방지해야 하는 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본고에서는 주요 산업에 대한 역관세 조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식물성 유지 및 식용유의 경우 콩류, 유지작물 등의 관세율을 낮출 경우 역관세 현상이 해소되었다. 그러나 콩류와 유지작물 중 대두, 녹두, 참깨 등은 시장접근물량 관리 품목으로 매우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식물성 유지 및 식용유의 역관세를 해소할 것인지 아니면 농산물 보호를 위한 농산물 고관세 정책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중요한 사례가 된다.

또한 나프타 역관세 해소를 위해서는 원유에 대한 관세율 인하가 필요한데, 원유의 관세율 수준은 나프타에서 나타나는 역관세 해소보다는 더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들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편,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 등 제조업에서는 개별 산업간의 연관관계가 복잡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한 산업의 역관세 해소를 위해서는 여러 중간재 산업의 관세율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중간재에 대해 보호를 할 것이고 어느 중간재를 개방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

특히 컴퓨터와 주변기기 산업처럼 해당 산업의 중간재가 여러 산업에 걸쳐 폭 넓게 분포되어 있을 경우에



B5변형/158면/2004. 12/
값 7,000원

는 최종재보다는 보다 많은 중간재 산업의 보호가 더 나은 정책대안으로 여겨진다. 다만, 집적회로 산업처럼 컴퓨터와 주변기기 산업도 무역특화지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수출품에 대한 관세환급제도의 적극 활용과 제도적 개선을 통해 최종재 보호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선박의 역관세 문제는 역관세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이는 현재 선박제조시설은 보세구역이고 대부분의 선박이 수출됨으로써 관세유예와 사후 환급에 의해 사실상 완성품 업체에겐 관세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에 품질과 가격에서 우월한 특정 국내부품을 제외하고는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국내 중간재의 관세율을 낮추어 보호수준을 낮추는 것은 선박의 역관세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해당 중간재 산업에 피해를 주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역관세 해소 혹은 실효관세율 개선을 위해 개별 품목별로 관세율을 조정하거나 중간재에 적절한 관세율을 부과할 경우 현재 우리나라가 유지하고 있는 중심관세

중간재에 대한 전반적인 관세율 인하가 필요하다. 중간재에 대한 선별 작업을 통해 성장잠재력이 없거나 고부가가치 산업이 아닌 경우에 원자재와 유사한 관세율 부과하고, 반면 고부가가치 부품 및 소재 산업에 대해서는 중심관세율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부품 및 소재 산업에 대한 관세 보호는 자원 재배분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율 체계와 상충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경제가 복잡해질수록 정책당국에서 개별 산업별, 더 나아가 개별 품목별로 세분화하여 개별적인 최적의 관세율을 찾아 이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산업간 연관관계가 복잡해질수록 최적 관세율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가 중심관세율체계를 유지하면서 향후 중간재 관세율에 주목하려면 중간재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원자재와 유사한 관세와 최종재와 같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실효관세율 개선과 역관세 해소 등 관세율 정책이 추구하는 최적의 자원 배분을 유도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관세율 정책의 시행 시기는 DDA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기본관세율 체계 개편 여부가 판가름되기 때문에 그 이후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만약 지금 역관세 시정을 위해 기본관세율체계를 조정할 경우 향후 DDA 협상결과에 의해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 있어 다시 한번 개편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빠른 시간 안에 그리고 금전적인 비용 없이 산업구조가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 주체들에게 잘못된 신호로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저해하여 또 다른 경제적 비용을 치르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DDA협상 이후 전체적인 기본관세율 체계의 개편을 시도할 때 역관세 품목들 등 실효관세율 수준에 대해 정책적으로 고려하며, 다만, 현재 산업별로 역

관세로 인한 문제가 심각할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등의 탄력관세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탄력관세 제도의 취지가 바로 전체적인 기본관세율 체계 개편에 앞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추가적으로 산업변화의 큰 흐름 속에서 향후 관세율 정책 방향은 기본적으로 취약산업의 보호보다는 성장 산업에 대한 지원에 더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0~80년대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목표를 향해 관세율 정책도 같은 방향으로 운영되었다. 이런 관세율 정책은 두 차례에 걸친 관세인하에시제를 통해 산업 중심적에서 산업 중립적인 정책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섬유산업 등에 대한 관세율을 중심관세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정하였고, 우루과이라운드 등 대외적인 여건에 의해 관세율 인하 및 무세화가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 제조업의 산업구조는 섬유 및 가죽제품을 중심으로 한 소비재업종의 하락과 전기 및 전자기기 등 조립가공 업종의 상승으로 요약할 수 있다. 소비재 업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조립가공 업종은 상승하였다. 한편, 수출에서도 조립가공 제품의 수출비중은 크게 증가한 반면, 소비재 제품의 수출비중은 같은 기간 크게 감소하

여 우리나라 수출구조가 변화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관세율 정책과 연관시켜 분석하면, 1997년에 추진한 섬유산업 등에 대한 관세율 인상정책은 이들 산업을 수입 측면에서는 보호하였는지 모르지만,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켰다기보다는 이들 산업으로부터 보다 효율적인 산업으로의 자원 이동을 지연시켰을 뿐이라고 평가된다.

취약산업에 대한 관세율 정책상의 지원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관세율 정책은 자원배분에 있어서 일명 제로섬 게임(zero sum game)으로 정해진 관세율 수준에서 어느 한 산업을 지원함(관세율을 높임)으로써 다른 산업으로 이동할 자원을 특정 산업에 묶어 두거나 혹은 해당 산업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는 자원이 덜 배분되게 된다. 따라서 취약산업을 보호하여 이들 산업에 더 많은 자원이 배분되도록 관세율 정책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지원할지는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사양산업보호는 급격한 자유화의 폐해를 줄이고 정치적인 지지를 쉽게 얻기 때문에 편리한 정책이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한정된 자원과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에서는 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에 더 큰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다만, 사양산업에 대한 탄력관세, 반덤핑관세 혹은 관세환급 등의 정책수단을 완전히 배제하자는 것은 아니며 이런 정책수단은 필수적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은 고부가가치 핵심 중간재 산업에 대한 선별적 육성과도 일맥상통하는 정책이다.

본고는 향후 우리나라 관세율 정책 특히, 기본관세율 정책이 지향할 바에 대한 논의이다. 그러나 현재 여러 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또 다른 정책적 판단과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개별 국가별로 FTA가 체결되고, FTA는 특성상 모

든 품목을 일시에 무세화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철폐 예외품목, 관세유예기간 설정 품목, 그리고 즉시 관세철폐 품목 등으로 나누어 철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해당 국가별로 차등관세를 적용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이런 품목을 선별하여 관세를 차등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최상의 정책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해당 국가별로 품목별 산업별 차등관세를 어떻게 적용할지 즉, 어떤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 예외를 적용하고 관세유예기간 설정 품목으로 정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현재 이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특히, 중간재 산업이 발달한 일본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염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개별 국가별로 이루어지는 FTA 뿐만 아니라 FTA 대상국과 상관없이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놓고 볼 때 장기적으로 어떤 품목과 산업에 대해 관세 보호가 필요한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고 이런 연구 결과가 향후 기본관세율 체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KDI**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정책보고서 04-03 『우리나라 산업구조 및 실효관세를 변화연구』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국가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조세제도 정비방안

: 운송부문을 중심으로

권오성 / 전문연구위원(oskwon@kipf.re.kr)

하헌구 /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교수

본 보고서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국가물류체계 및 국가물류비 현황을 살펴보고,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제고 시킴으로써 국가물류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국가물류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운송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물류 및 조세체계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운송부문별 물류체계 개선 및 조세제도의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가물류비 감소를 위한 정책방향은 크게 수송부문과 수송부문 외의 기타 부문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수송부문에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물류비가 과도한 원인으로 연계수송의 미비, 도로운송의 편중적인 수송구조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수송체계의 불균형 완화를 위하여 연계수송(inter-modal)의 강화, 철도화차의 증차와 철도역의 CY 기지화, 인천공항의 접근성 향상과 연계교통망 확충 등이 필요하다. 또한, 연계수송(inter-modal)의 강화를 위해서는 철도인입 시설의 확충, 연안운송을 위한 전용선석과 부두CY의 확충, 상하차의 기계화 및 전산화 등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로운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비영업용 자가화물자동차의 비중을 감소시켜야 하고

영업용 화물운송의 효율성 제고와 선진화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영업용 화물운송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재계약 및 재증개·대리 제한을 개선하여야 하고, 영세하고 소규모인 화물자동차사업의 대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수송부문 외의 기타 부문에서 물류비 감소를 위한 정책방향에 있어서는 보관·창고분야, 물류아웃소싱, 물류기술개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보관·창고분야의 물류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또한, 산업단지내 보관창고시설의 입주 확대, 녹지지역내 물류시설의 건폐율 상향조정, 국유지 저가 장기임대추진, 보관창고분야의 아웃소싱의 강화 등을 추진하는 것이 보관·창고분야의 물류비를 감소시키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류아웃소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종합물류기업을 육성하고, 해외물류기업을 유치하여 우리나라의 전근대적인 물류기업과 하주기업의 관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물류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R&D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화물 운송망에 대한 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송업체와 하주기업이 수배송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

게 해야 할 것이다.

국가물류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운송 부문의 물류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는 물류 및 조세체계의 개선방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운송부문별 물류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육상도로를 이용하는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화물 운송사업의 시장진입제도가 2004년 4월부터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현행 일반·개별·용달 화물운수사업의 업종 구분이 시장에서의 기능과 역할, 물류산업에의 기여 측면에서 더 이상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현재의 톤급에 의한 일반·개별·용달화물의 구분이 아니라 화물자동차 일정 대수 이상을 보유한 기업형 화물운수업체와 개인화물운수사업자간의 구분으로 화물운수사업의 업종을 재편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04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이 신설됨으로써 화물운송 거래단계가 축소되고, 거래비용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화물운송 시스템의 투명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다단계 알선구조는 화물운송업의 수익성을 떨어뜨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방안으로 불법적인 다단계 알선·운송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철도는 장거리 대량수송이 가능하며, 수송효율이 높고, 환경친화적이며, 안전성이 높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가물류비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수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철도에 대한 역할의 확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철도연장은 현재 거의 모든 노선에서 수송의 한계용량에 다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철도 영업연장 확장을 위해서 철도에



B5변형/188면/2004. 12/ 값 8,000원

대한 투자비중을 증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성상 철도는 낮은 비용으로 대량수송이 용이하며, 토지 단위당 수송 능력이 도로에 비해 높으므로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면적이 작고 인구밀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로는 단거리 소규모 수송수단으로, 철도는 장거리 대량수송수단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연안화물운송의 경우에는 경쟁력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운송시간이 길다는 것으로서, 연안화물운송의 운송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으로는 초고속선의 투입, 갑문밖 하역을 통한 갑문통과 시간 절감, Ro/Ro선 투입에 의한 하역시간 절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운송부문의 조세체계의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현행 화물자동차운송업에 있어서 자동차관련 세제간의 과세기준이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과세기준간의 불일치는 차량무게(톤)를 구분함에 있어 각 세목간의 다양한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화물자동차의 급

운송부문의 조세체계의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현행 화물자동차운송업에 있어서 자동차관련 세제간의 과세기준이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철도 관련 세제 중 부산시가 부과하고 있는 컨테이너세에 대해서는 정부의 조세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연안화물선에 대한 유류세를 감면해주는 방법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격한 증가로 인한 공급과잉과 운임하락 등으로 인해 화물운송사업자들에게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같은 운송사업자인 버스운송사업자와 택시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감면의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화물운송료 및 경유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경영 정상화가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유류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있는데 지급 방식 및 절차 등에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현재 일부 효과를 거두고 있는 유가보조금 카드의 사용액 한도를 늘리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조금제도의 도입은 관련업계의 상황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제도의 일몰기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시함으로써 화물자동차운송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경영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운송업은 물류과정에서 필요한 기능 중 하나로서 독자적 산업활동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화물자동차운송업을 제조업과 같이 취급한다면 차고지는 일반업무용 건물부지보다는 공장용지에 가깝기 때문에 분리과세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철도 관련 세제 중 부산시가 부과하고 있는 컨테이너

세에 대해서는 시행 이후 오늘날까지 그 폐지와 개선에 대한 요구는 줄곧 제기되고 있다. 컨테이너세는 근본적으로 무역업계의 물류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수출 활성화를 저해하며, 부산항만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부산시 항만배후도로 건설비의 추가 재원은 철도수송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컨테이너세에 의존하지 말고, SOC투자재원의 명목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는 철도운영을 철도청이 담당하고 있어 조세 관련 현안이나 문제점이 거의 없지만 2005년에 철도공사가 출범하여 철도구조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면 새로운 철도관련 세제가 구성된다. 그러나 다른 운송수단과의 경쟁력을 감안하여 철도운영회사가 자생력을 가지고 철도경영이 정상화되는 시점까지는 운영회사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과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세하는 방안 등 정부의 조세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안화물선의 경우, 육로운송과는 달리 환경오염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고, 새로운 도로 등을 건설함으로써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연안화물선에 사용되는 유류는 경질유 등의 에너지를 정유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이므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안

화물선에 대한 유류세를 감면해주는 방법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연안화물선에 면세유를 공급하는 방법 등으로 유류세를 감면해주는 경우, 조세형평성에 있어서 기타 운송수단에 확산될 우려가 있으며, 국가재정 건전화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선결조건이 우선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보조금 등 다른 형태의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선원에 관련된 세제에 있어서는 선원들에 대한 임금수준이 육상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며, 내항선원 월급여액의 경우에 외양어선원과 외항상선원에 비해 불리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어 선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내항화물운송업의 경우 선원확보의 유인책을 제공하기 위해 선원의 승선수당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타 세제에 있어서 내항운송은 외항운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어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동북아중심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선박관련 세제지원 등을 통해 연안화물선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시점**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정책보고서 04-04 『국가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조세제도 정비방안: 운송부문을 중심으로』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재정민주주의와 지출승인법

옥동석 / 인천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

재정운용 과정에서는 재정총량규모, 분야별 재정배분, 사업별 내용과 추진방법 등에 대해 다양한 가치판단을 필요로 한다. 가치판단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는데,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의회가 입법권 또는 예산승인권의 형태로 국민의 의사를 결정한다. 행정부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법률 또는 예산의 규정에 따라 주어진 재량권을 활용하여 재정을 집행한다. 또한 사법부는 예산에 대한 입법권과 행정권의 범위, 행정권의 법률적 책임 등을 판단함으로써 재정운용에 참여한다.

재정민주주의란 국민의 의사를 재정운용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으로,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틀은 역사의 변천과 함께 발전하였다. 1900년대 초반까지의 선진국 경험에서 볼 때, 근대적 재정제도의 발전은 네 가지 요소를 구비하는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조세법률주의'로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의회에서 법률로 확정되어야 한다. 둘째, '지출법률주의'로서 지출의 항목별 내용과 금액은 의회에서 법률로 확정되어야 한다. 셋째, '통합예산'으로서 국가재정의 모든 지출과 수입을 단일의 책임하에서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넷째, '독립감사의 의회보고'로서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재정집행

의 결과를 감사하여 이를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의 통제하에서 예산으로 환류(feedback)시키는 것이다.

영국은 1217년 마그나카르타(Magna Charta) 제12조에서 '조세법률주의'를 확립하였다. 이 당시 의회의 가장 큰 관심은 국왕의 전횡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의회는 자금조성을 승인할 뿐 당해 자금의 지출목적과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혀 갖지 못했다. 그런데 조세가 국고수입의 일반적 재원이 아니라 특정 목적의 자금을 조성하는 수단으로 통상 부과되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의회는 조세수입이 사용되는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점차 발전시켰다.

조세수입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제도는 1600년대 전제 왕권을 행사하려던 스튜어트 왕조와 의회 사이의 투쟁에서 발전하였다. 1688년 명예혁명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특정 목적에 자금을 승인하는 '지출법률주의'의 원칙이 확고하게 확립되었다. 권리장전(the Bill of Rights)의 내용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의회는 국왕이 결정하는 모든 지출의 내용에 대해 승인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하원(House of Commons)은 지출승인 법률의 발의에서 상원보다 우위에 있음을 확정하였다.

영국에서 ‘통합예산’의 원칙은 1787년 통합펀드법(Consolidated Fund Act)이 통과되면서 확정되었는데, 이는 국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단일의 자금에서 처리하도록 요구하였다. 만약 특정 목적에 특정 수입을 할당하는 소위 칸막이식 펀드들이 다수 존재한다면, 의회의 재정운용에 대한 통제는 실효성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통합펀드 제도를 통해 정부활동을 망라하는 범정부적 재정보고서가 출범할 수 있었다. 영국에서 완벽한 형태의 예산(Budget)이 출범한 것은 바로 이 시기로서 기록될 수 있다.

1856년 하원 내에 정부회계위원회(Committee on Public Accounts)를 설치하는 지속명령(Standing Order)이 채택되고, 1866년에 ‘국고와 감사부처법(Exchequer and Audit Department Act)’이 통과되면서 ‘독립감사의 의회보고’가 채택되었다. 정부회계위원회는 재정운용과 관련되는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보고받는 권한을 가진 상임위원회이다. ‘국고와 감사부처’는 국왕으로부터 독립되고 의회에 직접 책임을 지는 공무원들로 구성된다. 이들 제도는 영국에 근대적 재정제도를 확립하는 거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다.

미국은 독립선언을 한 1776년에 당시의 영국 재정제도를 본받아 ‘조세법률주의’와 ‘지출법률주의’를 확립하였다. 특히 헌법에서 ‘법률로 규정된 지출승인에 의하지 않고는 재정부로부터 어떠한 금전도 인출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지출법률주의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근대적 재정제도의 나머지 두 요소, 즉 ‘통합예산’과 ‘독립감사의 의회보고’는 1921년에 도입되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추가로 도입하기 이전인 1776년~1921년 기간중 미국은 전 세계에서 중앙정부의 체계적 예산제도가 없는 유일한 강대국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의회는 연방정부의 지출과 수입



B5변형/230면/2004. 12/
값 9,000원

을 모두 망라하는 재정계획, 즉 지출과 수입의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다.

1900년대 초기에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정부들의 무질서한 예산현장을 지켜보면서 영국식 예산제도를 분석하여 이를 미국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당시 영국식 예산제도의 세 가지 특징에 주목하였다. 첫째, 행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중요한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함께 의회에 제출한다. 둘째, 입법부는 예산을 비판적으로 조사하고 그 제안을 승인하는데 ‘증액 및 신비목설치 금지’와 같은 일정한 제한 내에서만 이들을 수정할 수 있을 뿐이다. 셋째, 수상과 내각은 예산의 적정한 집행에 대해 국민들에게 전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기구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영국 재정제도로부터 도출된 이 세 가지 특징을 검토하여 1921년 예산회계법(Budget and Accounting Act)을 제정하였는데, 이로써 미국은 근대적 재정제도의 기본 틀을 완성시킬 수 있었다. 우선 재정부(Treasury) 내에 예산실(Bureau of

우리나라가 재정민주주의와 재정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지출법률주의를 도입하는 것이다. 지출법률주의가 도입되면 지출각항에 대하여 입법부가 요구하는 제반 정책적 사항들이 법률의 형태로서 규정된다. 이 법률내용에 대한 준수 여부는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에서 가장 핵심적 사항이 될 것이다.

Budget)을 설치하여 행정부 주도의 예산편성 제도를 용인하여 '통합예산' 제도를 확고하게 확립하였다. 그리고 '독립감사의 의회보고'를 위하여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회계감사원(General Accounting Office)을 설치하였다. 회계감사원장은 통제총괄관(the Comptroller General)이라 불리었는데, 상원의 동의 하에 대통령이 임명하였으며 그 임기는 15년으로서 탄핵 또는 상하 양원의 합동결의(joint resolution)로만 해임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합동결의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니기에 대통령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미국의 예산전문가들은 영국 의회의 '증액 및 신비목설치 금지'가 미국과 같은 권력분립(separation of power)하에서는 사실상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영국에서는 입법부와 융합되어 있는 행정부가 예산의 편성과 결정 모두를 사실상 주도하는데, 권력분립에 기초하여 행정부와 입법부가 분리되어 있는 미국의 정치체제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통령제하에서도 예산편성은 기본적으로 행정부 기능이 될 수 있지만, 그 승인과 결정은 본질적으로 입법부의 기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연방의회는 단일의 상임위원회가 재정의 총량규모를 판단 조정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의원들의 무분별한 신비목 설치를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국, 미국 등의 선진국들이 근대적 재정제도의 네 가지 요소를 구비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조

세법률주의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을 거의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지출법률주의는 지출예산 각항에 대하여 그 용도와 목적, 내용, 제약, 권한과 책임 등을 법률용어로서 기술하여 법률로 확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행 예산은 관행적으로 예산과목명과 그 금액만을 열거하고 있는바, 지출방법과 목적 등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부에 전권을 주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 국회는 지출에 대한 행정부의 책임성을 추궁할 수 있는 수단을 전혀 구비하지 않았다고 평가된다.

근대적 재정제도의 또 다른 요소인 '통합예산'은 우리나라에서 그런대로 구비되어 있다. 국가의 모든 지출과 수입에 대한 계획을 행정부 주도로 편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합예산이 완벽하게 구비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전체, 또는 공기업을 제외한 일반 정부 전체에 대한 재정활동이 망라되어야 할 것이다. 2004년에 들어 정부는 통합재정의 범위에 대해 정부 산하기관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제적 기준에 부응하여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예산'은 점진적으로 구비될 것으로 보인다.

'독립감사의 의회보고'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혀 구비되지 않고 있다. 우선 헌법에서 감사원은 행정부 내부의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된 감사가 보장되지 않는다. 더구나 감사결과의 국회보고는 예산회계법, 국회법 그리고 실제 관행을 참조할 때 지극히 형식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감사결과가 국회에 보

고되어 그 책임성이 추궁되는 체제가 실질적으로 구비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근대적 재정제도의 중요한 요소들이 충분히 구비되지 않아 재정민주주의와 재정책임성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법부의 재정권한도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최악의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영국, 독일 등의 내각책임제 국가에서 의회의 재정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예산증액 및 신비목설치 금지’ 조항까지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되어 입법부의 재정권한을 과도하게 약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가 재정민주주의와 재정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지출법률주의를 도입하는 것이다. 지출법률주의가 도입되면 지출각항에 대하여 입법부가 요구하는 제반 정책적 사항들이 법률의 형태로서 규정된다. 이 법률내용에 대한 준수 여부는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에서 가장 핵심적 사항이 될 것이다. 더구나 감사결과는 예산편성에서 법률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감사결과가 환류되는 실질적 수단이 확보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헌법의 규정 형식을 이유로 예산이 법률이 아니라는 예산비법률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구미 선진국에서 ‘Budget’이 실질적으로 법률이 아니면서 형식적으로만 ‘Budget Law’로 불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물론 영국, 미국 등에서도 ‘Budget’이라는 예산은 지출계획의 일람표로서 그 자체가 법률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Budget’에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지출각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지출승인법(Appropriation Acts)’을 예산서류와 별도로 제정하고 있는 것이다. 지출승인법이 수반되는 지출계획 일람표를 ‘Budget Law’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

도 예산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지출승인법을 따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제헌헌법 이래로 예산비법률주의를 채택하였던 이유는 헌법 제정과과정에서 선진국의 예산제도를 심층적으로 검토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헌법의 제정관련 조항들은 대부분 일본국 헌법과 일본제국 헌법의 제정권 조항을 모방 혼합하여 규정되었던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한 후에도 일제시대를 통해 우리나라에 고착화된 일본식 예산론과 예산회계 운용관행을 아무런 비판 없이 그대로 수용하였다. 물론 일본도 1889년 이래로 예산비법률주의를 변함없이 채택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각책임제 국가이며 또 ‘증액 및 신비목설치 금지’ 조항을 두지 않기 때문에 재정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KIP**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기타보고서 『재정민주주의와 지출승인법』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자료입니다.
원문은 한국조세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편집자 주>

조세 정책

영국, 어린이·노인에 세제혜택

- 영국 정부는 다음 주중 세법개정을 골자로 한 '2005예산(Budget)' 과 부처별 예산안에 대한 의회승인 절차를 마칠 계획이라고 하원 관계자가 30일 밝힘
- 이번 '2005예산'은 일반 가정과 노년층에 대한 세제혜택을 크게 확대하는 한편 필요한 세원 확보를 위해 기업 세제 관리를 더욱 강화했다는 데 특징이 있음
- 우선 개인이 생애 처음 집을 살 때 집값의 1~4%를 부과하던 취득·등록세 성격의 인지세 부과기준을 현행 6만파운드(약 1억 2천만원) 이상 주택에서 12만파운드(약 2억 4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 또 65세 이상 노령자에 대해서는 주민세 중 200파운드(약 40만원)를 환급해 주고, 내년부터는 60세 이상 노령자와 장애인들에게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정
- 현행 26만 3천파운드(약 5억 2,600만원)인 상속세의 부과기준도 이달부터는 27만 5천파운드, 내년에는 28만 5천파운드, 2007년에는 30만파운드 등 단계적으로 올려나가기로 함

- 주류와 담배에 대한 세금은 인상하지만 연료세는 오는 9월 1일까지 동결키로 결정
- 그러나 기업들의 법인세 19~30%와 자본이득세는 그대로 동결했으며, 오히려 복혜유전 정유회사들에게 이번 회계연도내 법인세 추정액 11억파운드(약 2조 2천 억원)를 선납하도록 함
- 이는 손실되는 세원을 보충하기 위해 기업들이 새 회계연도 수입을 미리 예상해서 세금부터 먼저 내달라는 주문임

<매일경제신문 3/31>

독일, 법인세율 인하 등 경제활성화 대책 추진

- 독일 Schröder 총리는 3월 25일 법인세율의 큰 폭 인하 및 대규모 재정투자 실시, 각종 규제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활성화 대책을 발표
- 우선 법인세율을 종전의 25%(2000년 40%→2004년 25%)에서 19%로 대폭 인하*하고 운수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재정에서 향후 4년간 20억유로를 투자하는 한편 주택재개발 및 고령층의 직업 알선을 위해 재정에서 각각 50억유로, 2억 5천만유로를 지원할 계획
- * 이에 따라 지방세 및 통일세(solidarity surcharge) 등을 포함

한 독일 대기업들의 실질적인 법인세율 부담수준이 종전의 38%에서 32%로 낮아져, 경쟁국 수준(프랑스 34%, 영국 30%)에 근접

-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국영개발은행(KfW)의 저금리(2%) 자금지원 등 대규모 금융지원과 창업 및 주택투자자에 대한 세액공제, 창업업체의 최저자본금 요건 축소, 등록 소요시간 단축을 위한 기업의 전자등록제 실시, 연방 및 주정부간의 행정처리 간소화 등 각종 규제 완화도 추진

□ 한편 Schröder 총리는 독일 기업들도 정부의 노력에 호응하여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을 중단하고 국내투자를 확대할 것을 촉구

- 최근 다수의 독일 기업들이 독일 노동시장의 경직성 및 높은 세금부담 등을 이유로 중·동부 유럽국가로의 생산기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독일 정부는 이번 법인세율 인하 및 규제완화 조치가 국내기업의 해외이전을 억제하여 국내투자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실업 해소 및 국가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중·동부 유럽국가의 최근 법인세율 수준: 루마니아 16%, 폴란드·슬로바키아 19%, 오스트리아 25%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제2005-13호, 3/20~26〉

중국, 외국기업 소득세 혜택 폐지

□ 중국이 그동안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법인세) 특혜를 없애고 2007년부터 중국 기업과 외국 투자기업의 기업소득세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중국 투자에 나선 한국 기업도 '세금 충격'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

□ 28일 상하이증권보를 비롯한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은 내년 초에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세법을 고쳐 2007년부터 중국 기업과 외국 투자기업의 기업소득세 차별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중국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의 자강(賈康) 소장은 지난 27일 '중국 재정정책 형세와 동향' 보고서를 통해 "외국 투자기업에 대해 세계상의 초국민 대우를 계속 해 줄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히고 "내외 기업의 세금제도가 같지 않아 기업이 공정경쟁을 할 수 없다"며 "기업소득세를 통합하는 것이 큰 흐름"이라고 주장
- 자강 소장은 "외국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의 과도기간을 두되 전인대 세법개정을 거쳐 이르면 2007년부터 기업소득세를 통합하는 방안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

□ 중국 내 50여 군데의 대규모 외국 투자기업은 최근 외국기업들에 대한 기업소득세 우대 폐지 움직임과 관련, 이 제도를 유지해 줄 것을 중국 정부에 건의

□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중국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외국자본이 충분히 유입되었다는 판단 아래 중국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려는 전략인 것으로 풀이됨

〈세계일보 3/28〉

러시아, 조세법 개정안 설왕설래

□ 러시아 유명 일간지 베도모스찌에 따르면, 러시아 재무부가 기업 활성화 추진 정책의 일환으로 부가세 납입절차 등 조세법 개정안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짐

- 2004년말 유코스 등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로 사업가들의 침체된 분위기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기업가들과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만난 자리에서 통합전력시스템(UES)의 아나톨리 추바이스 회장은 미하일 프라드코프 총리에게 지난 1월 현재 사업가들 분위기가 너무

경직되어 있다고 호소

○ 이에 기업들은 공직자들에게 세금을 낮추기 위한 로비 활동을 하지 않고, 공직자들은 부가세의 납부절차를 간소화하며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겠다고 의견을 모으고, 푸틴 역시 주요 기업 인사들과의 토론장에서 기업을 행정적 압박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약속

□ 한편 러시아 기업가들은 세액을 낮추는 것보다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더욱 기업인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음

○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세법개정안 초안은, 예를 들어 수출업자들의 부가세 반환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사전협의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이에 대해 기업가들은 어차피 성사되지 않을 것을 차라리 로비활동으로 세액이라도 낮추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을 것이라 푸념

○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 지금까지 나온 것은 정부에도 상정되지 않은 초안이고, 계속 수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세금문제를 들먹이며 시작되는 정부의 간섭이 한순간에 일소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

〈KOTRA, 경제무역정보 4/4〉

미국은 상속세 논쟁중

- “가족의 죽음과 장례식이 세금을 징수하는 이벤트나 기간이 될 수는 없다.”(공화당 케니 헐쇼프 하원의원)
- “중산층에서 세금을 거둬 최고 부자들에게 혜택을 나눠주는 꼴이니 거꾸로 된 로빈훗이 등장한 셈이다.”(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총무)

□ 이는 지난주 하원을 통과한 상속세 영구 폐지법안을 두고 미국의 공화-민주 양당이 주고받은 공방으로, 미국

의 상속세는 2001년 종합감세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뒤 2002년부터 세율이 꾸준히 인하되고 있으며 2009년까지 세율을 계속 내린 뒤 2010년 한 해 동안 상속세를 완전 폐지하고 2011년에 가서 2003년 수준으로 상속세를 부활한다는 게 당초 법안의 골자

□ 상속세 공방이 올 들어 확산되고 있는 배경은 ‘불확실성’ 문제 때문임

○ “상속세를 완전 면제받지 않아도 좋으니 상속세의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는 확실한 세무계획을 세워 달라”는 의뢰가 세무변호사들에게 쇄도하고 있다는 게 이곳 언론의 보도

○ 따라서 상원에서의 법안 처리도 올해를 넘기지 않으리란 관측

□ 상·하 양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영구폐지가 아니면 과세대상 1,000만달러 이상, 세율 15%, 상속가액 산정시점 변경 등을 전제로 절충할 수 있다는 의견임

○ 보수주의 싱크탱크를 포함한 상속세 폐지론자들은 상속세는 재산의 대물림을 차단함으로써 저축과 투자의 욕을 위축시킬 뿐이므로 차제에 아예 폐지하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 사상 최대 재정적자를 기록중인 미국에서 여전히 상속세 폐지론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모습은 한국과 사뭇 다른 풍경

□ 최근 홍석현 주미대사를 포함해 공직자 재산공개와 인사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보면 상속세 탈루 혐의가 부동산 투기 의혹과 함께 항상 등장하고 있는데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어느 정도 사라지면 한국에서도 상속세 논쟁이 가능할지 궁금

〈매일경제신문 4/19〉

재정 정책

유럽 각국의 사례, '출산장려정책' 인식 전환이 필요

- 英 "아이들은 사회적 공동자산"

- 한국과 다른 선진국의 출산장려정책에 있어서의 차이 점은 한국은 미래의 국가경쟁력이 인구수에서 나온다는 인식하에 출산율을 높이려 하지만, 선진국은 단순한 숫자상의 출산율을 높이기보다는 아동을 사회적 공동자산으로 인식한다는 점에 있음
 - 선진국들이 이렇게 생각을 바꾼 것은 무조건 인구수를 늘리려는 그동안의 출산장려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임
- 영국은 1997년부터 '빈곤아동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취지하에 'sure start' 캠페인을 벌이고 있음
 - 이 캠페인은 아동에 대해서는 부모와 관계없이 정부가 동일조건으로 복지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며,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고 있는 부부의 자녀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원기준을 적용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
 - 근로자가 입양을 할 경우에도 출산 때와 동일하게 출산휴가를 주고, 가정의 경제수준과 상관없이 16세 이하 모든 자녀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편부모 가정은 추가수당이 지급
- 프랑스는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저출산 대책을 수립
 -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가족수당'이 지급되며, 두 자녀 가정은 매달 108유로, 세 자녀 가정은 매달 248유로, 세 자녀 이상은 추가로 140유로가 지급됨
 - 또 출산보너스 800유로와 '신생아 환영수당'으로 3살까지 매달 160유로를 지원

- 1990년 '아동·청소년 보호법'을 공포한 독일은 보육 재정을 공·사립 모두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 일본도 출산장려 정책에 적극적
 - 일본은 출산율이 1989년에 1.57명까지 떨어져 '1·57 쇼크'의 악몽을 겪은 바 있어 임신중인 예비엄마에게까지 별도의 출산보조금을 지원
 - 특히 같은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이라도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보육료를 달리함
- 이태수 교수(현도사회복지대)는 "일부 유럽 국가의 경우 마을 전체가 어린이를 돌보는 제도를 도입하자 이혼율이 크게 떨어졌다"며 "출산장려정책을 인구수를 늘리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아동을 사회공동의 자산으로 생각하는 공감대에서 출발해야 유럽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

〈경향신문 3/28〉

미국, 금리 올라도 달러강세 반전 가능성 적어

- 삼성경제연구소는 미국의 정책금리가 상승해도 달러화의 구조적인 강세 반전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
- 5일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원화환율의 불안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향후 글로벌 달러강세가 중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운 것은 미국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더라도 미국의 쌍둥이적자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
- 보고서는 실제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더라도 쌍둥이적자 개선, 실질적인 '강한 달러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달러강세가 지속할 수 없다며 지난 75년 이후 미국의 네 차례 정책금리 인상기중에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시기는 지난 95년 단 한차례뿐이었다고 지적

○ 미국의 정책금리와 글로벌 달러화 지수 추이를 보면 달러화 가치는 미국의 금리인상보다는 미 달러화 정책, 미 경상 및 재정수지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덧붙임

□ 보고서는 또 국내적으로도 원화의 강세 반전이 다소 우려한 상황이라며 이는 유럽,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환율 조정 요구와 외국환평형기금의 손실 증대로 국내 외환시장 개입 환경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강조

□ 지난 2월 24일 미국의 리버먼 상원의원(민주당) 등은 한, 중, 일, 대만 등의 외환시장 개입 등이 미국 제조업에 피해를 주면 경제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공정환율 법안 2005’(Fair Currency Enforcement Act of 2005)를 상원 재정위원회에 제출

□ 수급구조상으로 경상흑자 폭은 둔화할 것으로 보이나 흑자추세는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임

□ 보고서는 시사점으로 단기적으로 환율의 향방을 예측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기업들은 당분간 한 방향을 전제로 위험관리를 하기보다는 양방향을 모두 고려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

〈연합인포맥스 4/5〉

일본 국민, 연금제도 불안으로 지출 더 줄어

□ 일본은행이 13일 발표한 2005년 3월의 ‘생활의식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현재의 지출을 1년 전보다 줄이고 있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의 43.2%를 차지

□ 지출을 줄인 이유(복수 회답)로는 “연금이나 사회보험의 급부가 줄어드는 불안”을 꼽은 사람이 65.3%에 달하여 1998년 3월에 이 질문을 시작한 이후 가장 많았음

○ 연금제도 개혁후 노후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불안이 오히려 높아지고 소비를 기피하는 경향이 계속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음

○ 조사는 3월 4~14일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질문하여 2,905명의 회답을 얻었음

□ 지출감소의 두 번째 이유는 “장래의 일과 수입에 대한 불안”(56.2%), 세 번째 이유는 “증세나 사회보장부담의 증가에 대한 불안”(50.2%)이었음

〈국회도서관, 일일외국신문정보 4/14〉

미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의 원인과 해결방안

* 이 자료는 W. Ferguson 미 연준 부의장의 연설문 “U.S. Current Account Deficit: Causes and Consequences (4. 20)”을 요약·정리한 것임

□ 최근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커지면서 그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우선 적자 확대 원인으로서는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 민간저축률 하락, 생산성의 빠른 증가, 외국의 국내수요 부진, 세계적 금융중개기능 향상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연준의 거시경제모델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미국 생산성의 빠른 증가와 외국의 국내수요 부진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음

○ 한편 미국의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재정긴축과 같은 정부정책보다는 투자자들의 미 자산 보유축소 등과 같이 민간시장을 통해 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1. 머리말

□ 최근 미국에서 경상수지 적자에 대한 논의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아래 이유에 기인함

○ 최근 미국의 적자가 GDP 대비 6% 수준으로 사상 최

고치를 기록

- 미국 경제가 경쟁력을 상실하고 미국의 일자리와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
- 적자 과다로 이의 조정이 임박했으며 조정과정에서 미국 경제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예상

□ 현재의 경상수지 적자 추세가 지속불가능하다는 데에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상태임

- 적자 지속시 미국의 부(-)의 순국제투자포지션(현재 GDP의 -1/4)이 커져 원리금 상환비용이 유지 불가능한 수준으로 커질 것임

□ 그러나 적자의 조정 발생시점 및 방법에 관해서는 의견이 상치되고 있는데 이는 적자 발생원인에 대한 의견이 상이한 데 주로 기인함

2. 미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 발생원인

가. 기존 주장 검토

(1) 재정적자의 확대

- 이 견해는 재정적자 확대가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를 유발하였다는 주장

- 1980년대의 쌍둥이적자 발생 당시와 현재의 상황이 유사

- 즉, 경상수지는 국민저축과 투자간 차이이며 재정적자 확대가 정부저축 감소와 경상수지 적자 확대를 유발

□ 그러나 이 견해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근거가 취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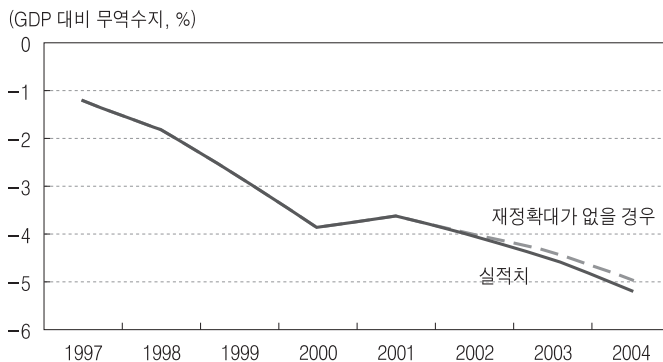
-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1990년대 후반에도 경상수지는 악화

- 최근 일본과 독일은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

- 재정적자가 신용채원 감소를 통해 민간소비와 투자를 억제함으로써 경상수지 적자 확대를 제한할 수도 있음

□ 연준의 거시경제모델로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2001년 이후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민간저축률은 높이고 투자율은 낮춘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따라서 재정적자는 경상수지 적자 확대에 있어 작은 요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재정과 무역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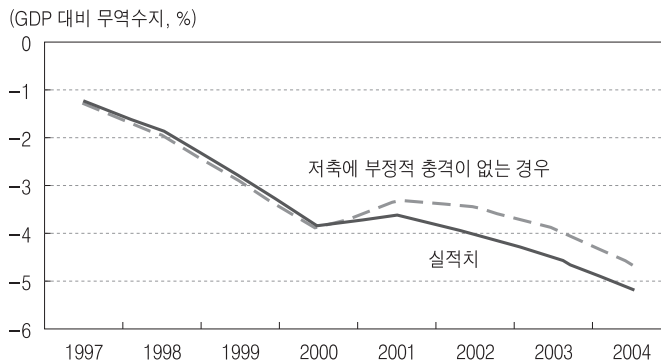
(2) 민간저축률 하락

- 이 견해는 90년대 중반 이후 민간저축이 크게 감소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었다는 주장
- 90년대 중반 이후 개인저축률은 5%에서 2% 이하로, 민간저축률은 16%에서 15%로 하락*
- * 저축감소는 주식 및 주택가격 상승, 미래의 기대소득 증가, 이자율 하락 등에 기인했을 수 있으며 또한 금융자유화 및 혁신으로 차입이 용이해진 데 따른 가계저축 및 소비행태의

변모에 기인했을 수도 있음

- 이론적으로 저축증대는 투자 및 성장재원을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경상수지 적자 축소에 기여 가능함
- 시뮬레이션 결과 저축감소가 이자율 상승을 유발, 순수출보다는 투자를 구축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따라서 저축감소가 경상수지 악화에 기여한 부분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음

저축과 무역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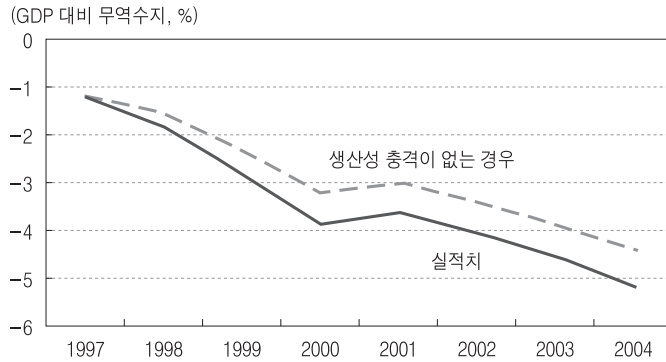


(3) 생산성의 빠른 향상

- 이 견해는 90년대 후반 미국의 노동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한 것이 경상수지 적자 확대의 원인이라는 주장
- 미국의 노동생산성이 95년 이후 3% 정도의 높은 증가세를 보여 투자의 기대수익률을 상승시킴으로써 외국자본 유입 및 달러화 강세, 투자증가, 가계의 부 및 장기소득 상승기대와 소비증가, 저축감소 등을 초래하고 결국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로 귀결되었다는 주장

- 이 견해는 최근 10년간 미 경제의 두 특징, 즉 생산성 증가와 경상수지 적자 확대를 연결한 점에서 설득력이 있음
- 시뮬레이션 결과 생산성 향상이 90년대 중반 이후의 무역수지 악화를 모두 설명하지는 못하나 민간 및 정부저축 감소보다는 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생산성과 무역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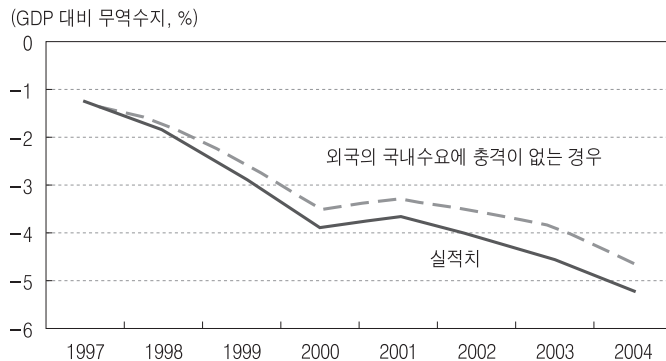
(4) 외국의 국내수요 부진

- 이 견해는 외국의 국내수요 둔화로 대(對)미 자본공급이 확대되고, 이것이 미국의 금리하락 및 달러화 강세를 초래하였다는 주장
- 이 견해는 현재 일본, 독일 등이 성장부진과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중이며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경제도 투

자금감 및 높은 저축률 지속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음

- 시뮬레이션 결과 해외수요 부진은 미국의 수출 부진, 달러의 고평가 및 저금리 등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경상수지 적자 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외국의 국내수요와 무역수지



(5) 세계적 금융중개기능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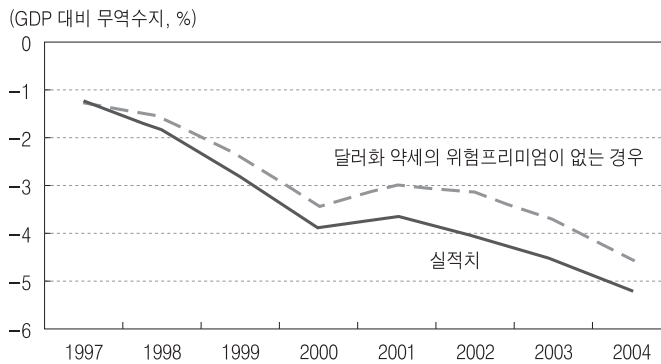
- 이 견해는 세계적 금융중개기능의 향상으로 투자자들의 자국편향(home bias)이 줄어 대규모 적자의 재원조달이 종전보다 쉬워진 것이 미 경상수지 적자 확대의 원인이라는 주장
- 최근 수년간 국민저축·투자간 상관관계가 감소하였다는 점이 그 증거
- 특히 미국의 양호한 투자여건, 투자자 권리보호, 높은

예상수익률 등이 대규모 해외자본 유치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큼

- 분석 결과 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위험프리미엄이 감소*, 달러화 강세 및 경상수지 적자 확대를 초래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나타남

* 금융중개기능 향상 정도의 측정지표로 투자자들의 위험프리미엄을 사용

달러화 약세의 위험프리미엄과 무역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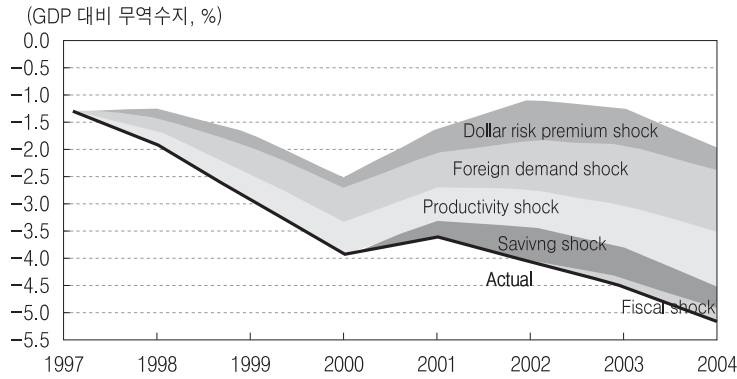
나. 종합평가

- 최근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확대를 설명하는 하나의 지배적 요인은 없으나, 미국의 생산성 증가(미국이 해외저축을 흡수한 요인)와 외국의 국내수요 부진(외국의 저축과잉을 초래한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 위험프리미엄 감소는 이들보다 다소 작은 요인이고 재정적자 확대와 민간저축 감소는 훨씬 작은 요인이었던 것으로 추정

□ 그러나 위의 요인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광범위한 세계경제 변화의 일부일 수도 있음

- 예를 들어 국내외 금융시장 발달은 생산성 향상 및 투자기회 감소 등이 경상수지 악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대시켰을 수 있으며, 특히 세계금융시장의 자금조달 능력이 제한적이었다면 미 정부의 재정적자 팽창이 제한되었을 수도 있음

무역수지 적자의 분해



3. 경상수지 적자해소 방안

- 이상의 경상수지 적자원인 분석은 해결방법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함
- 우선 재정긴축, 민간저축 장려 등과 같은 정부차원의 정책은 그 자체로서는 적자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어서 경상수지 적자 해소에 크게 기여하지 못함
 - 그러나 정부정책이 덜 효과적이라고 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님. 재정적자 감축은 순수출 확대를 위한 자원을 공급하여 경상수지 적자 조절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적절한 거시경제 및 구조조정 정책은 혁신 촉진, 생산성 향상, 내수성장 촉진을 유도하여 민간부문의 경상수지 적자 조절에 기여할 수 있음
- 미 경상수지 적자 조절의 주된 동력은 민간시장으로부터 발생할 것임. 다만 적자 발생원인이 복합적이어서 조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함
 - 외국의 국내수요 회복 및 미국의 민간저축 증가 등은 시장자율적으로 발생할 전망이다며 노동생산성 증가, 금

융혁신 등이 향후 외국에서 더 빨리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경상수지 적자 축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개별적으로는 그 효과가 작을 수 있음
 - 이 밖에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커지고 대외부채가 누적되면서 투자자들이 보유 미국자산을 조정하고 이에 따라 환율 이자율 및 기타 자산가격이 변동, 경상수지 적자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 경상수지 적자 조절이 세계경제 펀더멘탈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지는 한 혼란스럽거나 무질서할 가능성은 적음
 - 1980년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조절 및 여타 선진국들의 최근 10년간 적자 조절은 비교적 질서 있게 이루어졌음
 - 또한 조정과정에서 경제성장 및 물가안정이 교란될 우려가 있을 경우 연준이 이에 적극 대처할 것임
 - 따라서 경상수지 적자 조절이 미국의 경제성장 및 인플레이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음
- 〈한국은행, 대외경제정보 제2005-39호, 4/22〉

중국 경제가 풀어야 할 5가지 숙제

- 올 1분기 9.5%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록한 중국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촌 가뭄과 부동산투기 열풍, 자원부족, 물가상승, 산업구조 고도화 등의 5가지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인민일보가 21일 보도
- 신문은 먼저 올 봄 남부와 남서부 지역에서 발생한 심각한 가뭄과 물가상승으로 인해 농촌 지역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
 - 정징핑(鄭京平)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물가양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상쇄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고 농촌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
- 두 번째로는 지난해 43% 늘어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고정자산 투자 급증을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
 - 전문가들은 부동산투기와 함께 무분별한 건축 프로젝트 등을 경고
 - 정징핑 대변인은 토지 등 부동산투기 감시대책을 강화하고, 재정정책 면에서도 과열 억제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
- 1분기 2.8% 상승한 소비자물가도 안심하기에는 이른 단계임을 지적
 - 중간재 물가가 10% 이상 급등했고 이는 최종재 가격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임. 특히 50달러 중반대에 머물러 있는 국제유가도 위협적인 존재
 - 국가통계국 측은 이에 대해 원자재 공급이 증가해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고 올해는 곡물가격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

- 네 번째로는 석탄공급 부족 등 에너지 자원 공급과 운송수단의 미발달이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도
 -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자원공급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며,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경제인프라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
-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에너지와 자원효율화를 높일 수 있는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

〈edaily 4/22〉



정책흐름

1. 2004회계연도 정부결산
2. '04년말 국가채무 203.1조원-GDP 대비 26.1%
3. 부동산세제 향후 정책방향
4. 원유 등 석유류에 대한 관세율 인하 적용시한 재연장
5. Ten-Ten 전략을 통해 국가전략기획본부 역할 수행
6. 2005년 공동주택 기준시가 정기고시



2004회계연도 정부결산

※ 이 자료는 2005년 5월 10일 재정경제부 국고국에서 발표한 「2004회계연도 정부결산」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정부는 2004회계연도 정부결산을 5. 10(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음

- 동 결산은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받은 후 6월말까지 국회 제출 예정임

□ 2004회계연도 정부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결산은 총세입 188조 1,463억원, 총세출 183조 1,944억원으로 4조 9,519억원의 총잉여금이 발생하였음

– 이 중 차기이월액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8,495억원임

※ 일반회계 순잉여금은 1,726억원

- 57개 결산대상 기금 중 공적자금상환기금과 외국환평형기금 등 18개 기금에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2003년 보다 15조 8,041억원이 증가한 21조 7,578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

- 국가채권*(중앙정부)은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금과 전대차관 규모 감소, 국민주택기금 등 일부 기금의 예금 감소 등으로 2003년보다 3조 365억원(2.3%) 감소한 127조 6,380억원이며,

* 금전채권만을 말하며, 외화자산, 국고금, 물품과 국유재

산을 포함하는 국가자산은 395.6조원임

- 국가채무(중앙정부)는 공적자금의 국제전환 및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한 국제발행 등으로 2003년보다 37조 2,618억원(23.5%) 증가한 196조 865억원(GDP 대비 25.2%)임(지방채무 포함시 203.1조원, GDP 대비 26.1%)

- 국유재산현재액은 전년말보다 15조 483억원(7.4%) 증가한 217조 4,253억원이며, 물품현재액은 전년말보다 1조 1,485억원(16.5%) 늘어난 8조 1,205억원임

- 통합재정수지는 5.6조원의 흑자(GDP 대비 0.7%)를 시현

* 사회보장성기금 및 공적자금상환 원금을 감안한 관리대상수지는 3.6조원 적자

□ 정부는 2004회계연도중 경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경제전반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성장잠재력을 배양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재정을 운용하였음

- 이를 위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 참여복지의 구현과 삶의 질 향상, 산업경쟁력 강화 등에 주력하였음

- 정부의 경기진작 노력 등을 바탕으로, 2004년도중 경제성장률은 4.6%를 기록하였고, 수출도 2,538억달러로 31.0%의 높은 신장세를 시현했을 뿐만 아니라, 경상수지는 276억달러 흑자를 달성하였으며,
 - 실업률은 3.5%,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대 중반에서 안정됨
- 통합재정수지는 5.6조원 흑자로 전년도(7.6조원)에 비하여 2조원 감소하였으나, 이는 경기회복과 서민·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재정사업을 조기집행하고 추경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등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한 데 기인함

1. 세입세출결산

□ 세입·세출실적

- 2004회계연도 총세입결산액은 188조 1,463억원으로 예산(187조 8,988억원) 대비 0.1% 증수되었고,
- 총세출결산액은 183조 1,944억원으로 예산현액(194조 3,555억원) 대비 94.3% 집행

□ 잉여금 내역

- 일반회계에서 세입이 119조 6,460억원, 세출이 118조 2,362억원으로 1조 4,098억원의 총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3조 5,421억원의 총잉여금 발생
- 이 중 차기이월액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일반회계 1,726

억원('03년 1조 1,262억원), 특별회계 6,769억원('03년 2,063억원)임

○ 일반회계 순잉여금 발생 원인은

- 세입부문에서 유가증권, 출자수입 등 세외수입이 예산보다 증가하였으나 일부 세목의 수입이 예산보다 적어, 일반회계 순세입금('03년도 이월금 1.3조원 제외)은 예산 대비 1조 8,388억원 미달
- 세출부문에서 예산현액 121조 4,848억원 중 118조 2,362억원(97.3%)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로 1조 2,372억원이 이월되고 나머지 2조 114억원은 불용됨
- 이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순잉여금 1,726억원 발생

* 순잉여금 = 순세입부족(초과)액+세출불용액(=△18,388억원+20,114억원)

〈세입세출결산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세입결산 (A)	세출결산 (B)	세계잉여금 (C=A-B)	이월액 (D)	순잉여금 (C-D)	'03년 순잉여금
총 계	1,881,463	1,831,944	49,519	41,024	8,495	13,325
일반회계	1,196,460	1,182,362	14,098	12,372	1,726	11,262
특별회계	685,003	649,582	35,421	28,652	6,769	2,063

2. 기금결산

□ 2004회계연도말 현재 57개 결산대상 기금의 재산상태는 자산 480조 3,636억원, 부채 383조 9,945억원으로 순자산은 96조 3,691억원

* '04년중 2개 기금 신설(복권·자유무역협정이행기금), 3개 기금 폐지(국민투자·중소기업공제사업·편의시설축진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9개 금융성기금 결산 보고대상에 추가

□ 기금운용결과 '04년도중 총 21조 7,578억원의 당기순손실 발생(2003년 당기순손실 5조 9,537억원 대비 15조 8,041억원 증가)

○ 국민연금 6조 6,417억원 등 38개 기금에서 9조 7,840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되었으나,

○ 공적자금상환기금에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원리금상환비용 발생으로 14조 7,603억원의 당기순손실 발생,

- '03년부터 시행중인 공적자금상환대책*에 따라, '04년도 만기도래하는 공적자금원리금 등을 국채발행으로 조달

* '02년말 공적자금부채 69조원에 대해 재정에서 49조원, 금융권에서 20조원 부담('02년말 국회보고를 거쳐 확정)

○ 외환평형기금에서 환율하락에 따른 미실현 외환평가손실 등으로 10조 2,205억원의 당기 순손실 발생

(단위: 억원)

재 무 상 태		손 익 상 황	
• 자 산	4,803,636	• 총 수 익	724,030
• 부 채	3,839,945	• 총 비 용	941,608
• 자 본	963,691	• 당기순손실	217,578

3. 국가채권결산

□ 2004년도말 현재 국가(중앙정부)채권총액은 127조 6,380억원으로 2003년도말에 비하여 2.3%(3조 365억원) 감소

○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금(△2조 2,461억원)과 전대차관(△3조 4,836억원)규모 감소,

○ 국민주택기금(△2조 3,032억원) 등 일부 기금의 예금 감소 등에 기인

<국가채권현재액>

(단위: 억원, %)

구 분	2003년도말 (A)	2004년도말 (B)	전년 대비 증감	
			금액(B-A)	비율
일반회계	77,921	91,093	13,172 ¹⁾	16.9
특별회계	468,659	405,109	△63,550 ²⁾	△13.6
기 금	760,165	780,178	20,013 ³⁾	2.6
합 계	1,306,745	1,276,380	△30,365	△2.3

주: 1) 내국세 1조 2,379억원, 관세 424억원 등

2) 융자금 △6조 5,132억원, 경상이전수입 940억원 등

3) 융자금 2조 4,734억원, 재산수입 1조 1,652억원, 경상이전수입 3,227억원, 예금 △2조 1,381억원 등

4. 국가채무결산

□ 2004년도말 현재 국가(중앙정부)채무액은 196조 865억원(GDP 대비 25.2%)으로 공적자금의 국채전환,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한 국채발행으로 전년도말에 비하여 23.5%(37조 2,618억원) 증가

•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발행 +17.8조원(33.4조원→51.2조원)

• 공적자금 국채전환·이자 +15조원(14.4조원→29.4조원)

• 일반회계 적자보전 +2.5조원 등

〈국가(중앙정부)채무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03년(A)	'04년(B)	증감(B-A)
□ 중앙정부채무 (대GDP 비율)	1,588,247 (22.0%)	1,960,865 (25.2%)	372,618 (3.2%p)
○ 국채	1,406,332	1,829,315	422,983
○ 차입금	157,501	106,550	△50,951
○ 국고채무부담행위	24,414	25,000	586

※ 적용환율: '03. 12. 31(1,209.5원/\$), '04. 12. 31(1,054.0원/\$)

5. 예비비 결산

- 2004회계연도 예산액 3조 3,269억원 중 2조 6,963억원 지출되고, 차년도로 392억원이 이월되었으며, 5,914억원은 불용됨

〈예비비 집행실적〉

(단위: 억원)

구 분	예산액(A)	지출액(B)	이월액(C)	불용액(A-B-C)
일반회계	32,822	26,922 ¹⁾	392	5,508
특별회계	447	41	-	406
합 계	33,269	26,963	392	5,914

주: 1) 재해대책비 8,269억원, 일반경비 7,513억원, 인건비 등 11,140억원

6. 국유재산

- 2004년말 국유재산현재액은 217조 4,253억원으로 전년말(202조 3,770억원)에 비하여 15조 483억원(7.4%) 증가
- 주요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 출자에 따른 증권·주식취득과 기금 등의 수익증권·채권매입 등에 따라 유가증권 7조 9,107억원 증가
 - 부산항만공사 3조 1,233억원, 도로공사 1조 3,320억원, 산업은행 1조원 출자

- 국민주택기금의 수익증권 매입 1조 138억원
-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채권 매입 등 9,748억원
- 고속철도차량 취득 등에 따라 기계기구 3조 5,826억원 증가
- 철도역사, 군부대시설, 학교시설 신·증축 등으로 건물 1조 9,733억원 증가

〈재산종류별 증감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03년도말(구성비)	'04년도말(구성비)	증감액(증감률)
토 지 (면 적)	808,191 (39.9) (15,711km ²)	810,387 (37.3) (15,842km ²)	2,196 (0.3) (131km ²)
건 물	222,021 (11.0)	241,754 (11.1)	19,733 (8.9)
공 작 물	129,527 (6.4)	139,035 (6.4)	9,508 (7.3)
입 목 축	39,495 (2.0)	41,601 (1.9)	2,106 (5.3)
선박·항공기	9,240 (0.5)	10,760 (0.5)	1,520 (16.5)
기계기구	26,811 (1.3)	62,637 (2.9)	35,826(133.6)
유가증권	783,784 (38.7)	862,891 (39.7)	79,107 (10.1)
무체재산	4,701 (0.2)	5,188 (0.2)	487 (10.4)
계	2,023,770(100.0)	2,174,253(100.0)	150,483 (7.4)

7. 물 품

- 2004회계연도 물품현재액은 8조 1,205억원으로 전년말(6조 9,720억원)에 비하여 1조 1,485억원(16.5%) 증가
- 산업기계 2,051억원, 전기·통신기기 2,023억원, 운반·건설기계·차량 1,399억원, 사무용기기 1,233억원, 의료·화학분석기기 948억원 등 증가

〈품종별 증감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03년도말(구성비)		2004년도말(구성비)		증감액(증감률)	
	액	비율	액	비율	액	비율
전기·통신기기	11,315	(16.2%)	13,338	(16.4%)	2,023	(17.6%)
사무용 기기	14,613	(21.0%)	15,846	(19.5%)	1,233	(10.7%)
사무용 집기	1,280	(1.8%)	1,404	(1.7%)	124	(1.1%)
운반·건설기계·차량	10,695	(15.3%)	12,094	(14.9%)	1,399	(12.2%)
기계요소·공작기계	2,074	(3.0%)	2,103	(2.6%)	29	(0.3%)
산업기계	5,081	(7.3%)	7,132	(8.8%)	2,051	(17.9%)
의료·화학분석기기	6,797	(9.7%)	7,745	(9.5%)	948	(8.2%)
물리시험·측정기기	4,186	(6.0%)	4,925	(6.1%)	739	(6.4%)
기타 실험장비	9,236	(13.2%)	10,001	(12.3%)	765	(6.7%)
기타 잡기기	4,443	(6.4%)	6,617	(8.2%)	2,174	(18.9%)
계	69,720	(100%)	81,205	(100%)	11,485	(16.5%)

8. 통합재정수지

◇ 2004년 결산상 통합재정수지는 5.6조원(GDP 대비 0.7%) 흑자
 ○ 재정 조기집행과 추경편성·집행 등 재정을 다소 확장적으로 운용한 결과 전년도(7.6조원 흑자)보다 감소
 ○ 사회보장성기금 흑자(21.2조원)와 공적자금상환 원금(12조원)을 제외한 수치(관리대상수지)는 전년(+1.0조원)보다 4.6조원 감소한 3.6조원(GDP 대비 0.5%) 적자 시현

□ 수입 : 178.8조원(전년 대비 6.8조원 증가)

○ 조세수입 : 3.1조원 증가

(법인세△0.9조원, 소득세+2.6조원, VAT+1.1조원 등)

○ 세외수입 : 1.7조원 증가

□ 지출과 순융자 : 173.2조원(전년 대비 8.9조원 증가)

○ 지출 : 추경예산 편성 등에 따라 5.0조원 증가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3.9조원 증가

〈2004 통합재정수지〉

(단위 : 조원)

구 분	전체 통합재정수지			사회보장성기금과 공적자금상환(원금) 제외시		
	2003년	2004년	증 감	2003년	2004년	증 감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7.6 (1.1)	5.6 (0.7)	-2.0 -	1.0 (0.1)	△3.6* (△0.5)	-4.6 -
■ 정부예산	15.3	10.1	-4.2	15.3	10.1	-5.2
■ 기 금	△2.8	△1.9	+0.9	△9.3	△11.1	-1.8
■ 비금융공기업	△5.0	△2.6	+2.4	△5.0	△2.6	+2.4

* 전체통합재정수지(5.6)+공적자금상환기금출연원금(12.0)-사회보장성기금수지(21.2)=△3.6

-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은 공적자금 투입시 자금을 지출한 것으로 당년도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려는 것

'04년말 국가채무 203.1조원-GDP 대비 26.1%

※ 이 자료는 2005년 5월 10일 재정경제부 국고국에서 발표한 「'04년말 국가채무 203.1조원-GDP 대비 26.1%」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2004년말 현재 국가채무는 전년말 대비 37.4조원 증가한 203.1조원임

○ GDP 대비로는 전년말 대비 3.2%p 증가한 26.1%로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국가별 국가채무/GDP 비율 (단위 : %) –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OECD 평균
26.1	63.5	163.5	67.0	74.0	43.4	76.8

⇒ 출처 : OECD Economic Outlook '04. 12

○ 주요 증가요인은 공적자금 국채전환(15.0조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자원조달(17.8조원), 일반회계 적자보전 자원조달(2.5조원), 첨가소화 주택채권 발행증가(2.4조원) 등이었으며,

○ 해외차입금과 국내차입금은 각각 4.0조원, 1.1조원씩 감소함

□ 국가채무 203.1조원 중 국민이 세금 등을 통해 부담해야 할 적자성 채무*는 GDP 대비 10.0%수준인 77.6조원임

* 외환위기 이후 경기진작 등을 위한 적자재정편성 자원조달(31.9조원), 공적자금 국고채 전환분(29.4조원) 등

○ 향후 자산매각 또는 융자금 회수 등으로 상황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는 GDP 대비 16.1% 수준인 125.5조원임

*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화자산 매입(51.3조원), 재정용자 자원(주택자금 지원 36.7조원) 등

□ 향후 정부회계내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과 더불어 국가 전체의 재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국가재무제표가 작성('08년 예정)될 경우,

○ 국가재무제표상 순자산·순부채 규모를 재정건전성 판단 지표로 활용하여, 국가재정 상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예정임

※ '04년말 기준 국가자산 395.6조원

■ 국가채권 127.6조원

■ 외화자산 37.5조원

■ 국고금 5.0조원 / 물품 8.1조원

■ 국유재산 217.4조원(유가증권 86.3조원, 토지 81.0조원, 건물 등 50.1조원)

□ 2004년말 국가보증채무는 GDP 대비 8.5%인 66.0조원으로 전년 대비 14.6조원(2.6%p) 감소하였음

○ 구조조정채권(△12.3조원), 대러 경험차관 보증(△1.1조원) 등

1. 채무형태별 국가채무 추이('00년~'04년)

□ 2004년말 현재 국가채무는 GDP 대비 26.1%인 203.1조 원으로 전년 대비 37.4조원 증가

※ 국가채무 = 중앙정부채무+지방정부채무-지방정부의 대중앙정부채무

□ 전년 대비 주요 증감내역

○ 중앙정부 채무 : 37.3조원 증가

- 공적자금 국제전환 : 15.0조원
- 외환시장 안정용 : 17.8조원
- 일반회계 적자보전 : 2.5조원
- 국민주택채권 등 : 2.0조원
- 지방정부 채무 : 0.2조원 감소
 - 지방채 : 0.4조원 증가
 - 지방교육채 : 0.6조원 감소

〈2004년말 국가채무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D)	'04년(E)	증감(E-D)
□ 국가채무(A+B-C) (대 GDP 비율)	111.9 (19.2%)	122.1 (19.6%)	133.6 (19.5%)	165.7 (22.9%)	203.1 (26.1%)	37.4 (3.2%p)
○ 중앙정부채무(A)	100.9	113.1	126.6	158.8	196.1	37.3
- 국 채	76.5	87.8	103.1	140.6	182.9	42.3
- 차입금	21.9	22.5	20.7	15.8	10.7	△5.1
- 국고채무부담행위	2.7	2.8	2.8	2.4	2.5	0.1
○ 지방정부채무(B)	22.3	21.3	19.5	18.4	18.2	△0.2
※ 지방정부의 대 중앙정부채무(C)	11.9	12.3	12.5	11.6	11.2	△0.4

※ 적용환율 : '04. 12. 31(1,054원/\$), '03. 12. 31(1,209.5원/\$)

2. 채무성질별 국가채무 추이('02년~'04년)

(단위: 조원, %)

구 분	'02년	'03년(C)	'04년(D)	증감(D-C)
□ 국가채무(C=A+B) (GDP 대비, %)	133.6 (19.5)	165.7 (22.9)	203.1 (26.1)	37.4 (△3.2)
○ 금융성 채무(A) (GDP 대비, %)	91.1 (13.3)	106.0 (14.6)	125.5 (16.1)	19.5 (1.5)
- 외환평형기금	20.7	33.5	51.3	17.8
- 주택기금	34.0	36.8	36.7	△0.1
- 재정융자특별회계	27.3	25.2	23.9	△1.3
- 농특회계 등	9.1	10.5	13.6	3.1
○ 적자성 채무(B) (GDP 대비, %)	42.5 (6.2)	59.7 (8.3)	77.6 (10.0)	17.9 (1.7)
- 일반회계 적자보전	26.4	29.4	31.9	2.5
- 공적자금 국제 전환	0.0	14.4	29.4	15.0
- 지방정부 순채무	7.0	6.8	7.0	0.2
- 국고채무 부담행위 등	9.1	9.1	9.3	0.2

(단위: 조원, %)

구 분	'02년	'03년(C)	'04년(D)	증감(D-C)
□ 보증채무	102.5	80.6	66.0	△14.6
(GDP 대비, %)	(15.0)	(11.1)	(8.5)	(△2.6)
○ 구조조정 채권	95.4	77.4	65.1	△12.3
- 예보채	81.0	71.2	61.1	△10.1
- KAMCO채	14.4	6.2	4.0	△2.2
○ 대려경협차관 보증	1.1	1.1	-	△1.1
○ 보증차관 등*	6.0	2.1	0.9	△1.2

* 보증차관, 컨테이너 부두개발 보증채권, 산금채 등

□ '04년 국가채무 주요 증감요인

- ① 외환시장 안정용 재원조달 17.8조
- ② 일반회계 적자보전 2.5조: IMF는 한국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 수행을 권고
- ③ 공적자금 국채전환 15.0조: '06년 전환 완료('03년~'06년)
→ 국채발행량 증가는 국채시장 유동성 증진을 통해 장기 채 시장 조성을 위한 국채 유통시장 기반확보

3. 국가채무의 상환부담에 따른 분석

□ 적자성 채무

- 정부가 향후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상환해야 할 채무

□ 금융성 채무

- 민간 융자금 등으로 사용되어(국가채권 증가), 향후 동채권을 회수하여 상환할 수 있는 채무

〈'04년말 국가채무의 상환부담 분석〉

국가채무 203.1조원 (100%)	적자성 채무 77.6조원 (38.2%)	외환위기 이후 경기진작 등을 위한 적자재정편성 재원조달: 31.9조원 공적자금 국고채 전환분: 29.4조원 이중곡가제시행 등으로 인한 양특회계 적자보전: 4.7조원 지방정부 순채무: 7.0조원 국고채무부담행위 등: 4.6조원
	금융성 채무 125.5조원 (61.8%)	외평기금(외화자산 매입): 51.3조원 주택기금: 36.7조원 재정용자특별회계: 23.9조원 농어촌 구조개선 자금융자: 4.8조원 남북협력기금: 1.6조원 대려경협차관 대지급 등: 7.2조원

부동산세제 향후 정책방향

※ 이 자료는 2005년 5월 6일 재정경제부 세제실에서 발표한 「부동산세제 향후 정책방향」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정부는 2005. 5. 4(수) 대통령님 주재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부동산정책회의를 개최하여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였음

□ 부동산세제 개편내용 평가

- 보유세 및 투기이익에 대한 양도세 강화로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
- 과표 현실화 및 주택가격 사전공시로 부동산세제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 부동산세제 향후 정책방향

- '08년까지 '03년의 2배 수준으로 보유세를 강화
 - 보유세 실효세율 '03년 0.12% → '08년 0.24%
 - 보유세 강화수준에 맞추어 거래세를 완화
- 개편된 보유세제를 조기에 정착
- 시장투명화의 큰 틀에서 양도소득세 실가과세를 확대
- 사무실, 빌딩 등에 대한 공시가격제도 도입 추진

1. '08년까지 '03년의 2배수준으로 보유세를 강화

□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의 강화를 위해 작년에 보유세제를 전면 개편한바 있으나

- 보유세부담 수준이 낮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따라 보유세를 '08년까지 연차적으로 '03년 대비 2배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음

	'03년	'08년
○ 보유세 실효세율	0.12%	0.24%
○ 총 보유세수	2.5조원	6.4조원

□ 또한, '08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유세 강화를 추진하여 실효세율 수준이 2013년 0.5%, 2017년 1.0%가 되도록 해 나가겠음

2. 보유세를 강화하는 수준에 맞추어 거래세를 완화

- 보유세 강화에 맞추어 2~3년 주기로 거래세율을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함
- 내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되면
 - 개인간의 주택·건물 거래에도 실거래가로 취득·등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거래세 부담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 지자체(시·도) 감면조례로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등록세와 취득세를 감면토록 지자체와 협의해 나갈 것임

3. 개편된 보유세제의 조기 정착

- 금년부터 시행되는 개편된 보유세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함
- 보유세 과세일정 및 추진계획(과세기준일 6. 1)
 - 4월 : 주택가격 공시(6. 30 이의신청분 재공시)
 - 5월 : 토지가격 공시
 - 7월 : 주택분·건물분 재산세 부과
 - 9월 : 토지분 재산세 부과
 - 12월 :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가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만큼 국세청에서는 11월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에게 사전안내를 할 계획임
- 현재 행자부, 시·군·구와 국세청간 전산시스템 연계체계는 구축되어 있으며
 -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과세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고 전산시스템을 보완해 나갈 계획임

4. 양도소득세 실가과세 확대

- '06. 1부터 부동산 실가 신고제도 도입시 실거래가 자료를 축적해 나가는 한편
 - 실거래가액을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대법원·법무부와 협의·추진할 계획임
- 부동산시장 투명화, 거래투명화의 큰 틀에서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신고시스템을 마련하고, 투기이익을 세금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실거래가 과세대상을 확대할 계획임
 - 현재 실가과세 대상으로 검토중인 것
 - 1세대 2주택자가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현행과 같음)
 - 외지인이 농지, 임야, 내대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등
 - 이를 위하여 금년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하여 '06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양도소득세를 전면적으로 실가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 30여년간 기준시가로 과세하여 왔던 양도세 기본골격을 바꾸는 것이므로
 - 실가과세를 할 수 있도록 제도·행정상의 검토 등을 거쳐 '06년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임

5. 사무실·빌딩 등의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제도 도입 추진

- 사무실, 상가, 빌딩 등의 부동산에 대하여도 통합평가, 통합과세하는 방안을 추진

부동산세제 향후 정책방향 관련 문답자료

1. 보유세를 강화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 현행 보유세 수준이 너무 낮아 국민들이 느끼는 현실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다소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임
- 예를 들어 2005년 기준시가가 10억원(시가 12.5억원 정도)인 고가주택의 '05년도 보유세는 189만원(06년 이후 249만원)임**

〈보유세 부담사례('05년)〉

기준시가	시가	보유세액			비고
		재산세	종부세	합계	
10억원	13억원	189만원	-	189만원	잠실동 52평형
14억원	18억원	324만원	125만원	449만원	도곡동 73평형
23억원	29억원	549만원	168만원	717만원	도곡동 102평형

2. 어떤 방법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려는가?

- 보유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될 것임**
- 보유세의 누진세율체계상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면 자동적으로 세부담 수준이 증가하게 됨**
 〈참고〉 보유세 과세표준액
 - 주택 공시가격 × 50%(적용비율)
 - 토지 공시지가 × 50%(적용비율)

3. 실효세율이란 무엇인가?

- 실효세율이란 부동산가격 대비 세부담액 비율을 말하며, 예를 들어 1억원의 부동산에 100만원의 세부담이 있었다면 실효세율은 1%가 되는 것임**
 - 실효세율 = 세부담액/부동산가격
 - 다만, 부동산의 경우 정확한 시가를 알기 어려운 점이 있어 공시가격을 부동산가격으로 하여 실효세율을 산정하고 있음

4. 보유세 실효세율이 2배 인상되는데 보유세수는 2.6배 인상되는 이유는?

- 부동산가격과 과세표준이 함께 올라가기 때문임**
- 실효세부담률 = 보유세액/부동산가격**

5. 부동산 실거래가제도 도입에 맞추어 거래세가 완화되고 양도세가 개편되는데 실거래가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는가?

- 부동산 실거래가 거래를 의무화하는 「부동산 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임**
-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봄**

6. 거래세를 완화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적용되게 되는가?

- 현재 법인과의 부동산 거래 또는 법인가간 부동산 거래시에**

는 실거래가로 거래세가 과세되나 개인간 주택·건물 거래시에는 공시가격으로 과세되고 있으므로

- 향후 실거래가 과세 전환시 개인간 주택·건물 거래시 세부담 증가가 크게 되므로 주로 개인간 거래시 거래세 감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감면조례에 의한 거래세 감면 문제는 각 지자체에서 결정할 사안인 만큼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거래세를 감면토록 지자체와 협의해 나가겠음

7. 지난 4. 30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의견제출 등 민원이 많아 보유세 과세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지난 4. 30 주택가격을 신규공시한 개별주택은
 - 모두 586만호(단독 419만호, 연립·다세대 167만호)이고 의견제출을 한 주택은 16천건으로서 0.27%에 불과하며
 - 이 중에서 8천건의 의견을 반영한 바 있음
- 이러한 사전적 구제절차와는 별개로 주택가격이 공시된 이후에도 5월 한달간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6월말까지 주택가격을 엄정하게 재산정하게 되므로
 - 주택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보유세제 정착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을 것임

8. 양도세 실거래가과세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 현재도 1세대 3주택 등에 대하여는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있음
 - * 현재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과세되는 사례

• 1세대 3주택, 6억원 이상 고가주택, 투기지역내 부동산, 미등기양도, 1년 이내 단기양도 부동산 등

- 우선적으로 1세대 2주택자가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나 외지인이 농지, 임야, 나대지를 취득했다가 양도하는 경우 등에 실거래가 과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원유 등 석유류에 대한 관세율 인하 적용시한 재연장

※ 이 자료는 2005년 4월 21일 재정경제부 세제실에서 발표한 「원유 등 석유류에 대한 관세율인하 적용시한 재연장」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정부는 물가안정 기초 유지 등을 위해 작년 10. 30부터 한시적으로 연장 시행한 원유 등 석유류에 대한 관세율 인하 조치를 '05. 12. 31까지 8개월 재연장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음

- * 특례세율 적용시한(최초) : '04. 4. 30~10. 30(6개월)
- * 특례세율 적용시한(1차연장) : '04. 10. 30~'05. 4. 30(6개월)

○ 적용시한 재연장

- (당초) : '05. 4. 30 → '05. 12. 31(8개월간)

○ 대상품목과 관세율 : 현행과 같음

대상품목	관세율
- 원유(나프타 제조용 제외)	1%
- 휘발유와 그 조제품	5%
- 등유와 그 조제품	5%
- 경 유	5%
- 중 유	5%

◇ 시행시기 :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공포일('05. 5. 1)부터

1. 관세율 인하 재연장 내용과 효과

<재연장 내용>

□ 정부는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 '05. 4. 30 만료예정인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할당관세를 '05. 12. 31까지 재연장 시행할 예정

<할당관세 재연장 내용>

관세율 표번호	품 명	관 세 율		적용기한	
		기본 관세	할당 관세	당초	연장
<원유 및 석유제품>					
2709	원유(나프타 제조용 이외의 것)	5%	1%	'05. 4. 30	'05. 12. 31
2710	휘발유 및 그 조제품	8%	5%		
2710	등유 및 그 조제품	8%	5%		
2710	경 유	8%	5%		
2710	중 유	8%	5%		

* 나프타 제조용 원유 : 할당 0%('03. 7. 1 이후 현재까지)

〈경제적 효과(추정)〉

- 석유제품 가격인하: △5~6원/ℓ
- 물가(소매물가 기준): △0.025%p 인하
- 예상 지원규모: 약 2,400억원/8월(300억원/월)

2. 적용시한 재연장 배경

- 고유가는 실물경제 전반에 비용상승을 가져와 물가상승, 성장을 둔화, 경상수지 악화 등 국민경제에 충격을 초래하므로 이를 어느 정도 완화할 필요

- 만약, 관세율을 종래 수준으로 환원(원유1 → 3%, 제품5 → 7%)할 경우

- 기업의 채산성 악화와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 등으로 내수회복 지연 등 경기회복에 부정적 영향 초래 가능성

- 우리나라 휘발유 소비자가격('05년 4월 2주: 1,415원/ℓ)이 외국에 비해 높아 국제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

* 휘발유 소비자가격 국제비교('05. 2월 기준, 원)

- OECD평균 1,205, 미국 522, 일본 1,131, 캐나다 710, 영국 1,552

- 또한, 우리나라 원유관세율도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 향후 외국과의 동등한 경쟁여건 조성 등을 위해 저세율 구조로 전환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례세율 적용시한을 금년 말까지 재연장하게 된 것임

3. 용어 설명

- 할당관세 제도

- 할당관세는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 물가 안정, 산업의 경쟁력 강화, 물자의 수급원활 및 유

사물품간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목적으로 운용하며
- 기본세율에서 40%p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탄력관세제도(대통령령)

* '01년까지 6월 단위, '02년부터 1년 단위로 운용

- '05년 현재 철광석, 원유 등 96개 품목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저세율인 할당관세를 적용 중

- 특례세율

- 유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할당관세보다 인하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한 세율로 할당관세와 구분하기 위해 사용된 조어(造語)로서 법률용어는 아님

〈예시〉

관세율 표번호	품 명	관 세 율		비 고
		기본(할당)	특례	
2709	원유(나프타 제조용 이외의 것)	5%(3%)	1%	

Ten-Ten 전략을 통해 국가전략기획본부 역할 수행

- 2005년 기획예산처 연두업무보고 -

※ 이 자료는 2005년 4월 21일 기획예산처 재정분석과에서 발표한

「2005년 기획예산처 연두업무보고: Ten-Ten 전략을 통해 국가전략기획본부 역할 수행」의 전문입니다.<편집자 주>

□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은 기획예산처가 국가발전의 큰 그림을 그리는 국가전략기획본부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05년 이행과제를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하였음

- ※ 연두업무보고: '05. 4. 21 (목) 15:00/ 청와대 세종홀
- 참석: 대통령, 경제부총리, 국무조정실장, 비서실장, 정책실장, 경제정책수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미래사회위원장 등

□ 금년도 업무보고는 지난해 성과와 당해연도의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과거 방식에서 탈피하여 국민의 기대, 재정의 역할, 선진 재정당국의 기능 등을 감안하여 5대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음

- ① 국가재원의 전략적 배분
- ② 국민기본수요 충족과 형평증진
- ③ 경제의 안정적 성장 지원
- ④ 성과와 책임 중심의 재정운영
- ⑤ 공공부문 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혁신 활성화

□ 앞으로 기획예산처는 “국가발전의 전략기획본부”가 되다는 비전 아래 “재정낭비 10% 축소, 재정성과 10% 향상”

(Ten-Ten)이라는 추진전략을 통해 “더 나은 미래 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임

□ 오늘 기획예산처가 보고한 '05년 주요업무계획은 다음과 같음

(1) 선진국형 재원배분구조로 전환

- 경제분야는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 추진
- 복지분야는 사회통합을 통해 경제성장의 에너지를 확대 재생산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

(2) 재정지출 원칙을 확립하여 재정투자의 효율화 및 세출사업 10% 구조조정 추진

<재정지출 원칙>

- ①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보조는 가격보조보다는 직접지원 방식으로 추진
- ② 시장공급이 가능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축소·폐지
- ③ 재해·안전·보건분야에 대한 사전 예방투자 강화
- ④ 사회복지·인력개발·교육프로그램은 수요자 선택권 강화
- ⑤ 모든 재정사업에 대해 균형발전영향평가 실시

(3) 국민의 기본수요에 대한 투자확대

-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지원을 확대하고 대학학자금 지원을 정보보증방식으로 전환하여 보다 많은 학생에게 고등교육 기회 부여
-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축소
 - ※ 가계소득 대비 주거비 및 교육비가 각각 일본에 비해 2배, 3배 수준

(4) 재정규모 결정방식을 중장기 균형방식으로 개선

- 그동안 단년도 세입내 세출원칙에 따라 재정을 경직적으로 운용하여 경기대응 기능이 미약
 - ※ 지난 26년 중 17년간은 재정규모가 경기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경기조절에 효과적이지 못하였던 것으로 분석(KDI)

(5) 재정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각 부처 예산집행의 자율성 확대

- 매년 전체 재정사업의 20~30%를 평가(3~5년 주기)하는 자율평가제도 도입
- 성과평가제도 정착에 병행하여 일정규모 및 용도내에서 총사업비 자율변경 권한을 시행부처에 부여하는 공사예비비 제도 도입

(6) 지자체, 산하기관, 공기업을 재정의 범위에 포함

- 재정의 범위를 국제기준(IMF '01 GFS)에 따라 재설정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
- '06년부터 국제기준에 맞게 모든 재정통계를 작성·공표

(7) 공기업·산하기관 성과관리시스템 강화

- 주무부처의 사전규제를 과감히 정비하여 공기업·산하기관의 혁신역량 강화

- OECD 「공기업지배구조지침」('05. 4월말 발표 예정) 등을 감안하여 성과지향적 지배구조 구축

(8) 5대 정책목표 수행을 위해 조직구조·운영시스템 등 전면 혁신

- 참여적·수평적 재원배분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부처가 개별사업 예산편성, 당정협의, 국회심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 담당
- Top-Down 제도 등 재정혁신을 가장 잘 뒷받침하는 조직으로 탈바꿈

(9) 선진한국 실현을 재정에서 적극 뒷받침

- 향후 10년간에 경제성장 및 국가발전에 매우 중요
 - * 65세 이상 인구비중(%) : ('80) 3.8 → ('90) 5.1 → ('00) 7.2
→ ('18) 14.3
 - 연평균 경제성장률(실질, %) : ('71~'90) 8.0 → ('91~'00) 5.7
→ ('01~'04) 4.9
 - 국민소득 : 한국 14,162불('04년), OECD 평균 25,700불('03년)
- 고령화 등 새로운 복지수요 및 성장잠재력 확충에 적극 대응하는 등 재정의 역할을 확대 강화

〈참고〉 5대 정책과제, 24개 이행과제, 5대 혁신과제

정책과제	1. 국가재원의 전략적 배분	1-1. 중장기 재원배분 전략에 대한 합의 도출 1-2. 10% 세출구조조정 추진 1-3. 균형발전 영향평가 제도 도입 추진 1-4. 지방의 혁신역량 및 낙후지역 지원강화 1-5. 부처 중장기계획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계 강화
	2. 국민기본수요 충족과 형평 증진	2-1. 국민기본수요에 대한 투자 확대 2-2. BTL을 통해 교육·복지시설 조기 확충 2-3. 사회적 일자리 확충으로 고용기회 및 복지서비스 확대 2-4. 국민합의·재원대책이 미흡한 입법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3.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	3-1. 탄력적 경기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3-2. 상반기는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경기회복 지원 3-3. 하반기는 BTL 등 종합투자계획 실행을 통해 경제활성화 3-4. 국민경제 관점에서 기금 여유재원의 투자처 제공 3-5. 거시경제정책 수행을 위한 인프라 및 분석기능 강화
	4. 성과와 책임중심의 재정부영	4-1.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도입 4-2. 재정 성과관리와 통합국정평가제도와의 연계 강화 4-3. 예산 낭비 대응체계 구축 4-4. 예산집행의 자율성 확대
	5. 공공부문 재정의 투명성과 혁신 활성화	5-1. 재정의 범위 재설정 5-2. 프로그램 예산체계 도입 5-3. 공기업·산하기관 성과관리 시스템 강화 5-4. 공기업·산하기관의 혁신역량제고 5-5. 성과지향적 지배구조 구축방안 마련 5-6. 부담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
혁신과제	1. Clean 기획예산처 확립 2. 고객감동 예산협의 3. 재정혁신을 가장 잘 뒷받침하는 조직으로 탈바꿈 4. 전략적 성과관리시스템(내부) 구축·운영 5. 학습을 통한 재정혁신 확산 : 재정학교 설립	

2005년 공동주택 기준시가 정기고시

※ 이 자료는 2005년 5월 3일 국세청 재산세과에서 발표한 「2005년 공동주택 기준시가 정기고시」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국세청(청장 이주성)은 『2005. 5. 2 시행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정기고시함

○ 가격조사 기준일은 2005. 1. 1임

○ 공정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가능가액을 부동산 감정평가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하여 조사하였음

□ 금번 고시대상은 659만세대(공공임대아파트 등 61만세대 포함)임

○ 직전고시(2004. 3. 2 기준가격, 2004. 4. 30 고시) 대비 평균 4.2% 하락하였음

□ 기준시가 적용일 및 안내서비스

○ 고시일(2005. 5. 2) 이후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됨

○ 2005. 5. 2(월) 09:00부터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기준시가를 열람할 수 있음

□ 기준시가 고시가격에 대한 『재조사청구 제도』 시행

○ 고시된 내용 중 이의가 있을 경우 2005. 5. 2부터 5. 31까지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음

1. 고시근거 및 활용

□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함

-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다목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제3항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6년부터 건설교통부에서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가격을 공시할 예정임

□ **현행 양도·상속·증여세 과세시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평가에 활용되는 외에**

- 2005년부터 주택분 재산세·등록세·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됨
-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은 기준시가의 50%를 적용함

2. 고시대상

□ **기준시가 고시대상은 층수가 5층 이상인 아파트와 전용면적 165㎡(50평) 이상 연립주택 또는 100세대 이상 대규모 단지내에 소재하는 연립주택임**

□ **이에 따라 전국의 아파트 653만세대(공공임대아파트 등 61만세대 포함), 연립주택 6만세대 등 모두 659만세대에 대해 고시함**

- 전년도 정기고시 대비 117만세대가 증가함
 - 신규아파트 56만세대, 공공임대아파트 61만세대 추가 고시
- 전체 고시 대상 중 조정고시는 542만세대, 신규고시는 117만세대임
- 다만, 직전고시 이후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아파트 등은 이번 고시에서 제외했으며, 입주권으로서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됨

(단위: 천세대)

구 분	계	조정고시	신규고시
합 계	6,588	5,420	1,168
아파트	6,524	5,362	1,162
연립주택	64	58	6

□ **지역별 고시대상 현황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전체 고시대상의 48%를 차지함(314만세대)**

-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가 87%로 대

부분을 차지함(570만세대)

3. 거래시가 조사의 공정성 확보

□ **기준시가의 공정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동주택 거래시가를 부동산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하여 조사하였음**

- 2005. 1. 1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래가능가액」을 조사하는 등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였음
- 같은 단지에 소재하더라도 방향·조망·소음 등 아파트 개별특성에 따라 거래시가가 달리 형성되는 것을 반영하였음

□ **국세청에서 구축·활용중인 「아파트 거래시가 전산관리 시스템」을 종합 분석하여**

- 지역별 가격선도아파트는 「정밀조사대상 아파트」로 지정하여 보다 더 세밀하게 거래시가를 조사하는 등 공정·타당한 기준시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음

□ **또한, 기준시가 고시전에 소유자 등이 고시에정가액을 미리 열람한 후, 필요한 경우 고시에정가액에 대한 의견을 제출(3. 14~23)토록 하였고**

□ **이번 기준시가 고시후에도 고시된 내용 중 이의가 있으면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5월중 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음**

- 청구된 내용은 6월중 부동산평가 전문기관에 재조사를 의뢰하고, 처리결과를 6월말까지 청구인에게 개별통지할 것임

4. 기준시가의 시가반영비율

□ 2005년도 공동주택의 시가반영비율은

- 전국의 공동주택 중 대다수(87%)를 차지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소형(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는 시가반영비율을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75%, 그 외 지역은 70%를 적용하였음
- 전용면적 85㎡(25.7평)를 초과하는 중·대형아파트의 시가반영비율은 80%를 적용하였음

〈기준시가 시가반영비율〉

전용면적 기준	2005년 시가반영비율	
	수도권	전 국
85㎡ 이하	75%	70%
85㎡ 초과	80%	

* 경기도: 기평·양평·여주·연천군은 수도권에서 제외

* 인천시: 강화·옹진군은 수도권에서 제외

5. 지역별 기준시가 평균변동률

□ 이번 고시는 직전고시 대비 평균 4.2% 하락하였음

- 지역별로는 대전이 제일 크게 하락(△7.4%)하고, 울산은 2.1% 상승함
- 대전은 행정수도 이전계획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2004년에 14.0% 상승하였으나, 2005년은 7.4% 하락함
- 울산은 지역환경 등 생활여건 향상과 주택수요 증가로 인해 2.1% 상승함

□ 광주·강원·충남·전북 등은 하락률이 2% 이하로 변동 폭이 작았음

〈2005년 지역별 기준시가 평균변동률〉

(단위: %)

시·도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변동률	△4.2	△5.1	△5.7	△4.2	△2.8	△0.3	△7.4	2.1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5	△0.6	△2.5	△0.6	△1.9	△3.2	△4.1	△5.8	△2.5

□ 평형당 평균 기준시가는 전국 평균 374만원이고(직전고시보다 평균 21만원 하락)

- 서울지역은 760만원, 경기지역은 433만원임

6. 기준시가 적용일 및 안내서비스

□ 이번에 고시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2005. 5. 2 이후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함

- 2005년 7월에 고지하는 주택분 재산세와 2005년 12월에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됨
-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은 기준시가의 50%를 적용함

□ 2005. 5. 2(월) 09:00부터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하여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고

- 국세청 홈페이지에 열람방법 등 납세자가 궁금해 할 사항을 중심으로 『공동주택기준시가 문답사례』를 게재하였음

□ 세무서는 5. 1부터 5. 31까지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가 진행중이어서 업무폭주가 예상되므로

- 기준시가 관련 안내를 위해 안내전담요원 201명(서울 68명)과 안내전용 전화회선을 추가 배치하였으나, 불편이 우려되므로 가급적 인터넷에 게시된 문답사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람

□ 국세청에서는 지난 23년 동안 기준시가 제도를 운영해 왔고, 1998년부터는 기준시가를 인터넷으로 모두 공개하고 있으므로 고시가액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 다만, 재조사 청구기회가 일실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것임

7. 공동주택기준시가 『재조사 청구제도』 시행

□ 기준시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서 정기고시후에 「재조사 청구제도」를 시행할 예정임

□ 고시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 「공동주택기준시가재조사청구서」 서식에 청구이유·

근거 등을 기재하여 2005년 5월 2일부터 31일까지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 재산제세 담당과에 「우편」 등으로 제출하며, 인터넷으로는 제출할 수 없음

* 「재조사 청구서」 서식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제공함

□ 각 세무서에서는 재조사 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부동산평가 전문기관에 재조사를 의뢰할 것임

○ 부동산평가 전문기관은 6월중 재조사를 실시하여 검토 결과를 관할세무서로 통보하고,

○ 처리결과를 2005년 6월말까지 청구인에게 개별통지할 예정임

참고자료

□ 고시대상 현황

○ 지역별

(단위: 단지·동수, 천세대)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단지	27,931	5,753	3,245	1,381	1,206	775	546	1,039
동	94,053	16,407	7,741	4,748	5,172	3,041	2,838	2,307
세대수	6,588	1,130	532	354	371	263	230	173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단지	4,788	884	807	810	928	829	1,872	2,589	479
동	24,459	2,967	2,789	3,065	3,319	2,828	4,747	6,596	1,029
세대수	1,644	197	207	232	266	210	314	427	37

○ 규모별

(단위: 천세대, %)

면적구간별	시 도 별				
	전 국	서 울	경 기	광역시	그 외 지역
합 계	6,588 (100.0)	1,130 (17.2)	1,644 (25.0)	1,923 (29.2)	1,890 (28.7)
85㎡ 이하	5,705 (86.6)	863 (13.1)	1,364 (20.7)	1,696 (25.7)	1,782 (27.1)
85~165㎡ 미만	828 (12.6)	244 (3.7)	261 (4.0)	218 (3.3)	105 (1.6)
165㎡ 이상	55 (0.8)	23 (0.4)	18 (0.3)	10 (0.2)	3 (0.0)

* 하단의 ()안은 전체세대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 지역별 기준시가 평균변동률

(직전고시 대비)

(단위: %)

시·도별	평균변동률	
	2004. 4. 30	2005. 5. 2
전 국	6.7	△4.2
서 울	8.8	△5.1
부 산	2.0	△5.7
대 구	5.2	△4.2
인 천	15.2	△2.8
광 주	3.2	△0.3
대 전	14.0	△7.4
울 산	6.3	2.1
경 기 도	11.8	△4.5
강 원 도	4.3	△0.6
충 청 북 도	3.9	△2.5
충 청 남 도	7.3	△0.6
전 라 북 도	0.9	△1.9
전 라 남 도	0.0	△3.2
경 상 북 도	0.1	△4.1
경 상 남 도	5.3	△5.8
제 주 도	0.0	△2.5

□ 서울시 구별 기준시가 평균변동률

(직전고시 대비)

(단위: %)

서울시 구별	평균변동률	
	2004. 4. 30	2005. 5. 2
서 울	8.8	△5.1
강 남 구	12.6	△9.5
강 동 구	10.0	△3.7
강 북 구	1.1	△6.0
강 서 구	1.4	△3.5
관 악 구	9.9	△2.9
광 진 구	4.6	△3.0
구 로 구	8.0	△2.9
금 천 구	5.9	△0.4
노 원 구	10.9	△5.6
도 봉 구	7.7	△4.2
동 대 문 구	8.1	△2.8
동 작 구	7.4	△2.8
마 포 구	7.8	△1.7
서 대 문 구	11.5	△4.7
서 초 구	2.7	△9.0
성 동 구	17.0	△0.4
성 북 구	14.0	△3.6
송 파 구	4.9	△6.4
양 천 구	9.7	△2.8
영 등 포 구	12.3	1.3
용 산 구	10.8	△5.8
은 평 구	6.4	△6.8
종 로 구	18.3	△6.9
중 구	15.2	△6.0
중 랑 구	3.4	△4.4

□ 기준시가 계급별 분포

(단위: %, 천세대)

구 분	구성비	세대수
소 계	100.0	6,588
1억원 미만	65.6	4,321
1억~3억원 미만	28.4	1,873
3억~6억원 미만	5.0	326
6억~9억원 미만	0.8	51
9억원 이상	0.2	17

□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인 공동주택 지역별 분포

(단위: 천세대)

지 역 별	9억원 이상
전 국	17
서 울	17
강 남 구	11
서 초 구	2
송 파 구	2
용 산 구	1
기 타	0.3
경 기	0.3
성 남 분 당 구	0.3

□ 기준시가 상위 공동주택(10개)

○ 아파트

(단위: 천원)

순위	소 재 지	아파트명	평 형	기준시가
1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3	180	2,880,000
2	강남구 도곡동	힐데스하임빌라	210	2,800,000
3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104	2,744,000
4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3	103	2,472,000
5	용산구 이촌동	LG한강자이	93	2,400,000
6	강남구 논현동	동양파라곤	90	2,354,000
7	강남구 신사동	중앙하이츠파크	114	2,160,000
8	용산구 한강로3가	한강대우트럼프월드3	98	2,080,000
8	강남구 청담동	상지카일룸	127	2,080,000
10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94	2,040,000



○ 연립주택

(단위: 천원)

순위	소재지	연립주택명	평형	기준시가
1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	230	3,280,000
2	서초구 양재동	신동아빌라	89	1,640,000
3	용산구 동빙고동	현대이스트빌	106	1,400,000
4	강남구 삼성동	현대빌라	88	1,344,000
5	강남구 청담동	청담빌라	95	1,248,000
6	마포구 마포동	벽산빌라	114	1,200,000
7	강남구 논현동	카이트빌라	130	1,176,000
8	성북구 성북동	성북빌하우스	90	1,172,000
9	성북구 성북동	효성성북동빌라	114	1,160,000
10	용산구 이태원동	빌라(152-6)	143	1,120,000

□ 상승금액 · 상승률 상위 아파트 (10개)

○ 향후 상승금액이 큰 아파트

(단위: 천원)

순위	소재지	아파트명	평형	기준시가		상승금액
				2004. 4. 30	2005. 5. 2	
1	용산구 이촌동	삼성리버스위트	85	1,026,000	1,327,000	301,000
2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1	51	807,500	1,063,000	255,500
3	용산구 이촌동	LG한강자이	92	2,205,000	2,400,000	195,000
4	서초구 서초동	서초가든스위트	83	1,208,500	1,400,000	191,500
5	강남구 논현동	동양파라곤	77	1,089,000	1,268,000	179,000
6	성남시 정자동	로얄팰리스	91	828,000	1,000,000	172,000
7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3	74	1,395,000	1,562,000	167,000
8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2	55	1,105,000	1,271,000	166,000
9	양천구 신정동	삼성세르빌	84	720,000	880,000	160,000
10	영등포 여의도동	리첸시아	57	544,000	704,000	160,000

○ 상승률이 높은 아파트

(단위: 천원, %)

순위	소재지	아파트명	평형	기준시가		상승률
				2004. 4. 30	2005. 5. 2	
1	안양시 비산동	원건	22	52,500	112,500	114.3
2	부산 동래 사직동	구공영	21	32,000	65,500	104.7
3	구미시 공단동	공단2주공500	10	15,000	27,000	80.0
4	종로구 창신동	창신	12	34,500	61,500	78.3
5	연기군 조치원읍	번암주공	16	15,000	26,500	76.7
6	종로구 행촌동	대성맨션	6	15,000	26,000	73.3
7	부산 동래 사직동	개나리	22	35,500	59,500	67.6
8	울산 남 신정동	올림푸스골든	37	66,500	108,500	63.2
9	부산 부산진 연지동	삼익	11	14,000	22,000	57.1
10	울산 남 무거동	삼호주공	17	38,500	59,500	54.6

□ 계산사례

○ 사례 1

〈양도소득세〉

◆ 서울시 성동구 ○○동 소재 33평형 아파트를 2003. 5. 10 취득하여 2005. 5. 20 양도

▶ 양도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 : ① 2004. 4. 30고시 252,000,000원
② 2005. 5. 2고시 280,500,000원

▶ 취득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 : (2003. 4. 30고시) 210,000,000원

(단위: 원)

구분	양도당시 기준시가 적용		비고
	① 직전고시	② 이번고시	
양도가액	252,000,000	280,500,000	28,500,000 상승
(-) 취득가액	210,000,000	210,000,000	
(-) 필요경비	6,300,000	6,300,000	취득가액×3%
= 양도소득	35,700,000	64,200,000	
(-) 양도소득공제	2,500,000	2,500,000	
= 과세표준	33,200,000	61,700,000	
× 세율	18%	27%	누진공제액 · 18%: 90만원 · 27%: 450만원
양도소득세	5,076,000	12,159,000	증가 7,083,000원

○ 사례 2

〈양도소득세〉

◆ 인천시 남동구 ○○동 소재 46평형 아파트를 2003. 5. 10 취득하여 2005. 5. 20 양도

▶ 양도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 : ① 2004. 4. 30 고시 207,000,000원
② 2005. 5. 2 고시 184,000,000원

▶ 취득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 : (2003. 4. 30고시) 174,000,000원

(단위: 원)

구분	양도당시 기준시가 적용		비고
	① 직전고시	② 이번고시	
양도가액	207,000,000	184,000,000	23,000,000 하락
(-) 취득가액	174,000,000	174,000,000	
(-) 필요경비	5,220,000	5,220,000	취득가액×3%
= 양도소득	27,780,000	4,780,000	
(-) 양도소득공제	2,500,000	2,500,000	
= 과세표준	25,280,000	2,280,000	
× 세율	18%	9%	누진공제액 · 18%: 90만원
양도소득세	3,650,400	205,200	감소 3,445,200원

○ 사례 3
〈증여세〉

◆ 경기 성남 분당 ○○동 소재 32평형 아파트를 2005. 5. 20 자녀(성
년)에게 증여(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 적용)
▶ 증여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 : ① 2004. 4. 30 고시 405,500,000원
② 2005. 5. 2 고시 367,500,000원

(단위: 원)

구 분	증여당시 기준시가 적용		비 고
	① 직전고시	② 이번고시	
증여재산가액	405,500,000	367,500,000	38,000,000 하락
(-) 증여재산공제	30,000,000	30,000,000	
= 과세표준	375,500,000	337,500,000	누진공제액
× 세 율	20 %	20 %	· 20%:10백만원
증 여 세	65,100,000	57,500,000	감소 7,600,000원

○ 사례 4
〈상속세〉

◆ 서울시 강남구 ○○동 소재 65평형 아파트를 소유자 사망으로 2005.
5. 20 배우자 및 자녀(2인)에게 상속
(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 적용)
▶ 상속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 : ① 2004. 4. 30 고시 1,530,000,000원
② 2005. 5. 2 고시 1,415,000,000원

(단위: 원)

구 분	상속당시 기준시가 적용		비 고
	① 직전고시	② 이번고시	
상속재산가액	1,530,000,000	1,415,000,000	115,000,000 하락
(-) 상속공제	1,156,000,000*	1,106,000,000**	법정지분 상속 · 배우자 3/7 · 자녀(2인) 각2/7
= 과세표준	374,000,000	309,000,000	누진공제액
× 세 율	20 %	20 %	· 20%:10백만원
상 속 세	64,800,000	51,800,000	감소 13,000,000

* 상속공제 1,156백만원 즉 배우자공제(MIN[656백만원(1,530백만
원× 3/7), 30억원])

+ MAX[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 2억원+자녀공제 6천만원(3천
만원× 2인))]

** 상속공제 1,106백만원 즉 배우자공제(MIN[606백만원(1,415백
만원× 3/7), 30억원])

+MAX[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 2억원+자녀공제 6천만원(3천
만원× 2인))]

문답 사례

I. 기준시가 조회 방법

1. 2005년 「공동주택기준시가」는 어떻게 조회할 수 있습
니까?

☞ 2005. 5. 2(월) 09:00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
nts.go.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기준시가 조회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Home □ 국세정보서비스 □ 조회와
계산 □ 아파트·연립주택 기준시가 조회 □ 지역 선택
□ 지번, 건물명 또는 건물전체 검색 □ 동·호 선택

2. 국세청 홈페이지 기준시가 조회 화면에서 아파트명을 정
확하게 입력해도 해당 아파트가 검색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공동주택기준시가」의 아파트명은 대부분 ‘아파트’,
‘차’, ‘단지’ 등의 문구를 제외한 고유명칭만으로 작성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명 중 주요단어만 입력하면 해당 단어를 포함하
는 모든 아파트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예: 성실아파트 ⇒ ‘성실’, 성실2차아파트 ⇒ ‘성실2’ 로
입력)

3. 국세청 「공동주택기준시가」 고시대상 및 현황은?

☞ 국세청 「공동주택기준시가」 고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파트 : 층수가 5층 이상인 아파트
- 연립주택 : 전용면적 165㎡ 이상인 대형연립주택 또는 100세대 이상 대규모 단지내에 소재하는 연립주택

2005년 공동주택기준시가 고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세대)

구 분	계	조정고시	신규고시
합 계	6,588	5,420	1,168
아파트	6,524	5,362	1,162
연립주택	64	58	6

II. 공동주택기준시가와 세금부과

4. 국세청 「공동주택기준시가」는 어떤 세금에 적용됩니까?

☞ 국세의 경우는 공동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가액이 되며 지방세의 경우는 재산세, 취득·등록세의 과세기준가액이 됩니다. 이번에 고시한 「공동주택기준시가」는 2005. 5. 2 이후 취득·양도되거나 상속·증여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5. 「공동주택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에 어떻게 적용됩니까?

☞ 공동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지에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지와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6억원 이상 고가주택, 1년 이내 단기양도, 1세대 3주택, 투기지역 부동산의 양도 등 특정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므로 기준시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6. 공동주택 양도시 2005. 5. 1 이전에 계약하고 5. 2 이후에 잔금을 수령하면 새로운 기준시가가 적용됩니까?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므로 2005. 5. 2에 고시된 새로운 기준시가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합니다.

7. 이번에 국세청 「공동주택기준시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함으로 인해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세부담이 감소합니까?

☞ 2005년 「공동주택기준시가」가 하락함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되는 양도소득세 평균 세부담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6억원 이상 고가주택, 투기지역 부동산의 양도 등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세부담의 변화가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8. 「공동주택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에 어떻게 적용됩니까?

☞ 공동주택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는 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증여 당시의 공동주택 기준시가 가액을 상속·증여 재산가액으로 적용합니다.

시가란 매매거래가액, 2 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액, 수용보상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등을 말합니다.

〈종합부동산세〉

9. 2005년에 처음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세금입니까?

☞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과다보유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최초로 징수하는 국세입니다.

주택·토지 과다 보유자에 대하여 1차로 시·군·구에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로 국가에서 전국의 소유부동산을 인별 합산하여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액 중 재산세로 과세된 부분은 공제됩니다.

10.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과세됩니까?

☞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매년 12. 1~12. 15일까지 주소지(법인인 경우 본점)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1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 2005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소유 '주택가액'의 합계가 9억원을 초과하는 자이며, '주택가액'이란 아파트와 대형연립주택(165㎡ 이상)은 국세청의 「공동주택기준시가」, 단독주택과 중소형연립주택 등은 건설교통부와 지자체에서 공시하는 「주택공시가격」을 말합니다.

1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인별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에서 4억 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 공동주택기준시가 또는 주택 공시가격 × 50%

13.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도 세부담 상한제가 있습니까?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 개편에 따라 세부담의 급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5년 납부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계액은 2004년에 납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합계액의 150%를 한도로 합니다.

14. 2005년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5억 5천만원 이하	1%
5억 5천만원 초과 45억 5천만원 이하	2%
45억 5천만원 초과	3%

※ 과세표준 = 기준시가(또는 공시가격) × 50% - 4.5억원

〈재산세〉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국세청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세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 또는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 「공동주택기준시가」는 2005년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에 어떻게 적용됩니까?

☞ 공동주택에 대한 2005년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공동주택기준시가」에 50%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주택 종류별 재산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종류		고시(공시)기관	과세표준
공동주택	아파트 대형·대규모연립	국세청장	공동주택기준시가 ×50%
	중·소형연립 다세대주택	건설교통부장관	공동주택 공시가격 ×50%
단독주택		시·군·구청장	단독주택 공시가격 ×50%

16. 2005년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이 2004년까지는 면적·원가기준에 의해 산정되었으나 2005년부터 토지, 건물 등을 통합하여 시가로 평가하도록 평가방법이 단순해졌고 세율은 인하되었습니다.

2005년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4천만원 이하	0.15%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0.3%
1억원 초과	0.5%

※ '04년에는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며 종토세 세율은 0.2~5%(9단계), 건물분 재산세 세율은 0.3~7%(6단계)이었음

17. 2005년도 주택분 재산세에 세부담 상한이 있습니까?

☞ 주택분 재산세는 일시에 과중한 세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부담액의 50%를 인상 상한선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8. 2005년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언제 과세됩니까?

☞ 2005년 「주택분 재산세」는 2005. 6. 1 현재의 소유자에게 주택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7월(7.16~7.31)과 9월(9.16~9.30)에 각각 2분의 1씩 과세합니다.

19. 이번 「공동주택기준시가」의 하락으로 재산세 세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이 면적 및 원가기준에서 가격기준으로 바뀌었고, 세율은 건물 0.3~7%, 토지 0.2~5%에서 통합세율 0.15~0.5%로 크게 내렸기 때문에 개별물건의 세액을 직접 계산하지 않으면 세부담이 어떻게 변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취득·등록세는 재산세와 같이 지방세로서 국세청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 또는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 「공동주택기준시가」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에 어떻게 적용됩니까?

☞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하며, 주택 종류별 취득세·등록세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종류	고시(공시)기관	시가표준액
공동주택	아파트, 대형·대규모연립	국세청장 공동주택기준시가
	중·소형연립, 다세대주택	건설교통부장관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	시·군·구청장	단독주택 공시가격

※ 재산세와는 달리 「공동주택기준시가」 전액이 과세표준이 됨

21. 2005년도 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세율은?

☞ 2005년도 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2005. 1. 4 이전	2005. 1. 5 이후	비고
취득세	2%(농특세 포함 2.2%)	2.0%(2.2%)	
등록세	3%(지방교육세 포함 3.6%)	1.5%(1.9%): 개인간 거래 2.0%(2.4%): 일반거래	인하
합계	5%(농특세, 지방교육세 포함 5.8%)	3.5%(4.1%): 개인간 거래 4.0%(4.6%): 일반거래	

※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대한 개인간 거래시는 등록세율 1.5%(농특세, 교육세 포함시 1.8%)

22. 이번 「공동주택기준시가」의 하락으로 취득·등록세 세 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 2005. 1. 5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과세 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공동주택기준시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공동주택기준시가」가 하락한 주택은 '05. 1~4월에 비해서는 취득세·등록세의 세부담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2005. 1. 5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등록세 과세기준이 건물시가표준액(건물)과 개별공시지가(토지)에서 「공동주택기준시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난해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III. 공동주택기준시가 재조사청구

23. 2005년 「공동주택기준시가」가 너무 높거나 낮은 경우 이의제기는 어떻게 합니까?

☞ 2005년 「공동주택기준시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는 5. 2~5. 31까지 「공동주택기준시가 재조사청구서」를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등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4. 재조사청구서는 어떻게 작성합니까?

☞ 재조사청구서에는 청구인 인적사항과 연락처, 소유자와

의 관계, 해당 공동주택, 청구이유와 근거 등을 기재합니다.

'신청요지'란에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상향·하향 가격을 제시하며, '신청이유'란에 기재할 사항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25. 재조사청구에 의해 정정되는 기준시가는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까?

☞ 재조사청구에 의해 정정되는 기준시가는 2005. 5. 2로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정정된 기준시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하여 2005년도 재산세 등의 과세에 사용되도록 할 것입니다.

IV. 공동주택기준시가 조사·산정

26. 국세청 「공동주택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였습니까?

☞ 「공동주택기준시가」는 공정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동산평가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하여 조사하였으며, 기준시가 가액은 가격조사 기준일('05. 1. 1)의 거래가능가액에 주택 규모별 시가반영비율(70~80%)을 곱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7. 국세청 「공동주택기준시가」는 시세의 몇%를 반영하고 있습니까?

☞ 국세청 「공동주택기준시가」의 시가반영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면적 기준	2005년 시가반영비율	
	수도권	수도권 외
85㎡ 이하	75%	70%
85㎡ 초과	80%	

※ 경기 가평·양평·여주·연천군, 인천 강화·옹진군은 수도권에서 제외

28. 그간 층별 3단계 가격등급으로 산정하던 「공동주택기준 시가」를 금년부터 3~6단계로 세분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방향, 조망, 소음 등 아파트 개별특성에 따른 가격차이와 선호층의 변화를 보다 현실적이고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층별 가격등급 구분을 최고 6단계까지 세분화하여 조사하였습니다.

29. 2005년 「공동주택기준시가」는 전년에 비해 얼마나 변동하였습니까?

☞ 2005년 「공동주택기준시가」전년 대비 지역별 변동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시도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변동률	△4.2	△5.1	△5.7	△4.2	△2.8	△0.3	△7.4	2.1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5	△0.6	△2.5	△0.6	△1.9	△3.2	△4.1	△5.8	△2.5

- 상승지역은 울산 1곳(2.1%)이며, 지역환경 등 생활여건 향상과 많은 유동인구로 주택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 대전은 행정수도 이전계획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2004년에 14.0% 상승하였으나, 2005년은 7.4% 하락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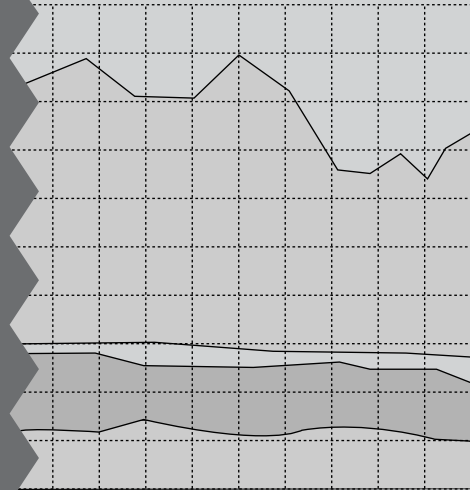
재정통계

• 주세 I 편

• 상속세 I 편

1. 상속세율의 변천
2. 상속세 예산 및 징수
3. 상속세 부과
4. 재산종류별 상속재산가액

• 상속세 II 편



1. 상속세율의 변천

(단위: %)

과 세	67. 11. 29 이후	74. 12. 21 이후	79. 12. 28 이후	81. 12. 31 이후	88. 12. 26 이후	90. 12. 31 이후	94. 1. 1 이후	96. 1. 1 이후	97. 1. 1 이후	2000. 1. 1이후
200천원 이하	5									
200천원 초과	10									
500천원 이하		10								
500천원 초과	15	12								
1,000천원 이하			7	7						
1,000천원 초과		15	10	9						
2,000천원 초과	20									
3,000천원 이하					5					
3,000천원 초과		20	13	11	10					
5,000천원 초과	30	25	17	13						
7,000천원 초과		30	21	15						
10,000천원 초과	40	35	25	17	15					
13,000천원 초과			29	20						
15,000천원 초과		40								
19,000천원 초과										
20,000천원 이하						10				
20,000천원 초과		45				20				
25,000천원 초과			37	30						
30,000천원 초과	50	50			20					
35,000천원 초과			42	35						
50,000천원 이하							10	10		
50,000천원 초과		55	47	40			20	20		
60,000천원 초과					25					
70,000천원 초과		60	52	45						
100,000천원 이하									10	10
100,000천원 초과	60	65	57	50	35				20	20
200,000천원 초과						30				
250,000천원 초과							30	30		
300,000천원 초과		70	62	55	45					
500,000천원 초과	70	75	67	60	55	40			30	30
550,000천원 초과							40	40		
1,000,000천원 초과						55	50	40	40	40
3,000,000천원 초과										50
5,000,000천원 초과									45	

2. 상속세 예산 및 징수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부과액	수납액 (C)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율	
							(B/A)	(C/A)
1965	64	53	44	49	0	4	82.7	76.3
1966	101	80	137	77	0	3	78.9	76.0
1967	78	192	280	175	0	17	246.4	224.1
1968	233	308	296	263	0	44	132.1	113.0
1969	270	399	504	370	0	28	147.6	137.1
1970	313	1,039	1,407	870	12	157	332.0	278.0
1971	407	1,233	1,586	1,036	10	188	303.0	254.6
1972	882	1,162	1,053	955	10	196	131.7	108.3
1973	957	1,376	1,268	877	2	496	143.8	91.7
1974	1,824	1,636	1,685	1,601	1	34	89.7	87.8
1975	4,200	5,083	9,613	4,234	1	848	121.0	100.8
1976	2,947	8,241	5,438	5,687	12	2,542	279.6	193.0
1977	3,308	5,118	3,981	4,917	18	183	154.7	148.6
1978	4,148	4,225	3,187	3,799	19	407	101.9	91.6
1979	9,573	7,301	1,796	6,582	52	667	76.3	68.8
1980	9,311	11,265	4,290	9,623	33	1,608	121.0	103.4
1981	11,859	18,389	22,671	11,975	24	6,390	155.1	101.0
1982	14,471	22,483	20,326	17,889	209	4,385	155.4	123.6
1983	16,728	21,957	21,516	18,107	116	3,733	131.3	108.2
1984	22,567	39,812	40,929	19,946	317	19,549	176.4	88.4
1985	21,564	27,078	28,225	17,821	810	8,446	125.6	82.6
1986	18,594	45,069	48,460	33,382	2,348	9,339	242.4	179.5
1987	38,696	42,970	50,558	32,724	1,506	8,740	111.0	84.6
1988	49,736	56,460	53,896	36,007	1,892	18,561	113.5	72.4
1989	39,165	53,986	87,704	39,472	2,096	12,418	137.8	100.8
1990	40,942	82,240	115,506	71,033	635	10,572	200.9	173.5
1991	97,486	143,017	230,967	104,372	31	38,614	146.7	107.1
1992	119,618	226,987	325,624	175,030	51	51,906	189.8	146.3
1993	179,485	475,923	676,050	346,337	1,215	128,371	265.2	193.0
1994	498,700	629,226	783,725	523,570	2,340	103,316	126.2	105.0
1995	632,500	772,470	880,967	605,644	19,444	147,382	122.1	95.8
1996	762,900	712,260	720,296	565,773	10,812	135,675	93.4	74.2
1997	615,100	708,056	779,527	604,660	8,456	94,940	115.1	98.3
1998	360,600	490,200	727,852	309,488	12,913	167,799	135.9	85.8
1999	473,530	674,426	711,384	480,670	52,989	140,767	142.4	101.5
2000	523,100	573,003	513,720	448,711	14,965	109,327	109.5	85.8
2001	439,300	505,114	401,147	429,955	11,392	63,767	115.0	97.9
2002	453,600	474,027	473,674	397,819	30,826	45,382	104.5	87.7
2003	428,900	528,748	462,331	485,302	9,543	33,903	123.3	113.2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3. 상속세 부과

(단위: 명, 백만원)

연도	인 원	재산가액	공제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면제 및 공제세액	가산세	총결정세액
1965	590	734	446	288	44	516	-	44
1966	711	1,456	690	767	154	17	-	137
1967	664	2,048	793	1,256	290	7	-	280
1968	490	2,805	1,237	1,568	424	128	-	296
1969	455	3,871	2,061	1,866	527	24	-	504
1970	585	7,040	2,565	4,475	1,724	320	-	1,407
1971	666	8,718	3,436	5,282	2,059	661	-	1,586
1972	664	8,110	4,313	3,798	1,237	184	-	1,053
1973	407	7,322	3,597	3,725	1,376	107	-	1,268
1974	296	9,036	4,775	4,262	1,820	135	-	1,685
1975	241	21,853	5,131	16,722	10,166	553	-	9,613
1976	270	26,705	15,807	10,898	5,898	460	-	5,438
1977	300	18,353	9,773	8,580	4,202	221	-	3,981
1978	285	16,877	8,352	8,525	4,039	852	-	3,187
1979	317	14,544	9,488	5,056	1,946	150	-	1,796
1980	350	27,777	17,510	10,267	4,551	262	-	4,290
1981	866	94,558	40,781	53,777	29,569	6,898	-	22,671
1982	820	92,185	47,164	45,021	21,297	971	-	20,326
1983	1,105	120,456	60,926	59,529	26,717	5,201	-	21,516
1984	1,144	180,560	82,957	97,604	45,346	4,893	476	40,929
1985	1,110	157,275	82,262	75,013	32,526	5,368	1,066	28,225
1986	1,324	231,971	117,443	114,527	51,576	4,625	1,508	48,460
1987	1,140	246,699	127,288	119,411	53,904	5,162	1,816	50,558
1988	1,414	261,368	133,496	127,872	57,356	6,428	2,968	53,896
1989	1,703	404,130	191,582	212,548	95,703	11,148	3,149	87,704
1990	2,294	655,696	329,188	326,508	129,230	20,074	6,350	115,506
1991	2,869	872,847	326,380	546,467	241,497	28,258	17,728	230,967
1992	3,438	1,510,240	671,284	838,956	334,185	37,695	29,134	325,624
1993	2,291	2,196,649	683,219	1,512,430	691,053	76,658	61,655	676,050
1994	2,549	2,680,931	884,291	1,796,640	794,154	99,366	88,937	783,725
1995	3,464	3,300,717	1,241,930	2,058,787	890,074	92,025	82,918	880,967
1996	2,850	3,086,530	1,206,997	1,879,533	730,124	79,879	70,051	720,296
1997	2,805	3,651,648	1,511,464	2,140,184	812,349	141,569	108,747	779,527
1998	3,455	4,555,897	2,239,207	2,316,690	778,973	136,957	85,836	727,852
1999	2,020	3,826,440	1,754,197	2,072,243	752,021	118,146	77,509	711,384
2000	1,389	3,413,441	1,548,159	1,865,282	639,102	168,161	42,779	513,720
2001	1,982	3,081,159	1,647,176	1,433,983	449,280	86,313	38,180	401,147
2002	1,661	2,993,597	1,226,500	1,767,097	583,178	142,049	32,545	473,674
2003	1,720	3,127,966	1,586,148	1,541,818	534,966	102,672	30,037	462,331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4. 재산종류별 상속재산가액

(단위: 백만원)

연도	토 지	건 물	금융자산	기타상속재산	합 계	재치증여가액	총 계	공제금액	과세표준
1965	391	140	88	111	730	4	734	446	288
1966	732	272	194	197	1,395	61	1,456	690	767
1967	1,034	356	467	180	2,037	11	2,048	793	1,256
1968	1,522	458	358	245	2,583	222	2,805	1,237	1,568
1969	2,290	815	404	292	3,801	57	3,857	2,061	1,866
1970	3,783	885	1,594	576	6,839	202	7,040	2,565	4,475
1971	4,929	1,290	1,961	503	8,683	35	8,718	3,436	5,282
1972	4,948	1,207	964	897	8,016	95	8,110	4,313	3,798
1973	4,477	1,407	698	637	7,219	103	7,322	3,597	3,725
1974	4,849	1,464	2,038	644	8,994	35	9,029	4,767	4,262
1975	4,554	1,830	9,935	1,091	17,410	4,443	21,853	5,131	16,722
1976	14,947	3,146	6,595	1,196	25,884	821	26,705	15,807	10,898
1977	8,799	3,035	4,095	1,969	17,898	455	18,353	9,773	8,580
1978	9,485	2,743	1,714	1,502	15,443	1,434	16,877	8,352	8,525
1979	8,190	3,103	1,808	1,401	14,502	142	14,644	9,488	5,056
1980	15,424	6,276	2,868	2,645	27,213	565	27,778	17,510	10,267
1981	52,147	21,457	12,148	6,969	92,721	1,837	94,558	40,781	53,777
1982	54,117	22,145	9,526	5,685	91,472	713	92,185	47,164	45,021
1983	63,377	29,515	12,483	5,733	111,107	9,349	120,456	60,926	59,529
1984	110,931	34,813	17,718	5,714	169,176	11,384	180,560	82,957	97,604
1985	90,029	41,871	8,986	10,242	151,128	6,148	157,275	82,262	75,013
1986	134,488	59,611	15,664	16,396	226,159	5,812	231,971	117,443	114,527
1987	144,811	61,699	24,809	10,451	241,770	4,929	246,699	127,288	119,411
1988	136,918	46,355	40,995	23,331	247,599	13,769	261,368	136,496	127,872
1989	233,780	88,091	50,098	17,583	389,552	14,578	404,130	191,582	212,548
1990	420,780	111,432	60,993	32,346	625,551	30,145	655,696	329,188	326,508
1991	575,849	123,413	114,063	12,731	826,056	46,344	872,400	43,805	828,595
1992	942,171	161,454	150,477	12,073	1,266,175	123,629	1,389,804	119,644	1,270,160
1993	772,910	131,807	165,801	46,600	1,117,118	239,842	1,356,960	129,559	1,227,401
1994	929,181	145,594	195,278	15,397	1,285,450	191,289	1,476,739	224,840	1,251,899
1995	1,305,678	225,765	196,307	20,604	1,748,354	223,023	1,971,377	405,772	1,565,605
1996	2,067,960	348,295	333,255	115,522	2,865,032	221,498	3,086,530	1,206,997	1,879,533
1997	2,247,262	326,016	541,247	121,470	3,235,995	415,653	3,651,648	1,511,464	2,140,184
1998	2,838,273	412,623	582,640	414,796	4,248,332	307,565	4,555,897	2,239,207	2,316,690
1999	2,236,789	225,555	840,232	272,432	3,575,008	251,432	3,826,440	1,754,197	2,072,243
2000	1,772,175	301,817	711,103	193,552	2,978,647	434,794	3,413,441	1,548,159	1,865,282
2001	1,626,148	293,520	548,262	270,052	2,737,982	343,177	3,081,159	1,647,176	1,433,983
2002	1,360,318	288,524	691,621	229,492	2,569,955	423,642	2,993,597	1,226,500	1,767,097
2003	1,402,434	326,279	796,910	251,788	2,777,411	350,555	3,127,966	1,586,148	1,541,818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본란에서는 조세정책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고 정책제언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 등에 실린 조세·재정 관련 내용을 발췌, 소개하고 있으며 『재정포럼』 독자께서 보내주시는 의견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의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 편집자 주 -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 당연하다

국세청이 외국계 대형 펀드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섰다. 현재는 실제 조사에 착수한 펀드가 2곳이지만,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비춰볼 때 이번 세무조사는 당연한 일이다. 최근 외국계 펀드는 국내투자자도 엄청난 차익을 내고도 교묘히 법망을 피해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외국의 오해를 살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시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외국계 자본에 대한 국민 여론은 부정적으로 기울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내의 자본의 역차별 해소책을 적극 강구하고 나서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같은 신문은 '경제적 국수주의'라고 비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세무조사 대상이 특정 펀드가 아니라 일제 조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해의 소지는 더욱

크다. 관행과 달리 미리 세무조사 사실을 알리지 않고 착수한 것도 꺼림칙하다.

그러나 국세청 입장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미 세금 탈루 같은 의심 사항이 발견된 만큼 증거보전 차원에서 이런 방식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사실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설 때는 사전 조사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여론재판용이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등의 지적은 적절치 않다.

세무조사는 국내의 자본을 막론하고 조세형평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외국계 펀드라고 해서 조세주권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외국계 펀드의 탈세 행위를 찾아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조세회피 지역에 본사를 두고 국내투자를 하는가 하면 부동산을 팔면서 주식거래로 처리하는 등 나름대로 합법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칼자루는 국세청이 쥐고 있다. 국세청은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조사를 벌여야 할 것이다. 국세청의 분발을 기대한다.

(2005년 4월 16일자 경향신문 사설)

IMF도 시급하다고 한 연기금개혁

연기금개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IMF조차 그 시급함을 거론하고 나섰다. 엇그제 IMF는 세계경제전망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연기금 부족사태가 일찍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굳이 IMF의 경고가 아니더라도, 예컨대 현행 국민연금체계의 불합리성은 충분히 지적된 바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은 수년 전부터 국민연금기금이 지급과 같은 체계로는 2040년대 중반에 이르면 완전 고갈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3년 '고부담, 저급여' 체계로의 전환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눈치만 보는 통에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연금법 개정안의 핵심인 '고부담, 저급여'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탓이다.

그 와중에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당분간 보험료 부담은 동결하고 급여는 낮추는 절반만의 대안을 마련했다. 국민연금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앞장서야 할 여당이 조삼모사(朝三暮四)의 잔꾀를 부린 것이다. 연금 보험료 인상은 3년 후에 재론하자는 여당의 개정안은 사실상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게다가 야당인 한나라당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가 더 시급하다면서 기초연금제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야당은 왜 이 시점에 현안인 연금 부담·급여 체계 개혁과 직접 관계가 없는 별개의 안을 들고 나와 주제를 흐트러뜨리는지 참 이해하기 힘들다. 기초연금제의 필요성, 효과 등은 별도로 따져 도입 유무를 결정하면 될 일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경우 현재 정부·여당의 수정안이 임시국회에 상정돼 있으나 과연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연금개혁이라는 사안의 본질을 감안한다면 정부·여당안조차 임기응변식 개정안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마저도 머뭇거리고 있으니 참으

로 한심할 따름이다.

〈2005년 4월 15일자 국민일보 사설〉

주택가격공시 반발 줄이려면

주택공시제도가 출발하기도 전에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에 직면했다. 건설교통부는 전국적으로 다가구·연립주택의 공시가격을 매겨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시·군·구를 통해 열람하도록 했으나 해당 지자체에 이의 신청이 속출하고 있다.

예컨대 서울시의 경우 총 47만여 가구에 대해 4만 5,564명이 열람, 이 중 5,231명이 이의를 제기했다. 주택공시제도는 그간 시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던 주택 과세기준을 80%선으로 올리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기에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이 어느 정도 예상된 바 있다.

그러나 이의 제기는 공시가격 상승에 대한 불만이 아니다. 서울시에 한하여 보면 공시가격이 높다는 이의 신청은 전체의 92.2%, 지나치게 낮다는 주장도 7.4%에 이른다. 공시가격이 들쭉날쭉할 정도로 산정에 무리가 많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시의 기준으로 선정된 표준주택이 전체 단독·다가구 주택수의 3%에 불과해 기준으로 삼기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뿐아

니라 공시가격 책정까지의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짧았던 것도 부실공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5월 한 달 동안 수정 요구를 취합해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공시에 신뢰문제가 제기된 만큼 앞서 이의를 제기했던 주택 소유자들도 지자체의 이의 수용 여부에 따라 다시 수정을 요청할 것을 감안할 때 수정 요구는 봇물을 이룰 듯하다. 당장 다음 달부터 공시가격이 주택관련 과세의 기준이 될 것이므로 혼선이 불가피하겠으나 열람·이의 신청기간을 늘려서라도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

공시가 신뢰를 잃어 결과적으로 공평과세가 훼손된다면 제도의 안착은 불가능하다. 현행 공시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수정 없이 제도의 일방적인 추진은 과표 상향조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로 가뜩이나 불만이 적지 않은 주택 소유자들에게 조세저항을 부추기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2005년 4월 26일자 국민일보 사설〉

부동산 투기로 번 불로소득 환수해야

정부가 부동산 투기에 대한 고삐를 죄고 있다. 엇그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보유세 강화와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확대, 거래세 완화 등이 핵심인 '5·4부동산 대책'을 결정했다. 무거운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최대한 억제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월 국회 국정연설에서 밝힌 '투기와 의 전쟁'이 현실화하고 있는 느낌이다. 주택공급 확대와 품질개선 대책도 내놓았다.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등의 정부 방침은 옳은 방향이다. 무엇보다 과세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거래를 통한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 투기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사실 부동산 투기가 망국병으로 불린 지는 오래다. 우리 사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오늘날처럼 고착화한 데는 부동산 투기 탓이 크다. 부동산 졸부가 판치면서 사회의 건전성도 크게 훼손됐다.

그러나 역대 정부는 부동산 투기에 '관대'했다. 투기 억제가 주택·건설경기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엔 지장을 주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부동산 경기를 무리하게 진작시킨 경우가 많았다. 그 과정에서 돈 놓고 돈 먹는 식의 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시장은 과열되기 일쑤였다. 또 한 번 오른 부동산 값은 좀처럼 내릴 줄

모르면서 서민층의 상대적 박탈감은 컸다.

조세정의 차원에서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십년간 광범위하게 인정돼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보유세, 양도소득세 강화를 통해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 옳다고 하더라도 속도는 적절히 조절돼야 한다. 자칫 무리한 추진으로 세부담이 급증하면 조세저항을 불러 역풍을 몰고 올 수도 있다. 특히 1가구 1주택 보유자 같은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융통성 있고 세심한 후속 세부대책을 기대한다.

〈2005년 5월 6일자 경향신문 사설〉

2005년 5월호 통권 제107호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발행인 / 최용선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김진수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한상국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박기백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김종면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정재호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편집간사 / 김용대 (한국조세연구원 주임연구위원)
박승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홍보과장)
최윤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인쇄 / 고려문화사 02)2277-1509

- 월간재정포럼 / 2005년 5월 16일 발행 / 제10권 제5호(통권 제107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라 7859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TEL : 02)2186-2130~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시 두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여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TEL : (02)2186-2133 FAX : (02)2186-2139

E-mail : pub@kipf.re.kr

주소 :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한국조세연구원 연구홍보과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구 한빛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 441-05-000011
· 예금주 : 한국조세연구원

